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보건복지부 소관
(제1차관 소관)

2026.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 문 위 원 박동찬

전 문 위 원 신은호

【 목차별 담당 입법조사관 】

구분	목차	입법조사관	연락처(6788-)
Ⅰ권(제1차관소관)	기획조정실	안병갑	5494
	복지정책관	창성현	5497
	복지행정지원관	주경덕	5498
	연금정책관	김태엽	5506
	인구아동정책관	백상준	5500
	노인정책관	김효정	5499
	사회서비스정책관	창성현	5497
	통합돌봄지원관	김정훈	5496
	장애인정책국	김대명	5502
Ⅱ권(제2차관소관)	보건의료정책관	안병갑	5494
	공공보건정책관	오은선	5509
	한의약정책관	김정훈	5496
	첨단의료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	오현승	5503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황현진	5501
	정신건강정책관	주경덕	5498
	보건산업정책국	백상준	5500
	의료혁신추진단	안병갑	5494

【 목 차 】

Ⅰ. 결산 개요 ····· 1

1. 총괄 ····· 1

가. 세입세출결산 ····· 1
나. 기금 결산 ····· 3
다. 총지출 결산 ····· 4

2. 세입세출결산 ····· 5

가. 일반회계 ····· 5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3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34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5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41

3. 기금 결산 ····· 48

가. 국민연금기금 ····· 48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 57
다. 응급의료기금 ····· 67

Ⅱ. 실국별 검토 ····· 75

1. 기획조정실 ····· 75

가. 개요 ····· 75
1) 결산 총괄 ····· 75
2)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 76
3) 이·전용 현황 ····· 78
4) 이월 및 불용 현황 ····· 81

나. 사업별 검토 ····· 84
<일반회계> ····· 84
1) 세입 ····· 84
가) 세입 결산 개요 ····· 84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문제 ····· 85
2)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 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1
나) 성과지표 현실화 필요 ····· 92
3) 정책연구개발(7034-301) ····· 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97
나)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필요 ····· 98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 1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02
나) 미처분잉여금 관리 필요 ····· 103

2. 복지정책관 ····· 107

가. 개요 ····· 107
1) 결산 총괄 ····· 107
2) 일반회계 결산 ····· 108
3) 이·전용 현황 ····· 110
4) 이월 및 불용 현황 ····· 111

나. 사업별 검토 ····· 113
<일반회계> ····· 113
1) 생계급여(1131-300) ····· 1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13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사업의 가입자 변동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편성 필요 ····· 114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 118

2) 의료급여(1132-302) ····· 12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20
나)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관리 강화 필요 ····· 121
3) 자활사업(1137-300) ····· 12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25
나)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필요 ····· 126
다)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 130
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2631-326) ····· 1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35
나) 상해보험 가입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필요 ····· 136

3. 복지행정지원관 ····· 140

가. 개요 ····· 140
1) 결산 총괄 ····· 140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141
3) 이·전용 현황 ····· 143
4) 이월 및 불용 현황 ····· 144

나. 사업별 검토 ····· 146
<일반회계> ····· 146
1)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639-302) ····· 14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46
나) 고독사 고위험군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필요 ·· 147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12) ····· 15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52
나)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 소요 충당을 위한 집행 지양 필요 ····· 1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56
3)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 15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56
나)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사업의 수요 및 기존 사례관리 체계를 고려한 사업 설계 필요 ····· 157

4. 연금정책관 ····· 161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 161
1) 개요 ····· 161
2) 예비비 지출 현황 ····· 163
3) 이·전용 현황 ····· 164
4) 이월 및 불용 현황 ····· 166

나.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 168
1) 수입 결산 ····· 168
2) 지출 결산 ····· 171

다. 사업별 검토 ····· 179
<일반회계> ····· 179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1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79
나) 적절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목표관리 강화 필요 ····· 183
2) 기초연금지급(2131-300) ····· 1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187
나) 기초연금지급 사업의 신속집행 대상 선정 부적절 ····· 188
다)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실집행잔액의 연례적 반납 지연 ····· 192
라)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197
3)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2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0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 201
<국민연금기금> ····· 205
4)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7431-451) ····· 2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5
나) 인재개발원 신축사업의 이월 반복 등 집행 부진 부적절 ····· 206
5)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 2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09
나)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 계획변경 과다 ····· 211

5. 인구아동정책관 ····· 215

가. 개요 ····· 215
1) 결산 총괄 ····· 215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 216
3) 이·전용 현황 ····· 219
4) 이월 및 불용 현황 ····· 221

나. 사업별 검토 ····· 224
<일반회계> ····· 224
1)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1331-302) ····· 22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24
나) 참여 아동 확대 등 사업 활성화 필요 ····· 225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 2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29
나)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230
다) 일반연구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관리 필요 ····· 233
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 2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35
나) 자립지원전담인력 퇴직률 관리 및 운용 안정성 제고 필요 ····· 236
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40
4)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 2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43
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44
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49
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53
5)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 25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57
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및 적립률 제고 필요 ····· 258
6)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 2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64
나) 내역사업 구조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필요 ····· 265

7)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1339-300) ····· 26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69
나)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세분화 필요 ····· 270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 27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76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인력운용 관리 강화 필요 ·· 277
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 28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83
나)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84
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개선 필요 ····· 288
라) 다양한 내역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세분화 필요 ····· 291
<국민연금기금> ····· 294
10)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 29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294
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일반회계 편성 필요 ····· 296

6. 노인정책관 ····· 299

가. 개요 ····· 299
1) 결산 총괄 ····· 299
2) 일반회계 결산 ····· 300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301
4) 기금 결산 ····· 302
5) 이·전용 현황 ····· 303
6) 이월 및 불용 현황 ····· 304

나. 사업별 검토 ····· 307
<일반회계> ····· 307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 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07
나) 정착비 단가 현실화 등 정착 지원 확대 필요 ····· 308
2)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 3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11

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필요 ····· 312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의 전임제 전환 검토 필요 ····· 315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 32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1
나)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부식비 지원 필요 ····· 322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 3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28
나)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의 저소득 노인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329
다)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의 낮은 연계율 원인 분석 및 향후 유사 사업 반영 필요 ····· 3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40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 3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40
나) 서비스 수행인력의 교통비·통신비 등 실비성 비용 지원기준 마련 및 고용구조 개선 검토 필요 ····· 341
6) 장사시설설치(지원), 봉안시설 설치(자율)(2140-300) ····· 34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46
나) 자연장지 확대 조성 및 봉안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 필요 ····· 348
7) 노인요양시설 확충 (2232-300) ····· 35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57
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관리 강화 및 건축단가 현실화 필요 ··· 358
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00) ····· 36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62
나) 응급관리요원 적정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필요 ····· 363
<국민건강증진기금> ····· 373
9)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 37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73
나)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노력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 374
10) 노인건강관리(2235-304) ····· 38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80
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 필요 등 ····· 381

7. 사회서비스정책관 ····· 386

가. 개요 ····· 386
1) 결산 총괄 ····· 386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387
3) 이·전용 현황 ····· 388
4) 이월 및 불용 현황 ····· 389

나. 사업별 검토 ····· 391
<일반회계> ····· 391
1) 의사상자 지원(1932-300) ····· 3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91
나)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 편성 필요 ····· 392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 3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396
나) 대체인력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3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00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 4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0
나)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필요 ····· 401

8. 통합돌봄지원관 ····· 405

가. 개요 ····· 405
1) 결산 총괄 ····· 405
2) 예비비 현황 ····· 406
3) 이월 및 불용 현황 ····· 407

나. 사업별 검토 ····· 408
<일반회계> ····· 408
1)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 40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08
나) 통합돌봄서비스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409
다) 재택의료 참여기관 및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415

9. 장애인정책국 ····· 420

가. 개요 ····· 420
1) 결산 총괄 ····· 420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421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423
4) 기금 결산 ····· 424
5) 이·전용 현황 ····· 425
6) 이월 및 불용 현황 ····· 427

나. 사업별 검토 ····· 429
<일반회계> ····· 429
1) 장애수당(기초) 사업(1531-300),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 42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29
나)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 부정수급 누적 미징수액 증가에 따른 환수 관리 강화 필요 ····· 431
2) 장애인연금 사업(1531-305) ····· 4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36
나) 장애인연금 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소요 추계 및 집행 점검 체계 개선 필요 ·· 437
다) 장애인연금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442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532-304) ····· 4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45
나)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체계 개선 필요 ····· 446
4) 장애인지원관리 사업(1532-307) ····· 4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51
나) 반복적인 예산조정에 의존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452
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1535-304) ····· 45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55
나) 활동지원기관 급여비용의 임금 사용 관리 강화 및 75% 권고 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 ····· 456
다)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 해소 및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개선 필요 ··· 460
6)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 46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63
나)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 원인 점검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464

7) 발달장애인지원 사업(1535-309) ····· 4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70
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미지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472
다)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대기자 해소를 위한 지역별 공급 기반 확충 필요 ····· 476
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추경 편성에도 지속되는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481
8)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1535-310) ····· 48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85
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486
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1536-300) ····· 49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90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반복적인 목표 미달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 491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 4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497
나)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인력 확보 계획 개선 필요 ····· 499
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선정 기준 개선 필요 ····· 503
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체계 마련 필요 ····· 507
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 5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13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 점검 필요 ·· 514
다)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공백 방지를 위한 수행기관 신청자격 개선 필요 ··· 5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23
1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 52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23
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의 본 사업 반영 및 지원 체계 보완 필요 ··· 524
<국민건강증진기금> ····· 528
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1563-309) ····· 52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528

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의 사업 내용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529

Ⅰ. 결산 개요

1. 총괄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각각 1조 2,797억 5,400만원, 2,746억 7,900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1조 5,544억 3,300만원임.

- 총 징수결정액 1조 7,173억 7,300만원은 일반회계 1조 3,718억 8,500만원, 특별회계 3,454억 8,800만원으로 구성

- 총 수납액 1조 2,151억 6,900만원은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수납액 등 9,364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환자진료 병원수입 등 2,787억 2,200만원으로 구성

- 총 미수납액은 5,022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및 과징금 미수납액 등 4,354억 3,800만원과 특별회계의 진료비 미수납액 등 667억 6,600만원으로 구성

<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C/A)	(C/B)		
계	15,544	17,174	12,152	78.2	70.8	-	5,022
□ 일반회계	12,798	13,719	9,364	73.2	68.3	-	4,354
□ 특별회계	2,747	3,455	2,787	101.5	80.7	-	668

2) 세출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2조 4,95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등을 모두 합한 예산현액은 73조 280억원임. 이 중 72조 7,684억원(99.6%)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2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79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계	724,956	730,280	727,684	216	2,379	99.6
□ 일반회계	706,612	711,812	709,538	192	2,082	99.7
□ 특별회계	18,344	18,468	18,147	25	297	98.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337	16,366	16,325	0.4	41	99.7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07	2,102	1,822	24	256	86.7

나. 기금 결산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3개 기금의 기금운용규모 실적은 총 243조 2,381억 8,400만원임. 당초 182조 7,579억 9,800만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수입과 여유자금 회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60조 4,801억 8,600만원(33.1%)이 증가되었음.

<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수정 계획액(A)	실적(결산액)(B)	집행률(B/A)
계	182,757,998	243,238,184	133.1
□ 국민연금기금	177,569,451	238,320,164	134.2
□ 국민건강증진기금	4,548,486	4,314,445	94.8
□ 응급의료기금	640,061	603,576	94.2

* 기금운용규모 기준
* 기금은 수납액(자금조달)과 지출액(자금운용) 규모가 일치함.

다. 총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현황을 총지출[1]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총 126조 4,559억원,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27조 47억원이며, 이 중 126조 5,772억원(99.7%)이 집행되었고, 30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66억원은 불용됨.

< 2025회계연도 총지출 결산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E)	집행률 (C/B)
총지출	**1,264,559**	**1,270,047**	**1,265,772**	**309**	**3,966**	**99.7**
▪ 예 산	**720,347**	**725,652**	**723,061**	**216**	**2,374**	**99.6**
◦ 일반회계	702,129	707,310	705,036	192	2,082	99.7
◦ 특별회계	18,218	18,342	18,025	25	292	9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337	16,366	16,325	0.4	41	99.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81	1,976	1,701	24	252	86.0
▪ 기 금	**544,212**	**544,395**	**542,711**	**92**	**1,592**	**99.7**
◦ 국민연금기금	505,627	505,787	505,561	46	180	99.9
◦ 국민건강증진기금	35,462	35,479	34,155	43	1,280	96.3
◦ 응급의료기금	3,123	3,129	2,994	3	132	95.7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제외

- 내부거래 : 1조 1,926억원

  * 일반회계(책특회계·기금전출) 4,502억원, 특별회계(공무원연금기금 전출 12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계정간전출 예수금상환) 6,426억원, 응급의료기금(예수금상환) 877억원

- 보전지출(여유자금, 채권매입 등) : 188조 2,369억원

  * 국민연금기금 187조 7,641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563억원, 응급의료기금 2,165억원

1)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의 실질적인 지출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모든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를 더하고(단, 금융성기금은 제외함), 정부 예산 및 기금 간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여 산출함.

2. 세입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2,798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 3,719억원이며, 이 중 9,364억원(68.3%)이 수납되고, 4,354억원(31.7%)은 미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의 85.1%인 1조 1,680억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으로, 8,605억원(73.7%)이 수납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1,279,754	1,371,885	936,447	-	435,438	31.7
재산수입	15,248	73,948	45,573	-	28,375	38.4
경상이전수입	1,263,158	1,294,206	889,439	-	404,767	31.3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348	1,435	1,435	-	-	-
관유물 매각대	-	0.3	0.3	-	-	-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	2,295	-	-	2,295	100.0

나) 불납결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4,354억 3,800만원은 재산수입 283억 7,500만원, 경상이전수입 4,047억 6,7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억 9,500만원으로 구성됨.

-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지연,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발생함.

< 2025회계연도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435,438	
재산수입	28,375	
- 관유물대여료	26	납기일 미도래
- 전대차관 이자수입	1,097	차관병원의 부도로 채무 불이행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253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경상이전수입	404,767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83,984	과징금(82,951백만원) 등 납부기한 미도래, 분할납부 및 소송·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인한 미수납
- 변상금 및 위약금	13,21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5,677백만원), 위약금**(7,530백만원) 등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 중인 상황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수납 예정 * 손해배상금 :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 위약금 :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 가산금	64	폐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 다수
- 기타경상이전수입	307,501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95	
- 전대차관원금회수	2,295	차관병원의 부도로 채무 불이행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70조 6,61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억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71조 1,812억원임.

이 중 70조 9,538억원(99.7%)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192억원(0.03%)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82억원(0.3%)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이체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70,661,163	5,827	514,160	159,489 △159,489	-	48,802 △48,802	71,181,150	70,953,788	19,187	208,175
기초생활 보장	18,816,647	76	-	-	-	43,886 △43,886	18,816,723	18,814,655	1,286	782
취약계층 지원	5,471,799	775	-	22,400	-	74 △74	5,494,974	5,484,226	294	10,454
공적연금	64,076	-	-	-	-	-	64,076	63,852	50	174
사회복지 일반	586,502	2,243	99,084	3,538 △5,370	-	2,205 △2,205	685,997	661,301	927	23,769
아동·보육	4,826,821	248	351,569	21,468 △125	-	405 △405	5,199,981	5,184,930	11,155	3,897
노인	26,246,696	80	4,992	△70,553	-	40 △40	26,181,215	26,031,855	70	149,289
보건의료	2,504,139	2,346	11,676	112,083 △83,441	-	2,171 △2,171	2,546,803	2,522,674	5,376	18,753
건강보험	12,144,483	59	46,839	-	-	20 △20	12,191,381	12,190,294	29	1,058

나) 예비비 사용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142억원으로, 이 중 4,981억원(96.9%)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용 내 역
계		514,160	498,057	10,883	5,220	
일반 예비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지원	1,372	1,307	-	65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운영 예산 중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 시급한 예산 일부 우선 지원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예비비	4,472	4,472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 대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을 상회함에 따라 대상자 추가 지원을 위한 예비비	42,220	31,337	10,883	-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을 상회함에 따라, 당초예상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월액 '26년 사용완료)
재해 대책비	의사 집단행동(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9,768	9,737	-	31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 대체인력·의료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9.26)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운영 시스템 전소됨에 따라, 시스템 복구 시까지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예비비	1,908	1,908	-	-	케어콜 운영, 미응답자 콜백 인력 인건비 및 비상대응수당 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계정) 전출, 집행

구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용 내 역
법적 의무 지출 미지급금 및 당해 연도 지급 부족액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사립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51,831	50,914	-	917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25년 12월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부족분 발생 - 건강보험 : 지출결정액 46,839백만원 중 45,922백만원 지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출결정액 4,992백만원 전액지출
	'25년 출생아 실적이 당초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을 상회함에 따라 대상자 추가 지원을 위한 예비비	307,977	307,977	-	-	아동수당·부모급여 대상자 급여 지급 - 아동수당 : 지출결정액 47,819백만원 전액지출 - 부모급여 : 지출결정액 260,158백만원 전액지출
국제 부담금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패소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등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94,612	90,406	-	4,206	ISDS패소로 중재판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등 패소 판정금 지급

다) 이용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이용[2] 규모는 총 1,594억 8,9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의정갈등에 따른 현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계	159,489 △159,489		
취약계층지원	22,400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분 기초연금에서 22,400백만원 이용	22,400
사회복지일반	3,538 △5,370	(보건복지 상담 센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 운영사업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70백만원 이용	△470
		(본부 인건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공요금(4,900백만원) 부족분 이용	△4,900
		(국제협력관리) 엘리엇·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대응을 위한 정부대리로펌 법률자문료 및 행정비용 부족으로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이용(3538백만원)	3,538
아동·보육	21,468 △125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	△1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비 부족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서 125백만원 이용	12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인 부모급여 예산 부족발생으로 기초연금 지급사업에서 21,343백만원 이용	21,343
노인	△70,553	(기초연금지급) 장애인연금 부족분 △22,400백만원, 정부대리로펌 계약금액 부족분 △3,538백만원, 부모급여 부족분 △21,343백만원, 의료공백 해소 및 비상진료체계 대응	△70,553

2)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이른바 입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일반적으로 예산총칙에 규정)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음.

구분	이용액	이 용 사 유	
		△23,272백만원	
보건의료	112,083 △83,44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106,71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으로 (7001-100)본부 인건비 사업에서 4,900백만원 (2633-300)보건복지 상담 센터 사업에서 470백만원 각각 이용	5,370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현장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제비용 지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83,441

라) 전용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3] 규모는 총 488억 2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예산 부족분 충당 등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48,802 △48,802**		
기초생활보장	43,886 △43,886	(생계급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43,886백만원 전용	△43,88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전년대비 자산형성 예산	43,886

3)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이른바 행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 간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사용 등 시급한 필요성, 필수경비 충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삭감 및 신규 가입, 참여율 확대로 인한 만기해지자 및 가입 유지자 지원금 적립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전용	
취약계층지원	74 △74	(장애인연금)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현황 조사 관련 국외 출장비 부족으로 장애인지원관리에서 1백만원, 활동지원에서 1백만원 전용	2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상용임금 부족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32-307)으로 6백만원 전용	△6
		(장애인지원관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자체 전용(20백만원),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 전용(△43백만원), 장애인 소득보장·일자리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견학 출장여비 자체전용(△1백만원)	20 △44
		(장애인활동지원)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부족금으로 장애인지원관리(1532-307)사업에서 43백만원 전용, 장애인활동지원사 인식개선 등 홍보 비용 부족으로 3.3백만원 자체전용	46 △4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비를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연구용역비로 전용	△20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상용임금 부족으로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에서 6백만원 전용	6
사회복지일반	2,205 △2,205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장기계속 2차)」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685백만원 전용	685 △685
		(본부 인건비)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의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전용(135백만원)	135 △25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공무원 보수 예산 부족으로 (7001-100)본부 인건비 사업에서 120백만원 전용	12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74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전용(1백만원)	1 △1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6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직책수행경비 자체전용(6백만원)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직책수행경비 부족	1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 국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	19 △3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자체전용	△5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조정	3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추가배정 (재정운용(담) 기본경비 →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로 직책수행경비 0.69백만원)	1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절감(4백만원)	△4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반영	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조정	4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28 △77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	△3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168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기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자체전용	15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국외여비, 일반수용비(지침인쇄 등) 부족분 전용	11 △11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전 직원 대상 마음건강진단 시행을 위한 일반연구비 자체전용	33 △100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5백만원) 및 공공요금및제세(6백만원) 감액, 일반수용비 절감(15백만원)	11 △26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220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국관 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25년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 등 국제협력 및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임차료 → 국내여비 자체전용(10백만원)	10 △10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국내여비→임차료)	4 △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024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자체전용(6백만원), 건강보험정책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자체전용(15백만원)	21 △6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사업에서 1백만원 전용	1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예측할 수 없는 추가소요 지원을 위한 국관 기본경비 절감	3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관계기관 회의 등 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15 △15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42백만원 전용, 사이버 안전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25백만원 전용, 부내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위해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5백만원 전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우리부 업무용 메신저 임시 서버 임차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임차료 16백만원 전용	83 △65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및 공로연수 파견자에 대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전용	1 △2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보안서비스 이용료 지급,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파견비 지급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전용	3 △1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복지부 직책수행경비 부족액 충당 감액	△15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복지부 여비 부족액 충당 감액(△7), 소록도병원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 전용(±4)	4 △11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 (7011-200)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으로 30백만원 전용	△3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기관 운영 조정으로 복리후생비 부족분 전용(1백만원)	△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본부 기획조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10백만원), 본부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용(17백만원), 사무국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1백만원)	1 △27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우리부 직원용 생성형 AI 서비스 연계	22
		(정책기반 구축) 전 직원 대상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검사·진단을 시행, 부내 심리상담실 '마음쉼터' 운영 확대, 소송 수행에 따른 기일 참석(법원 출장) 출장여비 지급, 보건복지 주요정책 등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집행	204 △69
		(국제협력관리) APEC 보건분야회의 의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용역비 → 연구비로 전용(100백만원),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분담금(145백만원), 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사업의 사업출연금(190백만원) → 일반용역비로 전용(335백만원)	435 △24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190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으로 42백만원 전용,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등 국내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동 사업내 20백만원 전용,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에서 25백만원 전용, 부내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으로 7백만원 전용, 국자원 화재 발생으로 소실된 업무용 메신터 임시서버 임차료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으로 16백만원 전용, 정보보안 컨설팅, 국자원 화재에 따른 보안 정책 강화 등에 따른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동 사업내 6백만원 전용	51 △91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직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32백만원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32 △32
아동·보육	405 △40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연구비 부족	△10
		(가정위탁 지원·운영) 전문아동보호비 부족에 따른 전용	25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부족에 따른 전용	△25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일반연구비) 10백만원 자체 전용	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부족	15 △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의 원활환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내 비목간 전용	115 △115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동 세부사업 일반수용비에서 15백만원 자체전용	15 △15
노인	40 △40	(노인단체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	△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0백만원> 17백만원: 수용비→국외여비(국외여비 출장비) 23백만원: 수용비(노인단체 지원)→수용비(지침인쇄 비용 부족분) / <△17백만원>△17백만원: 수용비→국외여비(국외여비 출장비)	40 △17
보건의료	2,171 △2,171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회의 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에서 자체전용	6 △6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청사 시설관리비 부족분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 내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간의 전용	9 △9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중 28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PC 교체(윈도우 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대책)	28 △28
		(생명윤리및안전관리) 국외여비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3 △3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25년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5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및 전문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백만원 전용	△5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1.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으로 (3035-300)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에서 1,239백만원 2.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상용임금 공무직 인건비 집행계획 변동으로 (3035-300)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사업에서 90백만원 각각 전용	1,329 △1,329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 전용	△5
		(제약산업 육성 지원)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 전용	5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자체전용(10백만원)	10 △10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수요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415백만원 전용	△415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서 415백만원 전용	415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의료개혁추진단 별도정원 운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진단 운영비 추가 필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의료개혁특별추진위원회 추진단 운영)	△1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의료개혁추진단 별도정원 운영 기간이 연장('25.4.23. → '25.12.31.)됨에 따라 추진단 운영비 추가 필요(당초 예산 4개월분 편성)	235 △74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개혁추진단 별도정원 운영 기간 연장 및 의료개혁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단 운영비 추가 필요(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으로 38백만원 전용)	△38
		(소록도병원관리) 소록도병원 공공요금(전기료 등) 부족액 충당	△50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감액(△50)	
		(한센환자치료) 소록도병원 공공요금(전기료 등) 부족액 충당 증액(50), 소록도병원 공공요금(전기료 등) 부족액 충당 전용(±75)	125 △75
건강보험	20 △20	(보험정책사업관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전용(20백만원)	20 △20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 8,700만원(0.03%)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9,187		
기초생활보장	1,286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25.4.~'26.8.) 등 연구용역 3건 계약기간 미도래(1,208백만원)	1,208
		(의료급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77
취약계층지원	294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법 소송 위임 계약 관련 재판 절차 미진행 이월(14백만원), 연구기간 미도래(50백만원)	64
		(발달장애인 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8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25.12월 ~ '26.4월) 미도래	31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5
공적연금	50	(연금정책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50
사회복지일반	927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96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91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25.월~'26.4월) 미도래	15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65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원활한 국관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3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특근매식비)	7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미지출 기본경비 이월	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잔액 이월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8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총액)) 각 국.관 기본경비 절감분 이월	3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53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연구용역 계약기간('25.11~'26.2월) 미도래	15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공공요금4백만원, 국외여비 4백만원 이월	8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미지출 기본경비 이월	2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원활한 국관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이월	34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잔액 이월	6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52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4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국내여비)	2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이월	2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각 국.관 기본경비 절감분 이월	12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삼성전자 노트북 관련 계약자의 물품 납기 지연으로 인한 이월	7
		(정책기반 구축) 소송사건 외부대리인 선임에 대한 성공보수 이월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위임사무 종료시까지)	43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계약기간('25.9월~'26.2월) 미도래	188
아동·보육	11,15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일반연구비) 40백만원	40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첫만남 이용권 지원) 25년 지자체 재원 부족 및 정확한 출생아 통계 산출 어려움 등으로 첫만남이용권 예비비 잔액 발생	10,88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4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 계약기간 미도래	7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25.9월~'26.3월) 미도래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25.12.08.~'26.4.30.) 미도래	45
노인	70	(노인단체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25.8월)에 따른 노인정책 영향평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월계약('25.10~'26.3)을 추진함	5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개발 연구 계약기간('25.10.~'26.2.) 미도래	21
보건의료	5,376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잔금 이월	24
		(생명윤리및안전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2025.12.24.~2026.5.22.) 미도래	40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설계 용역 계약기간('25.7월~'26.4월) 미도래	47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25.5월~'26.2월)	26
		(원격 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대상 사업 공고(4차), 응모 미달에 따른 선정 지연으로 협약 체결 순연	1,600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치료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8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정자원관리원 위탁계약(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바우처시스템 운영을 위한 신규자산(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취득 추진 중. 계약기간은 '25.8월~12월로 연내 완수될 예정이었으나, '25.9월말 설치장소인 국정자원관리원에 화재 발생으로 일부 품목 설치에 필요한 기간 연장(~'26.1분기), 이월된 전액(자산취득비 2,378백만원) 집행 예정	2,378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등 계약기간(26년 완료 예정) 미도래	252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5.10.16~'25.12.31.)	50
		(소록도병원관리) 한울센터 내진보강, 보수공사 준공기한('26. 2월) 미도래,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준공기한('26. 1월) 미도래,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25.7.25.~'25.3.21.)	778
건강보험	29	(보험정책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9

바)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2,081억 7,500만원(0.3%)으로, 주요 사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자 수 증가 등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208,175		
기초생활보장	782	(생계급여) 연구용역 낙찰차액(100백만원) 및 집행잔액(329백만원) 등	429
		(의료급여) 연구용역 낙찰차액(1.9백만원),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52백만원)	54
		(긴급복지) 집행잔액(일반수용비, 국내여비)	4
		(자활사업) 집행잔액	275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7백만원)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7백만원)	14
취약계층지원	10,454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연구 용역 집행잔액	7
		(장애인연금)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1백만원), 임차료 집행잔액(2백만원), 연구용역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55백만원)	97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등 집행잔액	100
		(장애인지원관리) 집행잔액	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금리 인하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58백만원), 손실보전금 집행잔액(23백만원)	81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	10
		(발달장애인지원)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미지정(2,394백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지방비 부족, 국회 지적 등을 고려 미교부(3,242백만원), 연구용역 및 홍보예산 입찰 낙찰차액(92백만원) 불용	5,778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23백만원	2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2,57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5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기존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로 신규 보조사업자 공모 중(146백만원)	146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0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집행잔액	8
		(노숙인등 복지지원)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 인정 신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 결정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건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집행 잔액 발생(1,408백만원)	1,408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운영비 집행잔액(2백만원)	2
공적연금	174	(연금정책사업관리) 연금홍보 계약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 잔액 (174백만원)	174
사회복지일반	23,769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민간위탁보조사업 및 연구과제 등 낙찰차액 (148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등(106백만원)	254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돌봄 인력 관련 연구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용역 집행잔액(10백만원), 지자체경상보조 집행잔액(10백만원), 기타 잔액(3백만원)	23
		(복지급여 사후관리) 운영 경비 집행잔액(일반수용비 10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국내여비 26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0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49
		(보건복지 상담 센터) 상담사 휴·퇴직 따른 인건비(상용임금 129백만) 및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 1백만, 고용부담금 2백만), 낙찰차액(자산취득비 82백만), 채팅상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중계서비스이용료 제로화(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 국내여비(5백만), 특근매식비(3백만), 사업추진비(1백만), 일반수용비(조달수수료 1백만) 등 집행잔액	2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비대면 회의 운영, 집행잔액 등 국내외여비(8백만원), 연구비 낙찰차액(1백만원), 지자체보조 집행잔액(2백만원)	11
		(사회복무제도지원) 인건비 편성 당시 기준과 실제 복무인원, 계급 등 차이로 인한 집행 잔액 등	153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지자체 예산 미확보에 따른 매칭 불가 예산(612백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12백만원) 등 불용	625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운영비 집행잔액 및 계약 차액 등(81백만원), 사회서비스원 1개소 미설치로 사업비 불용(500백만원)	58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송 취하 및 금융재산조사 전산연계 참여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	61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
		(본부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등 기타직보수 불용(13,983백만원) 및 사업장부담금 집행잔액(71백만원)	14,054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소록도병원 인건비) 의무직(내과, 안이비인후과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	884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인건비 집행 잔액 (기타직보수 73백만원, 연가보상비 4백만원)	7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6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3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1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직책수행경비 등 집행잔액(1백만원)	1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8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특근매식비 2백만원, 기타운영비 1백만원)	3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총액)) 기타운영비 집행잔액(2백만원)	2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미지출 기본경비 불용	10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4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소액의 집행잔액 해당	2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14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16
		(보건산업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국내여비 및 임차료 집행잔액(16백만원)	16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27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미지출 기본경비 불용	1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36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소액의 집행잔액 해당	2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백만원)	2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 잔액	3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58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해외 파견공무원의 실의료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잔액(2.4백만원) *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3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국외여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집행잔액(6백만원)	6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3
		(보건의료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국내여비 30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5백만원)	35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1백만원)	1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21
		(필수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6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집행잔액(1백만원)	1
		(정신건강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운영비(1백만원) 및 국외업무여비(3백만원) 집행잔액	4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본경비(총액)) 정원대비 현원 부족 인건비(194백만원) 등 집행잔액(2백만원)	196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1
		(첨단재생의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5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PC 구매(2단계 경쟁), '25~'27년 사무용정보화기기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33백만원) 및 집행잔액(3백만원)	36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1백만원)	1
		(망향의동산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7백만원)	7
		(소록도병원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	8
		(소록도병원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	4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집행 잔액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1백만원, 고용부담금 7백만원)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집행잔액(4백만원)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비총액)) 집행잔액(3백만원)	3
		(부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국내여비 집행잔액(1백만원)	1
		(정책기반 구축)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347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등	21
		(국제협력관리) 일반용역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106백만원), 국제소송 대응비용 집행잔액(481백만원)	5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집행잔액(8백만원)	8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낙찰차액(7백만원) 및 집행잔액(10백만원)	17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환율변동*으로 인한 메이슨 대 대한민국 국제투자분쟁 소송 패소판정금 지급 잔액 * 편성시 1$=1,445원(직전 3개월 평균)지급시 1$=1,377원	4,206
		(행정지원인력 운영) 공무직 휴직, 퇴직 등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00백만원), 청년인턴 급여 및 여비 등 필요금액 지급 후 잔액 (188백만원)	388
아동·보육	3,89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연구용역 집행잔액(35백만원), 사업운영비 집행잔액(15백만원). 지자체경상보조 집행잔액(4백만원)	5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연구용역 집행잔액 발생(15백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백만원)	19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가정위탁 지원·운영) 집행잔액	4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연구용액 낙찰차액	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집행잔액	902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관서운영경비 잔액(2백만원)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22백만원)	2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1,739백만원), 거점심리치료센터(39백만원)	1,777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연구용역 집행잔액(38백만원) 및 보조금 교부 잔액(45백만원)	8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운영비 집행잔액(38백만원)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54백만원)	9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용역비50(낙찰차액), 수용비242(예산절감), 임차료10(집행잔액)	30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상근 위촉직 위원 미위촉 인건비(186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437백만원)	62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연구용역 집행잔액(1백만원)	1
		(아동수당 지급) 집행잔액	11
노인	149,289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급여 집행잔액(148,557백만원),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잔액(65백만원)	148,62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신규입국자 입국 지연에 따른 불용	322
		(노인단체 지원)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미교부액(31백만원)	31
		(망향의동산 관리원 운영지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신규채용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상용임금 일부 미집행(17백만원)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공무원 및 사립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지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집행잔액 등	284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보건의료	18,753	(장기·조직기증원 운영)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0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 집행잔액(장기·조직 기증자 감소로 인한 기증자 지원금 집행잔액)	771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4백), 사업수행경비(11백) 집행잔액	15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심평원 손실보상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15백만원)	15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361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방비 미매칭으로 인한 불용(4,252백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14백만원) 등	4,26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세월호피해자 의료지원) 불용액 212백만원 : 개별 건강상태, 병원 이용의사 등 개인적인 변수 및 치료·청구 시점 등 차이로 인하여 전년 대비 청구 감소(390명, 6,877건 → 323명, 4,903건)	21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집행잔액	372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집행잔액(2백만원)	2
		(생명윤리및안전관리) 연구용역 낙찰 차액 등	14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1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후속 연구 낙찰차액(30백만원) 및 집행잔액(1백만원)	31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R&D)) 과제중단(의사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지원(신진)) 200백만원, 연구자의 단가미만 신청 6백만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206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R&D)) 25년 신규과제 미선정 등으로 인하여 총 856백만원 불용	856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R&D)) 연구개발활동비 집행잔액(8백만원)	8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연구과제 선정심의 값에 따른 교부 잔액(33백만원)	33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유전자,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기술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사업(R&D)) R&D 과제 집행잔액	100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백만원)	1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낙찰차액(14백만원) 및 집행잔액(4백만원)	18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성과분석 및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 집행잔액(13백만원)	13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GDHP 연례회의 참여 저조 등에 따른 집행잔액(22백만원), 연구용역 집행잔액(13백만원)	35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운영) 집행 잔액 타운인력관리(공무직 보수 등) 153백만원 타운시설관리(행정타운 유지보수 등) 247백만원 타운시설관리위탁(위탁용역 업무) 17백만원	417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관리 기본경비 집행잔액	4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관리 기본경비 집행잔액	36
		(제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관리 기본경비 집행잔액	1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관리 기본경비 집행잔액	1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관리 기본경비 집행잔액	3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기본운영경비 집행잔액(7백만원)	7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 기술관 파견 공백기간으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	187
		(한의약산업육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변경(25백만원), 기본운영경비 집행잔액(1백만원)	26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센터 운영(비급여진료비, 운영비) 집행잔액(960백만원), 경북센터 설치비 사업전환(신축에서 리모델링) 집행잔액(600백만원)	1,560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집행잔액(16백만원)	16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정신건강증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219백만원)	219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개소 미선정(577백만원)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자체 추경 일정(299백만원),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주택 미확보(110백만원) 등 집행잔액	1,04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표창 행사 취소로 인한 임차료(22백만원), 자산취득비 중 일부 조달수수료 목적분 이월 불가(1백만원), 일반수용비(3백만원) 등 불용	28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R&D))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392백만원)	39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정신건강정책 관련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따른 지출구조 개선 대상 포함 등 집행잔액(228백만원)	228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378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한 최종 총사업비 확정 후 잔액(5,994백만원)	5,994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재황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잔액(23백만원), 전문병원 평가 위탁 집행잔액(26백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지자체 집행잔액(19백만원)	69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집행잔액(공공요금 22백만원, 민간위탁 9백만원, 일반연구비 7백만원, 포상금 4백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	46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 집행잔액(연구용역비 3백만원)	3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추진단 운영 경비 집행잔액(일반수용비 50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등) 및 연구비 집행잔액(5백만원)	67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임차료(2백만원), 국내여비(9백만원), 국외여비(1백만원)	12
		(소록도병원관리) 집행잔액, 건설비 낙찰차액 등 204백만원(2회 추경 117백만원 포함) 포함	245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한센환자치료) 집행잔액	11
		(소록도병원 임상연구비(R&D)) 집행잔액	1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집행잔액	7
건강보험	1,058	(보험정책사업관리) 일반연구비 등 집행잔액(83백만원)	8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 공무직 운영비 집행잔액(14백만원) 및 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9백만원)	23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구용역 낙찰차액(34백만원)	34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집행잔액(917백만원)	917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15억 5,300만원 중 15억 5,300만원(100%) 전액이 수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755	1,553	1,553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0	155	15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712	712	-	-	-
융자원금회수	685	685	685	-	-	-

나) 미수납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 결산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은 7억 9,100만원이며, 이 중 1억 6,800만원이 수납되고, 6억 2,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	791	168	-	624	78.8
기타경상 이전수입	-	791	168	-	624	78.8

* '01년 LPG 세율인상에 따라 '01.7월부터 LPG차량 소유 장애인(장애등급 무관)에 대해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07.1월부터 일부 장애등급(4~6급) 지원 중단하여 '10.7월부터 전면 폐지함. 지원중단 이후 보호대상자 사망, 세대분리자 등 지원중지자의 부당이득 사례가 발생하여 환수 추진 중

나)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6억 2,400만원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납부저항 등에 따른 것임.

<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624	
기타경상이전수입	624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24	체납자 재력 부족, 납부저항 등

2)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1,515억 1,400만원 중 885억 6,200만원(58.5%)이 수납되고, 629억 5,300만원(41.5%)은 미수납됨.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73,205	151,514	88,562	-	62,953	41.5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14	9,813	5,789	-	4,024	41.0
기타경상 이전수입	72,191	139,794	80,865	-	58,929	42.2
전입금	-	1,908	1,908	-	-	-

나)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미수납액 629억 5,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62,953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024	
- 기타재산이자수입	4,024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58,929	
- 기타경상이전수입	58,92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미편성 등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조 6,337억 900만원이고, 그 중 1조 6,32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40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633,709	994	1,908	26 △26	1,636,611	1,632,493	40	4,078
취약계층지원(082)	5,448	-	-	-	5,448	5,448	-	-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1500)	5,448	-	-	-	5,448	5,448	-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1542)	5,448	-	-	-	5,448	5,448	-	-
사회복지일반 (089)	**458,327**	**65**	-	4 △4	**458,392**	**456,547**	-	**1,845**
사회복지기반조성 (2600)	458,327	65	-	4 △4	458,392	456,547	-	1,845
사회복지전달 체계 (2639)	194,869	65	-	4 △4	194,934	193,818	-	1,1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35)	263,458	-	-	-	263,458	262,730	-	728
아동·보육 (08A)	**342,661**	**189**	-	-	**342,850**	**342,839**	-	11
아동보호 및 복지강화 (1300)	342,661	189	-	-	342,850	342,839	-	11
방과후 돌봄 지원 (1338)	342,661	189	-	-	342,850	342,839	-	11
노인 (08B)	**616,329**	-	-	7 △7	**616,329**	**615,287**	-	**1,042**
노인생활안정 (2100)	587,680	-	-	7 △7	587,680	587,257	-	423
노인돌봄서비스 (2134)	539,422	-	-	-	539,422	538,999	-	423
장사시설 (2140)	48,258	-	-	7 △7	48,258	48,258	-	-
노인의료보장 (2200)	28,649	-	-	-	28,649	28,030	-	619
노인요양시설 확충 (2232)	28,649	-	-	-	28,649	28,030	-	619
보건의료 (091)	**210,944**	**740**	**1,908**	15 △15	**213,592**	**212,371**	**40**	**1,180**
공공보건의료확충 (2700)	132,646	79	-	15 △15	132,725	131,505	40	1,179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2732)	37,808	-	-	-	37,808	37,808	-	-
공공보건의료정보화 (2734)	900	-	-	-	900	900	-	-
지방의료원 등 육성 (2743)	76,363	79	-	15 △15	76,442	76,373	40	28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료취약지 지원(2750)	17,575	-	-	-	17,575	16,424	-	1,151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2800)	31,098	360	1,908	-	33,366	33,365	-	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31,098	360	1,908	-	33,366	33,365	-	1
보건산업육성(3000)	47,200	301	-		47,501	47,501	-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3036)	47,200	301	-		47,501	47,501	-	-

나) 이용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전용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은 총 2,6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26 △26		
사회복지일반	4 △4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드림스타트 회의, 행사(사업보고대회, '25.11) 경비 부족에 따른 비목 자체 전용(국외업무여비→일반수용비, 4백만원)	4 △4
노인	7 △7	○ (장사시설설치) 장사법 개정*('25.1.24. 시행)으로 친자연적 지속 가능 장사시설 확산을 위해 해양장·산분장 등 해외사례 조사 국외연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7 △7
보건의료	15 △15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책임의료기관 협의체 회의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전용	15 △15

라)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이월은 총 4,0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40		
보건의료	4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잔금 이월	40

마)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불용은 총 40억 7,8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4,078**		
사회복지일반	1,84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년 2회 추경 확보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불용 발생(일상돌봄 서비스 500백만원, 긴급돌봄 지원 225백만원)	728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25년 하반기 신규 추진사업으로 사례관리사 채용 지연 등 집행잔액 발생(6.4억) - (의료급여관리사)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로 집행잔액 발생(2억) -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시도별 집행현황 및 불용액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미교부액(교부잔액) 발생 (1.3억) -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로 집행잔액 발생(1.5억)	1,116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아동·보육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수용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2백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9백만원) 등	11
노인	1,0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수용비 등 사업수행 경비 집행잔액(303백만원)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미교부액(120백만원)	423
		(노인요양시설 확충)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복구비용 유보액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신축 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619
보건의료	1,18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영주적십자병원 BTL지원 집행잔액(17백만원), 연구비 낙찰차액(11백만원) 등	28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및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공모 참여기관 수요 저조로 인한 불용	1,15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여비, 업추비 등 집행잔액	1

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916억 2,900만원 중 1,884억 4,400만원(98.3%)이 수납되고, 31억 9,000만원(1.7%)은 미수납됨.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200,719	191,629	188,440	-	3,190	1.7
국립재활원	59,818	57,624	57,401	-	222	0.4
국립정신건강센터	53,577	51,332	50,033	-	1,299	2.5
국립공주병원	19,124	18,416	18,102	-	314	1.7
국립나주병원	26,200	27,249	26,462	-	787	2.9
국립부곡병원	23,530	19,733	19,324	-	409	2.1
국립춘천병원	18,470	17,277	17,118	-	159	0.9

나) 불납결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31억 9,000만원은 대부분 진료비 청구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수액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 수 납 사 유	
계	3,190		
영업수입	3,005	○ 국립재활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222
		○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1,114
		○ 국립공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314
		○ 국립나주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787
		○ 국립부곡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409
		○ 국립춘천병원 진료비 청구분의 건보공단 미수액 등	159
영업외수입	185	○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송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 미수액 및 채권 압류 시효연장에 따른 이자발생분	185

2) 세출

가) 세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2,007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46억원, 초과지출승인액 49억원을 더한 2,102억원이며,

이 중 1,822억원(86.7%)을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24억원(1.2%)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6억원(12.2%)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	이체	이용	전용				
계	200,719	4,630	4,860	-	-	1,195 △1,195	210,209	182,167	2,414	25,629
국립재활원	59,818	3,049	3,383	-	-	955 △955	66,250	57,120	1,950	7,180
국립정신건강센터	53,577	397	1,187	-	-	70 △70	55,160	49,217	234	5,709
국립공주병원	19,124	108	-	-	-	27 △27	19,232	17,209	-	2,024
국립나주병원	26,200	174	214	-	-	108 △108	26,587	24,330	206	2,052
국립부곡병원	23,530	214	77	-	-	-	23,821	18,806	16	4,999
국립춘천병원	18,470	688	-	-	-	35 △35	19,158	15,485	8	3,665

나) 초과지출 승인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초과지출액은 총 48억 6,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초과지출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초 과 사 유	
계	4,860		
국립재활원	3,383	○ 재활연구소 및 병원부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등	3,383
국립정신건강센터	1,187	○ 외부수탁연구과제 운영	783
		○ 직업재활교육 한우리카페, 주차장 운영 등	340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64
국립나주병원	214	○ 광주·전남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127
		○ 전라권역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31
		○ 직장인 정신건강사업 운영	28
		○ 재원환자 직업재활훈련장 운영	28
국립부곡병원	77	○ 외부수탁연구용역 운영	69
		○ 정신건강서비스 교육사업 운영	6
		○ 외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	2

다) 이용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라) 전용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전용은 총 11억 9,5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1,195 △1,195		
국립재활원	955 △955	○ 기본경비, 병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일반연구비, 고용부담금 등)	120
		○ 수입대체경비 외부수탁과제 연구비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부족(반환금및손실금)	835
국립정신건강센터	70 △70	○ 책임운영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수행	50
		○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통계지표 고도화 연구 수행	20
국립공주병원	27 △27	○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10
		○ 기본경비(고용부담금) 부족	17
국립나주병원	108 △108	○ 직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	76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	15
		○ 병원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10
		○ 정신건강사업 수행 국내여비 부족	7
국립춘천병원	35 △35	○ 입원환자 진료보조의사 단기간근로자 채용 일용임금 부족	16
		○ 약사(한시적 기간제) 채용 일용임금 부족	5
		○ 재활훈련시설(카페) 재료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10
		○ 공무직 및 실무수습직원 4대보험 등 고용부담금 부족	4

마)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억 1,4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이 월 사 유	
계	2,414		
국립재활원	1,950	○ 의료장비(상지재활로봇시스템) 납품 계약기간 미도래	160
		○ 연구과제 계약기간 미도래	89
		○ 세출자금 부족(진료수입 미달성)에 따른 연구비 등 이월	1,701
국립정신건강센터	234	○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75
		○ 의료장비 납품기한 미도래	59
국립나주병원	206	○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 구매 등 계약기간 미도래	206
국립부곡병원	16	○ 본관 외벽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 계역기간 미도래	16
국립춘천병원	8	○ 정신재활시설 증축공사 관련 장애물없은 생활환경(BF)인증 용역계약 연장('26.6월)	8

바)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현액 중 불용액은 총 256억 2,900만원 규모임.

< 2025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25,629		
국립재활원	7,180	○ 공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59
		○ 연구비 미사용 및 집행잔액	92
		○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44
		○ 세출 절감(진료수입 미달성 예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6,785
국립정신건강센터	5,709	○ 세입부족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액	3,646
		○ 의무직 결원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1,557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06
국립공주병원	2,024	○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32
		○ 입원환자 감소에 따른 조제투약비, 구호및교정비 등 집행잔액	998
		○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94
국립나주병원	2,052	○ 정원 대비 현원 미달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502
		○ 고용부담금,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등 집행잔액	344
		○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반수용비 의도적 절감액	144
		○ 공사 낙찰차액 등 자본계정 집행잔액	62
국립부곡병원	4,999	○ 예산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2,043
		○ 복리후생비 등 기관 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315
		○ 임상연구비, 재원환자 감소로 인한 구호 및 교정비 등 사업운영 집행잔액	1,765
		○ 예산절감으로 인한 공사 미실시 등 자본계정 집행잔액	876
국립춘천병원	3,665	○ 결원인력 채용 최소화(예산절감) 및 전문의 등 현원 미달운영	1,555
		○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0
		○ 공무직 결원인력 채용 최소화 및 예산절감, 기타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1,287
		○ 자본계정(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563

3. 기금 결산

가. 국민연금기금

1) 개요

□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101조[4]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급여지급,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금융자산 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연금보험료 · 기금 운용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법 §101②
관리 및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자금의 대여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 -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102②

4)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내 용	비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총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177조 5,695억원) 대비 34.2% 증가한 238조 3,202억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 (B)	실적(C)			
수입 (자금 조달)	자체수입	95,792,208	95,792,208	106,803,220	106,385,534	10,593,326	111.5
	정부내부수입	11,288	11,288	11,288	11,769	481	100.0
	여유자금회수	81,765,955	81,765,955	131,505,655	78,368,412	△3,397,543	160.8
합 계		177,569,451	177,569,451	238,320,164	184,765,715	7,196,264	134.2
지출 (자금 운용)	사업비	48,705,371	49,977,605	49,983,406	54,817,521	6,112,150	100.0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34,049	33,674	33,944	33,126	△923	100.8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16,650	116,609	122,418	121,208	4,558	105.0
	국민연금 복지사업	47,089	72,505	72,248	63,571	16,482	99.6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94,327	94,327	94,327	91,152	△3,175	100.0
	국민연금급여지급	48,413,256	49,660,490	49,660,469	54,508,464	6,095,208	100.0
	기금운영비	585,074	585,074	572,696	618,518	33,444	97.9
	기금운영비	584	867	639	1,160	576	73.7
	국민연금공단 운영지원	584,490	584,207	572,057	617,358	32,868	97.9
	여유자금운용	128,279,006	127,006,772	187,764,061	129,329,676	1,050,670	147.8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38조 3,718억원 중 238조 3,202억원(99.9%)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4억원 및 미수납액 369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정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177,569,451	238,371,796	238,320,164	422	51,210	0.02
사회보장기여금	62,022,087	63,880,276	63,880,276	-	-	-
- 사회보장기여금	62,022,087	63,880,276	63,880,276	-	-	-
재산수입	33,670,477	42,841,527	42,809,862	-	31,664	0.0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670,477	42,841,527	42,809,862	-	31,664	0.0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1,381	67,395	67,395	-	-	-
- 잡수입	51,381	67,395	67,395	-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263	51,374	45,686	422	5,265	10.3
- 융자원금회수	48,263	51,374	45,686	422	5,265	10.3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1,765,955	131,519,936	131,505,655	-	14,281	0.01
- 유가증권매각대	59,424,405	114,375,006	114,375,006	-	-	-
- 정부예금회수	22,341,550	17,144,929	17,130,649	-	14,281	0.0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1,288	11,288	11,288	-	-	-
- 전입금	11,288	11,288	11,288	-	-	-

*주: 국민연금기금 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결정액은 수납액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납입고지액은 가입자의 자격소급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 결산보고서상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채권으로 관리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나) 불납결손 및 미수납 사유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대부자 사망(유족 및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및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서 경기 불황으로 장기 연체 지속 등으로 불납결손액이 발생함.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수익성 약화,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서 체납자의 재력부족으로 연체금액(미수납)이 발생하였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자의 월연금액 변경(감소) 등이 연체로 이어져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177조 5,69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억원 증가된 177조 5,854억원이며, 여유자금운용 등을 통해 238조 3,202억원(134.2%)을 지출하고, 46억원이 202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0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77,569,451	15,985	1,279,320 △1,279,320	177,585,436	238,320,164	4,574	17,988
공적연금	177,569,451	15,985	1,279,320 △1,279,320	177,585,436	238,320,164	4,574	17,988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85,074	172	4,013 △4,013	585,246	572,696	239	12,311

단위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금운영비	584	37	303 △20	904	639	80	185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584,490	135	3,710 △3,993	584,342	572,057	159	12,12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292,115**	**15,813**	**33,124 △3,073**	**332,928**	**322,937**	**4,335**	**5,656**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34,049	5,804	△375	39,478	33,944	4,285	1,249
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116,650	8,381	2,512 △2,553	124,990	122,418	50	2,521
국민연금 복지사업	47,089	1,628	30,612 △145	74,133	72,248	-	1,866
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 사업	94,327	-	-	94,327	94,327	-	-
국민연금운영 (급여지급)	**48,413,256**	**-**	**1,247,234**	**49,660,490**	**49,660,469**	**-**	**21**
국민연금급여지급	48,413,256	-	1,247,234	49,660,490	49,660,469	-	21
여유자금운용	**128,279,006**	**-**	**△1,272,234**	**127,006,772**	**187,764,061**	**-**	**-**
여유자금운용	128,279,006	-	△1,272,234	127,006,772	187,764,061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1조 2,793억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계	1,279,320 △1,279,320		
공적연금	1,279,320 △1,279,320	(기금관리운영비) ○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 및 외부회계 감사 등 실시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 ○ 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	303 △20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 및 외부회계 감사 등 실시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 ○ 단가 인상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 및 하반기 신규직원 추가 채용을 위한 용역비 확보 ○ 청년인턴 연장 운영 등 부족분 확보 ○ 임차사무실(99개소) 임차료 부족분 확보	1,897 △2,180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심의 결과 반영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	1,813 △1,813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 ○ 해외투자 관련 국외출장 수요 증가 반영	△375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 해외사무소 망분리 구축 추진 등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개통 순연으로 전담부서의 국내여비 소요 증가	815 △815
		(노후준비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	28 △28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 모바일 발송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분 복지사업 내 전용	△94
		(국민연금 조사연구) ○ 연금개혁 후속 연구 관련 전문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및 출장비 지급예산 부족분 확보	40 △29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 연금개혁 및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 관련 장기 운용전략 수립 등 ○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자문료 및 실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	1,596 △1,244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	△284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 건강검진 수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예산 확보 ○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자문료 및 실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	33 △59
		(복지타운운영사업비)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	561 △145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융자)) ○ 대부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25,000
		(국민연금 급여지급) ○ A값 및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1,247,234
		(여유자금운용) ○ 대부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 A값 및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1,272,234

다)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액 규모는 46억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4,574		
공적연금	4,574	(기금관리운영비) ○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업을 수행하는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선급금 지급 후 잔액(60백만원) *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2개 회계연도를 걸쳐 과업 수행 ○ 계약기간 미도래 연구용역 잔금 이월(20백만원)	80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 국민연금공단 결산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106백만원) ○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53백만원)	159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 악천후 등 현장 여건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2025년 최종 공정률이 예상치에 미달하여 예산 집행 지연	4,285
		(국민연금 조사연구)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50

라)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액 규모는 180억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17,988		
공적연금	17,988	(기금관리운영비)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185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 및 자산운용 성과급 집행잔액, 정·현원차 발생에 따른 급여 잔액	7,769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정현원차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815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42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사옥 임대계약 중도해지 최소화 등으로 반환금·손실금, 에너지 사용량 절약 등 집행잔액	1,249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정보화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9
		(노후준비서비스) 상담·교육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5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 모바일 고지건수 증가로 DM발송 비용 절감 ○ 화상회의 활성화 등에 따른 예산 절감	29
		(국민연금 조사연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93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정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투자 자문 비용 청구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등	816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 집행잔액	3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민간전문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15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모바일 통지 확대로 인한 우편물 제작 및 발송 비용 감소 등	887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디지털 비대면 전자문서를 활용한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물 제작·발송 비용 감소 및 자문의사 계획 대비 실제 근무형태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34
		(복지타운운영사업비)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	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부금 집행잔액	1,882
		(국민연금급여지급) 반환일시금 급여 집행잔액	21

나. 국민건강증진기금

1) 개요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5]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담배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6]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금연교육 및 광고,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 841원/2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 기금 운용수익금	법 §22②
운용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법 §25①

5)「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6) 궐련 841원/2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20개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525원/ml 등

2) 총괄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담배부담금 등 자체수입 2조 9,760억원, 정부내부수입 9,856억원, 여유자금 회수 3,529억원 등 총 4조 3,144억원(수정계획 대비 94.9%) 조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B)	실적(C)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3,251,684	3,251,684	2,975,952	3,094,396	△157,288	91.5
	정부내부수입	1,058,497	1,066,452	985,614	1,529,873	471,376	92.4
	여유자금회수	230,350	230,350	352,879	256,539	26,189	153.2
합 계		4,540,531	4,548,486	4,314,445	**4,880,808**	**340,277**	**94.9**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3,534,834	3,546,117	3,415,460	3,648,480	113,646	96.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8,884	8,884	8,884	13,968	5,084	100.0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35,344	40,754	40,754	45,300	9,956	100.0
	노인의료보장	185,580	185,580	182,799	192,523	6,943	98.5
	공공보건의료확충	176,059	176,059	175,583	259,229	83,170	99.7
	보건산업육성	7,410	7,410	7,410	7,410	-	100.0
	국민건강생활실천	359,602	362,148	361,952	388,304	28,702	99.9
	감염병정책관리	76,957	78,063	76,901	78,143	1,186	98.5
	감염병위기대응	10,045	10,045	10,772	10,845	800	107.2
	감염병진단분석	11,751	11,751	11,663	12,724	973	99.3
	의료안전예방관리	601,831	600,725	592,626	639,246	37,415	98.7
	만성질환관리	63,314	63,314	62,842	55,812	△7,502	99.3
	보건의료연구관리	9,843	9,843	9,776	9,833	△10	99.3
	건강보험제도 운영	1,988,166	1,988,166	1,870,123	1,935,095	△53,071	94.1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48	3,376	3,376	48	-	100.0
	기금운영비	98	98	74	99	1	75.5
	정부내부지출	749,060	749,155	642,595	958,681	209,621	85.8
	여유자금운용	256,539	253,116	256,316	273,548	17,009	101.3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4조 5,485억원, 징수결정액 4조 5,140억원 중 4조 3,144억원(95.6%) 수납되고, 1,995억원(4.4%) 미수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4,548,486	4,513,950	4,314,445	-	199,505	4.4
재산수입	15,989	18,655	17,042	-	1,613	8.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907	18,587	16,975	-	1,613	8.7
- 관유물대여료	82	67	67	-	-	-
경상이전수입	3,170,457	3,156,798	2,958,906	-	197,892	6.3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	79	20	-	60	75.9
- 변상금 및 위약금	65	7	-	-	6	85.7
- 가산금	37	5,547	374	-	5,173	93.3
- 기타경상이전수입	3,170,351	3,151,165	2,958,512	-	192,653	6.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0,350	352,879	352,879	-	-	-
- 정부예금회수	230,350	352,879	352,879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66,452	985,614	985,614	-	-	-
- 전입금(국민건강증진계정)	80,659	-	-	-	-	-
- 전입금(공공보건의료계정)	73,670	73,491	73,491	-	-	-
- 예수금	912,123	912,123	912,123	-	-	-
관유물매각대	65,238	5	5	-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65,238	-	-	-	-	-
- 재고자산매각대	-	5	5	-	-	-

나) 불납결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미수납액 1,995억 500만원은 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함.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199,505	
재산수입	1,613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613	관련 지자체, 기관의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197,892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0	소송 진행 중
- 변상금 및 위약금	6	관련 기관 예산부족 등
- 가산금	5,173	소송 진행 중
- 기타경상이전수입	192,653	ㅇ 부담금 미납금 1,724억원 - 소송 진행 중 ㅇ 국고보조금 미 반납금 202억원 - 관련 지자체, 기관의 예산 부족 등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지출계획현액은 당초계획액 4조 5,40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원과 제2회 추경에 따른 계획변경 80억원이 증가된 4조 5,502억원이며, 이 중 4조 3,144억원(94.8%)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43억원을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46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부문별	당초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4,540,531	1,685	14,776 △6,821	4,550,171	4,314,445	4,329	234,598
건강보험	1,988,166	-	-	1,988,166	1,870,123	-	118,043
노인	185,580	91	-	185,671	182,799	70	2,803
보건의료	2,322,411	1,575	4,325 △5,107	2,323,204	2,208,434	4,243	113,726
사회복지일반	146	-	3,328	3,474	3,451	-	24
아동·보육	35,344	19	7,123 △1,714	40,772	40,754	16	2
취약계층지원	8,884	-	-	8,884	8,884	-	-

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는 68억 2,1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에 따라 7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14,776 △6,821		
보건의료	4,325 △5,107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지방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담배 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필요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3.1억원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310 △310
		(희귀질환자지원) 희귀질환 치료 및 질환 관련 조사 범위 및 대상 확대, 질환별 다양성을 고려한 심층조사 수행으로 정책마련 근거자료의 신속한 확보 필요	73 △7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조기개입을 위한 치료비 지원, 청년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등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2,54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 상환) 제2회 추경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증가	9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제2회 추경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1106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 확보	△9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담배 수입업체의 재고차익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 필요	△3,278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의료관련감염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10월 3주)을 활용해 전문 학·협회 및 의료현장과 협력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 수행할 필요	60 △60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국가예방접종실시) '25년 상반기 출장여비 미지급분 과 향후 사업 관련 출장 부족 예상분 충당 필요	30 △30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 치료비 미지급건 지급을 위해 '25년 질병관리청 자체가용 재원을 통해 충당 추진 필요	1,106
		(국가예방접종실시)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 치료비 미지급건 지급을 위해 '25년 질병관리청 자체가용 재원을 통해 충당 추진	△1,106
		(국민건강영양조사) 2025년도 출장 필수 소요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40 △40
		(건강증진사업관리) 노인 영양관리 서비스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해 별도 예산(일반연구비)이 필요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15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50 △50
사회복지일반	3,328	(부담금환급금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지방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담배 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 필요	50
		(부담금환급금 지원) 담배 수입업체의 재고차익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 필요	3,278
아동·보육	7,123 △1,71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025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1,714
		(모자보건사업) 2025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1,714
		(모자보건사업)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5,409

다)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액은 43억원으로 주로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4,329		
아동·보육	16	(모자보건사업)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16
노인	70	(치매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70
보건의료	4,243	(국가예방접종실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시스템 구축 계약기간 미도래	3,170
		(혈액안전관리) 혈액수급관리시스템 일반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391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연구용역(270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 및 비축의약품 해외제약사의 수급 지연에 따른 재료비(9백만원) 이월	279
		(국가결핵예방) 연구용역(60백만원) 및 결핵 치료제(77백만원) 계약기간 미도래	137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73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70
		(건강증진사업관리)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59
		(국민건강영양조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사시스템 사용 불가에 따른 연구용역이 연장되어 잔금 이월	31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진단검사 시약 입고 과정에서 납품지연	21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매개체 및 병원체 검사 시약 납품지연	12

라)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액 규모는 2,346억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234,597		
사회복지일반	24	(기금관리비)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4
아동·보육	2	(모자보건사업) 연구용역 집행잔액	2
노인	2,803	(치매관리체계구축) 홍보비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불용액, 공립요양병원 BTL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불용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공모 미신청에 따른 불용	1,992
		(노인건강관리) 기본경비 및 연구용역(이월) 집행잔액,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집행잔액	811
건강보험	118,043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저조	118,043
보건의료	113,725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잔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929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코로나19 치료비 지급 예상 대비 중복 청구·폐업 등 사유로 일부 금액 미집행, 연구용역 낙찰차액, 보조사업 교부 잔액 등	420
		(국가결핵예방) 결핵 치료제 수요 추계 어려움으로 인한 미집행, 현장대응차량 신규 제작 등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3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연구용역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287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암역학조사 수요 미발생 및 집행잔액	252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버스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248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인간 인건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222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 국립중앙의료원 토지 미 매각	80,65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연말 공자기금 예수로 인한 이자절감 등	25,722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 공공계정 자체수입 발생	179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환율변동 및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08
		(건강증진사업관리) 건강증진연구과제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4
		(만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정책연구용역 집행잔액	70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및 신축이전TF 운영비 집행잔액	43
		(혈액안전관리) 일반용역비, 민간경상보조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27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보조인력 채용 지연, 용역·물품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인건비, 경상경비 집행 잔액	11
		(정신건강 증진사업)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9
		(희귀질환자지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
		(국민건강영양조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국외여비 등 사업운영비 관련 집행잔액 발생	5
		(에이즈 및 성병예방) 에이즈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낙찰차액, 집행잔액	4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시약·초자 구매 및 용역사업 낙찰 차액, 기타 집행 잔액	3
		(건강증진및질병예방유전체역학조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

다. 응급의료기금

1) 개요

□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 제19조[7]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정부출연금(도로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과징금(요양기관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자금 지원, 응급장비 구비 지원, 응급의료 교육·홍보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 조성 및 운용 >

구분	내 용	비고
조성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35% ·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정부의 출연금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법 §20①
운용	·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법 §21

7) 「응급의료법 」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총괄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규모는 모두 계획(6,401억원) 대비 5.7% 감소한 6,036억원임.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D)	증감 (D-A)	비율 (C/B)
		당초(A)	수정계획 (B)	실적(C)			
수입 (자금 조달)	자체수입	318,200	318,200	166,472	24,221	△293,979	52.3
	정부내부수입	301,861	301,861	301,861	420,739	118,878	100.0
	여유자금회수	20,000	20,000	135,243	50,000	30,000	676.2
합 계		**640,061**	**640,061**	**603,576**	**494,960**	**△145,101**	**94.3**
지출 (자금 운용)	사업비	297,312	312,048	299,220	468,206	170,894	95.9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17,591	17,591	17,565	17,880	289	99.9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31,924	31,924	27,931	31,110	△814	87.5
	응급의료기관 지원	176,012	190,748	182,374	335,081	159,069	95.6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27,270	27,270	27,263	29,144	1,874	100.0
	119구급 운영지원	38,808	38,808	38,391	42,251	3,443	98.9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1,800	1,800	1,789	8,833	7,033	99.4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3,907	3,907	3,907	3,907	-	100.0
	기금운영비	223	223	196	216	△7	87.9
	정부내부지출	315,110	315,110	87,677	5,294	△309,816	27.8
	여유자금운용	27,416	12,680	216,483	21,244	△6,172	1707.3

3) 수입

가) 수입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을 살펴보면, 계획액은 6,401억원이고, 징수결정액 6,088억원 중 6,036억원(99.1%)이 수납되고, 52억원(0.9%)이 미수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정수입 계획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계	640,061	608,821	603,576	-	5,245	0.9
재산수입	5,000	6,700	6,388	-	312	4.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	6,700	6,388	-	312	4.7
경상이전수입	15,300	29,397	24,464	-	4,933	16.8
- 변상금및위약금	-	2	2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5,300	29,395	24,462	-	4,933	16.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7,900	135,620	135,620	-	-	-
- 융자원금회수	297,900	135,620	135,620	-	-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000	135,243	135,243	-	-	-
- 정부예금회수	20,000	135,243	135,243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1,861	301,861	301,861	-	-	-
- 전입금	301,861	301,861	301,861	-	-	-

나) 불납결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수납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액 규모는 총 52억원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미수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계	5,245	
재산수입	31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2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반납 예산 부족 등
경상이전수입	4,933	
- 기타경상이전수입	4,933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부족 등

4) 지출

가) 지출 결산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현액은 수정계획액 6,401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더한 6,407억원이며, 이 중 6,036억원(94.2%)을 지출하였고, 3억원이 202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06억원(37.6%)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원)

부문별	수정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기금운용 계획변경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640,061	634	14,736 △14,736	640,695	603,576	308	240,614
보건의료	640,061	634	14,736 △14,736	640,695	603,576	308	240,614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147억원임.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지출) 계	14,736 △14,736		
보건의료	14,736 △14,736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43.6억원) 확보 필요	4,364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43.6억원) 확보 필요	△4,364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25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련 전문의 대상 인력양성을 지속할 필요에 따라 외상 수련기관에 대해 수련전임의 인건비 및 교육비 등 8.7억원 확보 필요	86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25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련 전문의 대상 인력양성을 지속할 필요에 따라 외상 수련기관에 대해 수련전임의 인건비 및 교육비 등 8.7억원 확보 필요	△868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전공의 공백으로 현장 의료진 피로도와 환자 대기 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이탈 방지 및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 3월 이후 인력 변화가 예측 및 안정화되는 기간까지(3~5월) 지속 지원 필요	4,5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전공의 공백으로 현장 의료진 피로도와 환자 대기 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이탈 방지 및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 3월 이후 인력 변화가 예측 및 안정화되는 기간까지(3~5월) 지속 지원 필요	△4,542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산과·신생아과 인력 및 NICU 부족 등으로 대응여력이 감소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 구축 및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기능을 강화하여 산모·신생아의 통합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7.6억원 증액 필요	1,76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산과·신생아과 인력 및 NICU 부족 등으로 대응여력이 감소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 구축 및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기능을 강화하여 산모·신생아의 통합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7.6억원 증액 필요	△1,762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규모 인원 집결 및 고위인사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응급인프라 구축 필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진료 제공을 위해 경주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상 확대 및 장비 도입 지원을 위한 32억 증액	3,2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규모 인원 집결 및 고위인사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3,200

구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액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유	
		응급인프라 구축 필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진료 제공을 위해 경주시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상 확대 및 장비 도입 지원을 위한 32억 증액	

다) 다음연도 이월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원임.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이월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308		
보건의료	308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연구용역 계약 완료 기간 미도래	3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연구용역 계약 완료 기간 미도래	21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계약 완료 기간 미도래	83
		(119구조장비 확충) 소방헬기 정비용역 및 외주검사 계약기간 미도래	170

라) 불용 명세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액은 2,406억원임.

< 2025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불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액	불 용 사 유	
계	240,614		
보건의료	240,614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집행잔액	26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닥터헬기 공모 미신청 및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 신규 배치 기관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	3,977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장비구매 낙찰차액 및 통신회선료 집행 잔액	16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의정갈등 상태로 인한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 지연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불용 및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수요 저조	7,524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간호사) 파견 사업 참여 저조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집행잔액	219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외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미집행 잔액	61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 사업계획 변경(12개월→6개월)에 따른 불용	30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집행잔액	1
		(응급의료 조사연구) 연구용역 낙찰 차액 등	12
		(119구급대 지원) 구급사이버 교육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9
		(119구조장비 확충) 헬기 출동 감소에 따른 유류비 집행잔액 및 소방헬기 점검 소요 감소에 따른 미집행	194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집행잔액	11
		(인건비) 집행잔액	14
		(기금관리비) 계획변경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1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조기상환 기일 연기에 따른 미집행 잔액	226,80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집행잔액	631

Ⅱ. 실국별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은 3,732억 8,900만원이고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763억 3,400만원이며, 이 중 3,598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8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계	373,289	376,617	376,334	359,845	622	15,867
일반회계	373,143	373,143	372,860	356,394	622	15,843
국민건강증진기금	146	3,474	3,474	3,451	-	24

주) 예산현액(계획현액) = 예산액(계획액) + 예산(계획)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은 건물대여료 등 29개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은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 등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728억 6,000만원 중 3,563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8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계획현액 34억 7,400만원 중 34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계	373,289	376,617	1,186	10,603 △9,302	376,334	359,845 (352,758)	622	15,867
일반회계	373,143	373,143	1,186	10,603 △9,302	372,860	356,394 (349,307)	622	15,843
복지급여 사후관리	663	663	-	-	663	614 (614)	-	49
보건복지 상담센터	8,859	8,859	369	41 △511	8,758	8,530 (8,530)	-	228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	3,915	3,915	-	-	3,915	3,915 (3,915)	-	-
본부 인건비	199,656	199,656	-	13,635 △18,655	194,636	180,582 (180,582)	-	14,054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726	1,726	54	228 △132	1,876	1,805 (1,805)	65	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146	146	4	7 △14	143	132 (132)	1	10

세부사업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40	40	-	2 △3	39	39 (39)	-	-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136	136	4	205 △264	79	69 (69)	8	2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4,067	4,067	539	1,038 △499	5,145	4,876 (4,876)	253	16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608	608	16	495 △228	890	875 (875)	2	1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1,039	1,039	80	1,673 △2,108	683	574 (574)	52	58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505	505	-	67 △116	456	450 (450)	4	3
본부 전산운영 경비(정보화)	3,139	3,139	-	86 △68	3,157	3,114 (3,114)	7	36
부내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88	2,388	-	22	2,410	2,409 (2,409)	-	1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운영	15,936	15,936	-	-	15,936	15,936 (15,807)	-	-
정책기반 구축	6,163	6,163	66	566 △431	6,364	5,974 (5,974)	43	347
정책연구개발 (R&D)	564	564	-	-	564	355 (355)	188	21
국제협력관리	3,900	3,900	55	3,990 △262	7,683	7,096 (7,088)	-	587
WHO사업분담금 지원(ODA)	7,263	7,263	-	-	7,263	7,263 (7,263)	-	-
WHO의무분담금 납부(ODA)	23,016	23,016	-	-	23,016	23,016 (23,016)	-	-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지원	12,218	12,218	-	△190	12,028	12,020 (11,918)	-	8
개도국개발협력 사업(ODA)	60,803	60,803	-	-	60,803	60,803 (54,237)	-	-
WPRO 전략사업 추진(ODA)	1,884	1,884	-	-	1,884	1,884 (1,884)	-	-
보건복지정보 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9,747	9,747	-	51 △91	9,707	9,690 (9,380)	-	17
행정지원인력 운영	4,762	4,762	-	46 △46	4,762	4,374 (4,374)	-	388
국민건강 증진기금	**146**	**3,474**	**-**	**-**	**3,474**	**3,451 (3,451)**	**-**	**24**
기금관리비	98	98	-	-	98	74 (74)	-	24
부담금환급금 지원	48	3,376	-	-	3,376	3,376 (3,376)	-	-

자료 :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이용은 총 3건, 전용은 총 15건임.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의 경우 본부 인건비 사업에서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 운영사업으로 49억원을 이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용액	이용 사유
계		3,538 △5,370	
일반회계	소계	3,538 △5,370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470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 운영사업 공공요금 부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70백만원 이용
	본부 인건비 (7001-100)	△4,900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관리 운영사업 공공요금(4,900백만원) 등 부족분 이용
	국제협력관리 (7035-300)	3,538	○ 엘리엇·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대응을 위한 정부대리로펌 법률자문료 및 행정비용 부족으로 기초연금지급 사업에서 이용(3538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 주요 전용 내역으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에서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회의 개최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관리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1,276 △1,356	
일반회계	소계	1,276 △1,356	
	본부 인건비 (7001-100)	135 △255	○ 공무원 채용후보자 등의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전용(135백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74 △1	○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총액) (7011-237)	1	○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추가배정 (재정운용(담) 기본경비 →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로 직책수행경비 0.69백만원)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28 △77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168	○ 본부 국관 기본경비 필요분 재배정
	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7011-278)	33 △100	○ 전 직원 대상 마음건강진단 시행을 위한 일반연구비 자체전용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220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국관 조정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9)	10 △10	○ '25년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 등 국제협력 및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임차료 → 국내여비 자체전용(10백만원)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12-500)	83 △65	○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42백만원 전용 ○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본부전산운영경비(정보화)사업의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25백만원 전용 ○ 사이버 안전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25백만원 전용

			○ 부내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위해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5백만원 전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우리부 업무용 메신저 임시 서버 임차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임차료 16백만원 전용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1-502)	22	○ 우리부 직원용 생성형 AI 서비스 연계
	정책기반 구축 (7033-304)	204 △69	○ 전 직원 대상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 검사·진단을 시행, 부내 심리상담실 '마음쉼터' 운영 확대, 소송 수행에 따른 기일 참석(법원 출장) 출장여비 지급, 보건복지 주요정책 등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집행
	국제협력관리 (7035-300)	435 △245	○ APEC 보건분야회의 의제 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용역비 → 연구비로 전용(100백만원),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분담금(145백만원), 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사업의 사업출연금(190백만원) → 일반용역비로 전용(335백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 (7035-305)	△190	○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7041-500)	51 △91	○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의 공공요금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으로 42백만원 전용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등 국내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동 사업내 20백만원 전용 ○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에서 25백만원 전용 ○ 부내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사업으로 7백만원 전용 ○ 국자원 화재 발생으로 소실된 업무용 메신터 임시서버 임차료 부족분 '본부 전산운영경비' 사업으로 16백만원 전용 ○ 정보보안 컨설팅, 국자원 화재에 따른 보안 정책 강화 등에 따른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동 사업내 6백만원 전용
	행정지원인력 운영 (7043-300)	32 △32	○ 공무직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32백만원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자료 : 보건복지부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총 10개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총 6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차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622	
일반회계	소계	622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65	○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기본경비(총액) (7011-236)	1	○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8	○ 기본경비 이월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253	○ 기본경비 이월
	기획조정실기본경비(비총액) (7011-278)	2	○ 기본경비 이월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52	○ 기본경비 이월
	국제협력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9)	4	○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 국내여비(2.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5백만원)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12-500)	7	○ 삼성전자 노트북 관련 계약자의 물품 납기 지연으로 인한 이월(7백만원)
	정책기반 구축 (7033-304)	43	○ 소송사건 외부대리인 선임에 대한 성공보수 이월(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위임사무 종료시까지)
	정책연구개발(R&D) (7034-301)	188	○ 연구용역 계약기간('25.9월~'26.2월) 미도래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158억 6,7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본부인건비(일반회계) 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등 기타직보수 불용 등으로 140억 5,400만원,

기금관리비(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여비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15,867	
일반회계	소계	15,843	
	복지급여 사후관리 (2632-313)	49	○ 운영 경비 집행잔액(일반수용비 9백만원, 임차료 1백만원, 국내여비 26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0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보건복지 상담 센터 (2633-300)	228	○ 상담사 휴·퇴직 따른 인건비(상용임금 129백만) 및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 1백만, 고용부담금 2백만), 낙찰차액(자산취득비 82백만), 채팅상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중계서비스이용료 제로화(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 국내여비(5백만), 특근매식비(3백만), 사업추진비(1백만), 일반수용비(조달수수료 1백만) 등 집행잔액
	본부 인건비 (7001-100)	14,054	○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등 기타직보수 불용(13,983백만원) 및 사업장부담금 집행잔액(71백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7011-200)	6	○ 집행잔액
	기획조정실기본경비(총액)(7011-236)	10	○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기본경비(총액)(7011-246)	2	○ 집행잔액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7011-250)	16	○ 집행잔액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기획조정실기본경비(비총액)(7011-278)	13	○ 집행잔액
	재정운용담당관기본경비(비총액)(7011-288)	58	○ 집행잔액
	국제협력관기본경비(비총액)(7011-289)	3	○ 해외 파견공무원의 실의료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잔액(2.4백만원) *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본부전산운영경비(정보화)(7012-500)	36	○ PC 구매(2단계 경쟁), '25-'27년 사무용정보화기기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33백만원) 및 집행잔액(3백만원)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7031-502)	1	○ 국내여비 집행잔액(1백만원)
	정책기반 구축(7033-304)	347	○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정책연구개발(R&D)(7034-301)	21	○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등
	국제협력관리(7035-300)	587	○ 일반용역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106백만원), 국제소송 대응비용 집행잔액(481백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7035-305)	8	○ 집행잔액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7041-500)	17	○ 낙찰차액(7백만원) 및 집행잔액(10백만원)
	행정지원인력 운영(7043-300)	388	○ 공무직 휴직, 퇴직 등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00백만원) ○ 청년인턴 급여 및 여비 등 필요금액 지급 후 잔액 (188백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계**	**24**	
	기금관리비(7276-600)	24	○ 국외여비(6백만원)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18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세입

가) 세입 결산 개요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조 5,544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7,173억 7,300만원이며, 이 중 1조 2,151억 6,900만원을 징수하고 5,022억 400만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은 70.8%임.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C/B)	미수납률 (E/B)
계	1,554,433	1,717,373	1,215,169	-	502,204	70.8	29.2
일 반 회 계	1,279,754	1,371,885	936,447	-	435,438	68.3	31.7
특 별 회 계	274,679	345,488	278,722	-	66,766	80.7	19.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5	1,553	1,553	-	-	1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791	168	-	624	21.2	78.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205	151,514	88,562	-	62,953	58.5	4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0,719	191,629	188,440	-	3,190	98.3	1.7

자료: 보건복지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문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의 편성 여부를 집중 관리하여 수납률을 제고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편성 시 실제 수납액을 고려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5,022억 400만원 중 73.2%에 해당하는 3,678억 5,1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으로 인한 것이며, 그 사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수납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 사유별 금액		
				예산미편성	납기미도래	기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1,088,125	798,365	289,760	289,760	-	-
기타재산이자수입	49,617	34,479	15,138	15,138	-	-
지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139,336	80,407	58,929	58,929	-	-
기타재산이자수입	8,707	4,683	4,024	4,024	-	-
계	1,285,785	917,934	367,851	367,851		

자료: 보건복지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경우 3개월 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함.[8)]

이러한 보조금 사업 정산은 사업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진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2025년 징수결정액은 2024년에 교부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하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음.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별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시도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지특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서울	165,683	34,292	20.7%	16,925	5,441	32.1%
부산	60,457	12,765	21.1%	5,958	3,091	51.9%
대구	31,186	3,260	10.5%	3,134	10	0.3%
인천	46,198	259	0.6%	5,536	261	4.7%
광주	27,035	4,219	15.6%	5,037	862	17.1%
대전	42,375	4,489	10.6%	2,816	54	1.9%
울산	17,030	1,410	8.3%	1,538	-	-
세종	7,023	221	3.1%	455	-	-
경기	177,860	39,897	22.4%	23,897	10,243	42.9%
강원	65,274	30,746	47.1%	12,490	8,312	66.5%
충북	45,487	5,326	11.7%	8,376	1,121	13.4%
충남	68,054	33,977	49.9%	9,182	3,551	38.7%
전북	77,788	39,178	50.4%	7,393	6,058	81.9%
전남	94,996	40,233	42.4%	18,957	13,380	70.6%
경북	112,637	27,418	24.3%	10,886	4,589	42.2%
경남	86,617	27,208	31.4%	13,538	4,876	36.0%
제주	12,042	-	-	1,925	1107	57.5%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국회가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수납률 문제를 지적하자[9]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납부독촉, 분할납부안내 강화, 분기별 10억원 이상 미반납액 집중관리, 미반납 사유 및 납부계획 점검 강화 등 수납률 제고를 도모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2025년 1월 각 부서에 집행잔액 징수요청 시 이자에 대한 징수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수납률은 2023년 69.0%에서 2024년 77.6%로 8.6%p 높아졌으나, 2025년 73.7%로 다시 낮아짐.

<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474,500	474,500	474,500	1,284,044	933,437	196.7	72.7	350,607	-
2023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224.7	69.0	479,288	-
2024	903,336	903,336	903,336	1,280,377	993,307	110.0	77.6	287,070	-
2025	1,240,534	1,240,534	1,240,534	1,167,987	860,486	69.4	73.7	307,501	-

자료: 보건복지부

9)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82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6-596),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주의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약 2배 수준임에도 예산액을 수납액에 비하여 과소 계상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연례적으로 60~70% 수준으로 저조함 -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 보관에 따른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 비목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됨에도, 2020년 이전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징수결정을 실시한 사업 중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과소계상 관행을 시정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결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징수될 수 있도록 정산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생계급여(2025년도 본예산 기준 8조 4,864억원), 의료급여(8조 8,202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2조 5,074억원), 아동수당(1조 9,587억원)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어 2025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54조 2,942억원에 달하고, 이에 비례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이 매년 1조원을 초과하므로, 수납률 1%p가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큰 규모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독려하는 방식으로는 수납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0)]

□ 한편,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 계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본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본예산 증가율보다 수납액 증가율이 높아 과소계상의 문제가 지속되었음.

-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수입(일반회계)의 본예산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23년 210.6%, 2024년 284.5%, 2025년 297.0%로 200%를 상회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음. 2026년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본예산을 2025년 대비 2배 가량 높였으나, 이는 2024년 및 2025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보다 낮은 수준임.

<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일반회계) 결산내역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9,792	9,792	9,792	28,129	22,872	233.6	81.3	5,257	-
2023	9,792	9,792	9,792	32,397	20,623	210.6	63.7	11,774	-
2024	12,312	12,312	12,312	49,211	35,024	284.5	71.2	14,187	-
2025	15,149	15,149	15,149	61,212	44,991	297.0	73.5	16,221	-
2026	29,632	29,632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의 편성 여부를 집중 관리하여 수납률을 제고하고,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편성 시 실제 수납액을 고려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은 정부합동감사 및 법인·시설 현지조사, 부정수급 예방 홍보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복지급여 집행·감독체계 운영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6억 6,300만원으로 이 중 6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복지급여 사후관리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복지급여 사후관리사업	663	663	-	-	-	663	614	-	49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성과지표 현실화 필요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은 2023년까지 성과지표를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점수 평균'을 사용하고 2025년부터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건수'로 변경하였는데, 두 지표 모두 동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현지조사, 관련 공무원 및 법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부정수급예방 및 현지조사 강화'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2023년까지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점수 평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였으나 2025년부터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건수'로 변경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 및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성과지표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세부사업으로, 지역복지정책 우수 지자체 포상,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음.

□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첫째, 기존의 성과지표는 동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를 차용한 것으로 보임.

먼저, 기존의 성과지표인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점수 평균’에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수립되는데, 동 계획에는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지역사회보장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 등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기준’도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참고로, 2023년도 예산에서 ‘복지사업평가’ 단위사업은 동 세부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세부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및 ‘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 해소율’ 등 별도의 성과지표를 사용하였음.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총괄)>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 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5개지표/35점)		• 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구성의 체계성	2.5	정성
			내용의 타당성	2.5	정성
		• 시행계획 변경의 적절성	변경 내용의 적절성	5	정성
			변경 절차의 적절성	10	정량
		• 계획수립절차 및 기한 준수		5	정량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 TF 운영의 적절성		5	정성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8개 지표/ 60점)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17.5점)	• 대표성과의 탁월성		10	정성
		• 우수사업의 탁월성		5	정성
		•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정량
	지역 사회 보장 균형 발전 (42.5점)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결과의 탁월성 (균형발전 전략1)		10	정성
		• 시·군·구 역량 강화 결과의 탁월성 (균형발전 전략2)		10	정성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결과의 탁월성 (균형발전 전략3)		10	정성
		• 시·군·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결과의 탁월성 (균형발전 전략4)		10	정성
		•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정량
3.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2개지표/15점)		•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7.5	정성
		•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7.5	정성
4. 시행과정의 적정성 (3개지표/25점)		• 입법·재정·행정 지원의 적정성		5	정성
		• 시행계획 모니터링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 시행계획 자체평가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5. 시·군·구 조정 및 평가 (2개지표/20점)		•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 및 조정의 적절성		(10)	정성
		• 시·도의 시·군·구 평가의 체계성	평가의 체계성	(5)	정성
			제출기한 준수 및 제출비율	(5)	정량
6.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2개지표/5점)		• 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관리의 충실성		2.5	정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2.5	정량
계				140 (20)	

또한, 보건복지부는 같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원' 사업이 폐지되어 기존 성과지표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센터 운영'은 2024년도부터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2023년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음.

□ 둘째, 2025년부터 대체한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건수’ 역시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건수’를 ‘복지급여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5년도의 경우 2,133건을 목표로 4,708건의 실적을 기록하여 성과 달성도를 220.7%로 표시하였음.

그러나 단순히 부정수급 신고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하여 동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동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서도 증가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될 수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부정수급으로 신고된 건수 중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도 많아 부정수급 적발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려움.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 현황 >

연도	신고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부정수급 해당	부정수급 아님
2024년	3,224	3,223	1	549 (17%)	2,674
2025년	4,705	4,173	532	787 (18%)	3,386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연구개발(7034-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국정과제의 주요정책 및 긴급현안 등에 대한 정책개발수립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수요 및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5억 6,400만원 중 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개발사업	564	564	-	-	-	564	355	188	21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필요

정책연구관리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62.9%에 불과함.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 동 사업은 1999년 시작된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10여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연구과제는 통상 4~9개월 기간, 평균 4천만원 규모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1분기에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예산이 남는 경우 2차 수요조사를 통해 8월에 남은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여 집행률이 62.9%에 불과함.

< 최근 6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802	802	32	-	-	834	774	92.8	78	12
2021	802	802	78	-	-	880	860	97.7	10	10
2022	762	724	10	-	-	734	620	84.4	85	30
2023	705	705	85	-	-	790	680	86.1	70	40
2024	564	564	70	-	-	634	625	98.6	-	9
2025	564	564	-	-	-	564	355	62.9	188	2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2025년의 경우 부서 수요조사 결과 연구 용역이 하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025년도 정책연구과제 계약현황 >

구분	'25년 상반기(1월～6월)		'25년 하반기(6월～12월)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건수	1건	2건	3건	7건 (11월 계약 4건)

자료: 보건복지부

□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연구과제가 발생할 경우 하반기 집행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25년도와 같이 총 13건의 연구과제 중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연구는 3건에 불과하고, 하반기에 계약한 연구과제 중 4건은 11월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업집행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동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연구', '보건의료 위기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 방법 연구' 등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연말에 계약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인 사고이월 제도를 남용하는 것임.

-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예외적인 이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12] 따라서 사고이월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가 되는 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의 회계연도 집행 완료 및 연말 신규발주 지양을 강조하고 있음.

< 예산집행지침 상 일반지침 및 연구용역비 공통지침 중 일부 >

< 일반지침 >

1-1. 지출 효율성 제고

나.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비 공통지침 >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ㅇ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1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이하 생략)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용역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의료자원지원, 이종욱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122억 1,800만원에서 이·전용액 1억 9,0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20억 2,800만원 중 120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지원사업	**12,218**	**12,218**	**-**	**△190**	**-**	**12,028**	**12,020 [11,918]**	**-**	**8**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1,050	1,050	-	△100	-	950	950 [920]	-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671	671	-	-	-	671	671 [650]	-	-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100	100	-	-	-	100	100 [92]	-	-
의료자원 지원	238	238	-	△90	-	148	148 [142]	-	-
이종욱 기념사업	246	246	-	-	-	246	246 [230]	-	-
정책기반 구축	584	584	-	-	-	584	584 [579]	-	-
인건비	7,384	7,384	-	-	-	7,384	7,384 [7,384]	-	-
경상운영비	1,935	1,935	-	-	-	1,935	1,935 [1,919]	-	-
ODA 관리체계구축	10	10	-	-	-	10	2 [2]	-	8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미처분잉여금 관리 필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 1년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이 과다한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처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때까지 출연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후원금, 이자수익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 지출의 경우 인력비용, 사업수행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음.

< 최근 5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수익·비용 및 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익	**57,614**	**59,963**	**52,842**	**66,555**	**74,921**
사업수익	57,512	59,561	52,461	66,097	74,460
정부출연금수익	54,224	56,451	50,357	64,387	72,821
후원금(물품)수익	2,590	2,032	1,710	1,631	1,023
기타수익	698	1,078	394	79	616
사업외수익	102	402	381	458	461
이자수익	91	384	372	441	438
외환차익 등	11	18	9	16	23
비용	**50,271**	**56,837**	**63,875**	**70,415**	**75,764**
사업비용	50,271	56,835	63,874	70,415	75,764
인력비용	6,180	6,529	6,888	7,238	7,668
사업수행비용	42,351	47,561	54,533	60,750	65,699
일반관리비용등	1,740	2,745	2,453	2,427	2,397
사업외비용	0	2	1	0	0
당기운영이익(손실)	**7,343**	**3,126**	**(11,033)**	**(3,860)**	**(843)**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재가공

□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년 미처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 202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0억원 이상의 미처분잉여금이 남아있음. 이는 2025년도 동 사업 본예산 122억 1,800만원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최근 5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요약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산	유동자산	27,084	30,289	19,303	16,319	15,934
	비유동자산	3,559	3,543	3,699	3,362	3,489
	자산총계	30,643	33,832	23,002	19,681	19,423
부채	유동부채	802	550	565	709	741
	비유동부채	2,610	2,924	3,111	3,506	4,059
	부채총계	3,412	3,474	3,676	4,215	4,800
자본	자본금	3,914	3,914	3,914	3,914	3,914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93	72	358	407	427
	미처분잉여금	**23,225**	**26,373**	**15,054**	**11,144**	**10,282**
	자본총계	27,232	30,359	19,326	15,465	14,623
부채비율		12.53	11.44	19.02	27.26	32.83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재가공

□ 일반적으로 미처분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을 주거나 적립금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부에 보관하는 누적된 이익으로, 신규 투자나 경기 침체를 대비한 비자금 확보 목적으로 남겨두거나 매출채권 등에 묶여 있는 장부상 이익으로 현금화가 어려워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자체수입이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수입으로 계산되고 해당 기관의 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이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이 경우 미처분잉여금은 매년 발생한 집행잔액의 누적금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후원금 및 이자수익이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이 역시 목적 사업에 사용될 재원이라는 점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음.

따라서 기타공공기관의 미처분잉여금은 정부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교부받았거나 매년 계획된 공익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뜻임. 그리고 이 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2025년도 결산 기준 자산 중 150억 3,100만원이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처분잉여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이자수익을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음. 출연기관에 교부되는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어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을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자수입 역시 해당 기관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결산상으로는 이미 집행된 예산으로 표시됨.

□ 재단은 2023년 이후 결산상 잉여금 규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부출연금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출연기관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 편성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내역사업 중 '의료자원 지원사업'은 의료물자를 수집하여 보건의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의료기기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최근 5년간 피출연기관 기준 지속적인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피출연기관 기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예산 현액(A)	실집행액(B)			
2021	900	176	1,076	721	900	600	355	-	66.7
2022	450	338	788	316	450	268	472	-	59.6
2023	590	299	889	489	590	344	400	-	58.3
2024	610	400	1,010	526	610	300	484	-	49.2
2025	148	484	632	298	148	142	334	-	95.9

자료 : 보건복지부

- 특히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의료기기 지원의 경우 2024년도 예산 2억 8,000만원을 이월하면서 2025년도 예산에는 환율을 고려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를 합한 3억 1,000만원 전액을 재이월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처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때까지 출연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8조 6,758억 6,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8조 8,329억 3,700만원이며, 이 중 18조 8,307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8,675,860	18,832,885	18,832,937	18,830,702	1,385	848
일반회계	18,675,860	18,832,885	18,832,937	18,830,702	1,385	848

주)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은 생계급여 사업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8조 8,329억 3,700만원 중 18조 8,307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3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8,832,885	76	△24	18,832,937	18,830,702	1,385	848
생계급여	8,489,981	-	△43,886	8,446,095	8,444,457	1,208	429
해산장제급여	46,645	-	-	46,645	46,645	-	-
의료급여	8,822,328	66	-	8,822,394	8,822,263	77	54
긴급복지	373,007	-	-	373,007	373,003	-	4
자활사업	820,578	10	-	820,588	820,313	-	275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6	-	-	6	-	-	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44,363	-	43,886	288,249	288,235	-	14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9,739	-	-	19,739	19,739	-	-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노숙인등 복지지원	4,112	-	-	4,112	4,087	-	25
사회복지사 관리	1,264	-	-	1,264	1,264	-	-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2,405	-	-	2,405	2,405	-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4,638	-	-	4,638	4,638	-	-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734	-	-	734	620	91	23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	-	-	2,800	2,800	-	-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40	-	△25	115	93	7	15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5	-	1	146	140	2	3

자료 :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용은 없고,

□ 전용의 경우, 생계급여 사업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으로 438억 8,6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0**	
일반회계	**소계**	0	
	생계급여 사업	△43,886	○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전용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43,886	○ 자산형성지원 전년 대비 예산 삭감 및 사업 참여율 개선 등으로 예상되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생계급여로부터 전용

자료 : 보건복지부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총 5개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집행잔액 등으로 총 13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차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385	
일반회계	소계	1,385	
	생계급여 사업	1,208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의료급여 사업	77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사업	91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	○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	○ 국내여비 집행잔액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액은 총 8억 4,8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사업, 의료급여 사업, 자활사업에서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4억 2,900만원, 5,400만원, 2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848**	
일반회계	**소계**	**848**	
	생계급여	429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의료급여	54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사업운영비 집행잔액
	긴급복지	4	○ 집행잔액
	자활사업	275	○ 집행잔액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6	○ 금리하락에 따른 지출사유 미발생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4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7)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7)
	노숙인등 복지지원	25	○ 집행잔액 등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23	○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5	○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집행잔액
	복지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집행잔액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생계급여(11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관리’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액 8조 4,899억 8,100만원, 이전용액 △438억 8,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조 4,460억 9,500만원 중 8조 4,444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9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생계급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계급여 사업	8,489,981	8,489,981	0	△43,886	-	8,446,095	8,444,457	1,208	429
생계급여	8,486,403	8,486,403	0	△43,886	-	8,442,517	8,442,196	-	321
기초생활보장관리	3,578	3,578	0	-	-	3,578	2,261	1,208	108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사업의 가입자 변동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편성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입 추이, 실제 참여율, 중도 해지율 및 만기 도래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추계하고,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3]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업임.

□ 동 사업의 지원 내용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신청 당시 연령이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 이상)이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이하 생략)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임.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기간은 3년이므로, 보건복지부는 '22~'24년 기존 가입자의 유지 인원 및 '25년 신규 가입자를 반영하여 2025년도 생계급여 예산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관련 예산으로 15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관련 예산 편성 산출 근거 >

15,741백만원

->13,064명* x 100,000원 x 12개월 x 보조율 83.61% = 13,107백만원

6,300명** x 100,000원 x 5개월 x 보조율 83.61% = 2,634백만원

* ('22~'23년) 6,164명, ('24년) 6,900명(차상위이하 대상자 23,000명 중 30%)

** ('25년) 6,300명(차상위이하 대상자 21,000명 중 30%)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2025년도 집행액은 120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3%에 그쳤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가입자 규모 및 가입 유지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관련 집행 내역 >

12,011백만원

->11,971명('22~'25년 유지자, 해지자*) x 100,000원 x 12개월 x 보조율 83.61%

* 해지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반납처리 중

자료: 보건복지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신규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대상자 중 약 30%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6,300명을 신규가입자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신규 가입자는 2,774명에 불과하였음.

이는 2024년도에도 신규가입자를 6,900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신규 가입자는 2,594명에 그쳤고, 최근 3년 간 신규가입자 평균이 약 3,066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업 대상자로 편입 가능한 인원 규모를 기준으로 참여 인원을 산정하고 실제 참여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4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었으나, 당시 신규가입자로 예상했던 인원 6,900명 전원이 실제로 가입하고 2025년에도 중도해지 없이 유지될 것으로 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2024년 실제 가입자가 2,594명에 그치게 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아울러, 2022년 가입자는 2025년 중 3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만기해지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인원을 연중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2022년 가입자 4,275명 중 약 3,180명이 2025년 8월에 만기해지함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하반기 지원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결국, 동 사업은 신규가입자의 실제 참여율, 기존 가입자의 유지율 및 만기 도래에 따른 지원 종료 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가능 대상자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단순히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최근 가입 추이, 실제 참여율, 중도 해지율 및 만기 도래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추계하고,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지원 사업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보건복지부는 공제할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신청 당시 연령이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이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 이상)이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이와 별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추가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상향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임[14].

□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산정 시 29세 이하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인 청년 수급자는 해당 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으로 공제할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음.

14)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작아질수록 급여액이 증가함

□ 그러나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생계급여 사업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이미 다른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은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청년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지원은 생계급여 사업 본래 목적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보다는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가까운 측면이 있으며, 별도로 추진 중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 및 재정체계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2,44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은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공제할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11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5] 및 「의료급여법」[16]에 따른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 2025회계연도 예산액 8조 8,223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조 8,223억 9,400만원 중 8조 8,22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4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료급여 사업	8,688,201	8,822,328	66	-	-	8,822,394	8,822,263	77	54
의료급여	8,688,201	8,822,328	66	-	-	8,822,394	8,822,263	77	54

자료 : 보건복지부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이하 생략)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6)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고, 관련 사업 예산은 대부분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구분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다른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4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 진료비 등 의료급여 재정 소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급권자	1,516,525	1,522,292	1,517,041	1,559,922	1,627,778
기초1종	1,057,446	1,080,804	1,090,617	1,136,323	1,191,482
기초2종	372,128	357,625	346,313	345,335	357,171
타법	86,951	83,863	80,111	78,264	79,125

1) 기초1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2) 기초2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의 구성원
3) 타법: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의료급여법」[17]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은 0원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여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 현황 >

(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입*	7,648,691	7,882,254	8,360,015	8,435,505	8,800,082**
지 출	7,332,509	7,689,033	8,222,287	8,846,257	9,525,200
누적적립금	316,182	193,221	137,728	0 (△410,752)	0 (△725,118)

* 자치단체경상보조만 해당
** 교부액은 8,820,194백만원이나, 서울시의 지방비 미매칭에 따라 20,112백만원은 기금으로 사용되지 못함
자료: 보건복지부 ('26.5월 기준 결산 자료로, 지자체 결산 검토 진행 중)

□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국비 기준 2,244억 4,9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2026년에도 추경을 통해 2,828억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증가한 수급자 수 및 2025년도 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추가적인 미지급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

(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69,543	189,851	55,296	11,493	-	-	-	224,449

* (18년/19년/25년)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 발생
(20년/21년) 연말 지급을 위한 전산처리 이후 차년도 지급(행정처리기간 소요)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원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추이와 진료비 지출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는 법정 의무지출[18]인 의료급여에 대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201억 1,200만원이 의료급여기금으로 편성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매칭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및 진료비 지출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자활사업(1137-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탈빈곤 및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복지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8,205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205억 8,800만원 중 8,20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자활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활사업	**820,578**	**820,578**	**10**	**0**	**-**	**820,588**	**820,313**	**-**	**275**
자활근로	719,545	719,545	-	-	-	719,545	719,545	-	-
자활센터운영지원	97,388	97,388	-	-	-	97,388	97,388	-	-
자활사업관리	255	255	10	0	-	265	263	-	2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3,390	3,390	-	-	-	3,390	3,117	-	273

자료 : 보건복지부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나)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목적과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대상자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 ③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일반수용비 등 자활사업관리, ④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이 중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창업 유지 의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시장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50만원, 추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은 총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간 1년 이상 탈수급한 인원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민간시장 취·창업을 유지할 대상자 5,625명, 12개월 이상 유지할 대상자 1,875명을 산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3,390백만원 ○ 5,625명* x 0.75** x 0.5백만원 x 보조율 83.61% = 1,763백만원 ○ 1,875명*** x 0.66**** x 1백만원 x 보조율 83.61% = 1,034백만원 * 7,500명(1년 누적 탈수급자 수의 최근 3년 평균 등 고려) x 0.75 ** 탈수급 6개월 지속률 *** 7,500명(1년 누적 탈수급자 수의 최근 3년 평균 등 고려) x 0.25 **** 탈수급 12개월 지속률 ○ 행복e음 기능개선 등 시스템 구축 592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 예산 중 시스템 구축비 5억 9,200만원을 제외한 27억 9,800만원 중 25억 2,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실집행액은 1억 2,800만원에 불과하였고,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인 26억 7,000만원(95%)이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단순히 사업 대상자 규모를 과다하게 추계한 문제를 넘어, 사업 시행 전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제 지원 대상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계획이 수립된 데 따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1년 이상 탈수급한 사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히 탈수급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후 민간시장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즉, 탈수급은 민간시장 취·창업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 증가, 재산 변동, 가구 구성 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자활

사업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 탈수급자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산정할 경우 실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탈수급자 통계 >

(단위: 명)

연도	2023	2024	2025
탈수급자 (취·창업자 포함)	7,769	6,483	6,926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도입 사업으로, 실제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실증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과거 탈수급자 규모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 탈수급 경로, 취·창업 여부 및 근속 여부 등 사업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규모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업 대상자 설정 및 예산 산정 단계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44조[20]에 따라 작성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

20)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능력 유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기를 잠정적으로 10월로 안내하였고, 이후 10월 기준 탈수급자(민간 취·창업 포함) 현황 등을 파악하였음에도, 실제 신청 규모 및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25년 10월 24일 국고보조금 25억 2,500만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하였음.

□ 비록,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시스템이 2025년 11월에 구축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자활사업이라는 일정한 제도 하에 있던 참여자 3만 2천여 명에 대하여 민간시장 취·창업 여부, 탈수급 사유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교부된 보조금의 약 5%만 집행된 결과는 보조사업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목적과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자활근로 참여 이력 및 탈수급 경로 등 실제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대상자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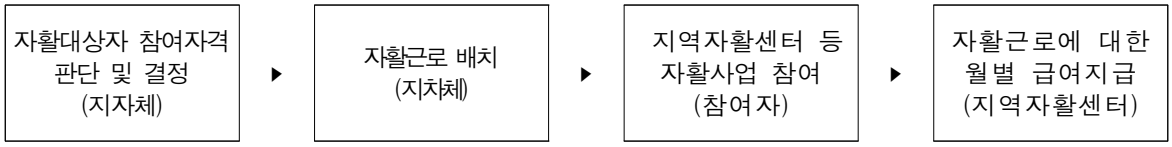
다)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과 중앙자활자금의 역할 및 법적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과 탈수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자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 자활사업 지원 절차 >



< 2025년 자활사업 예산 편성 내역 >

820,588백만원
- ㅇ 자활근로 : 719,545백만원
  - 근로유지형 : 단가 32,980원 / 인원 8,400명
  - 사회서비스형 : 단가 56,210원 / 인원 44,800명
  - 시장진입형 : 단가 64,220원 / 인원 18,800명
- ㅇ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 : 18,116백만원
-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 72,314백만원
  - 250개소 × 427,893천원 × 67.6%(보조율)
    (인건비) 67,637백만원 = 1,916명 × 4,352천원 × 12월 × 67.6%
    (운영비) 4,677백만원(전년동)
- ㅇ 자활사업관리 : 255백만원
- ㅇ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 3,390백만원
- ㅇ 전년도 이월액 1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21]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5호[22]는 자활기금의 재원으로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공적 목적에 맞게 관리·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23]의 30%는 법령상 자활기금이 아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용하는 중앙자활자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 또는 지역자활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음.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23) 2025년 3분기 기준 1년 간 약 1,666억원

< 2024년 4분기 ~ 2025년 3분기 중앙자활자금 조성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4.4분기	'25.1분기	'25.2분기	'25.3분기
조성액	502	126	139	109	128
상환액* 등	19	2	4	5	8
이자	78	6	8	61	4
운용가능금액	**599**	**134**	**151**	**175**	**140**

* 창업자금지원, 사업장 임대보증금 상환 등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중앙자활자금 운용 세부내역 >

(단위: 억원)

지원 분야	사업명	'26년 예산
총 계		**599**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자활기업 창업 지원사업	259
	경영관리지원사업	
	우수자활기업 선정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교육사업	
	정부양곡배송차량 영업용 번호판 구입 대출지원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자활생산품 판로지원	231
	복지·자활 도우미 역량향상 교육사업	
	참여자 자기주도 학습자료 개발·보급	
	자활 사례관리 지원	
	공유용기 인프라 구축사업	
	청년 자활근로 활성화	
	사업장 환경 및 센터시설 개선 지원	
	지역특화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자활사업 기능보강 지원	
자산형성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88
운영비·예비비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자금 위탁운영비	21
	개발원 중앙자활자금 운영비	
	예비비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자활자금은 연도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사회의 예결산 심의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서 운용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이미 '자활센터운영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24]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다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관리하는 중앙자활자금으로 조성·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장기관이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장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도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관리·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수익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중앙자활자금을 운영하기보다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한 자활기금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자활기금은 법령에서 재원과 용도, 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앙자활자금보다 공적 통제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은 자활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4) 2025년도 예산 181억 1,600만원(인건비 60억 5,600만원, 사업비 100억 1,900만원, 관리운영비 20억 4,100만원)

< 2025년 자활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수입		계	집행액 (4)	잔액 (3-4)
	전년도 말 보유총액(1)	수입액 (2)			
합 계	369,564,182	32,225,319	401,789,501	29,435,270	372,354,231
서울특별시	47,988,461	3,947,085	51,935,546	4,856,133	47,079,413
부산광역시	36,078,611	1,248,266	37,326,877	2,066,443	35,260,434
대구광역시	14,995,116	1,514,336	16,509,452	635,371	15,874,081
인천광역시	21,941,665	1,374,609	23,316,274	882,324	22,433,950
광주광역시	11,991,752	815,863	12,807,615	604,627	12,202,988
대전광역시	9,547,292	336,040	9,883,332	414,692	9,468,640
울산광역시	8,792,459	778,961	9,571,420	404,484	9,166,936
세종특별자치시	1,053,867	144,741	1,198,608	59,995	1,138,613
경기도	39,323,276	9,732,957	49,056,233	8,414,779	40,641,454
강원특별자치도	34,196,806	2,022,529	36,219,335	1,328,452	34,890,883
충청북도	17,886,515	1,041,625	18,928,140	477,135	18,451,005
충청남도	19,390,936	1,780,489	21,171,425	849,868	20,321,557
전북특별자치도	38,013,353	2,112,220	40,125,573	4,629,338	35,496,235
전라남도	24,320,948	1,160,006	25,480,954	1,401,305	24,079,649
경상북도	19,906,809	1,710,839	21,617,648	1,120,711	20,496,937
경상남도	18,764,591	1,898,047	20,662,638	837,557	19,825,081
제주특별자치도	5,371,725	606,706	5,978,431	452,056	5,526,375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의 관리체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자활기금과 중앙자활자금 중 어느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2631-32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에 따른 손해(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적 유지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의 50%(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8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800	2,800	-	-	-	2,800	2,800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800	2,800	-	-	-	2,800	2,800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상해보험 가입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기존 가입자의 보장 연속성 확보와 신규 종사자의 지원 기회 보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및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25]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을 민간경상보조하는 사업임.

- 2024년 기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자 규모는 정부지원을 받은 28만명을 포함해 약 29만명 수준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 >

상품명		내용	가입규모 (24년기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사업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국고 50% 지원)	-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50% 1만 원 정부지원, 1만 원 시설부담	약 280,000명
	일반단체상해공제 (자부담 100%)	- 국고보조사업 조기마감에 따른 대체상품 -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전액 시설자부담	약 10,300명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수의 회원들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저축과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회원 및 사용자의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가 공공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24년 말 기준 자산 규모 5천억원, 정회원 5만 2천명을 달성하였음.

□ 2022~2025년 가입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소진 이후에도 해지환급금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가입을 지원하여 연평균 31만 4,237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음.

<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전체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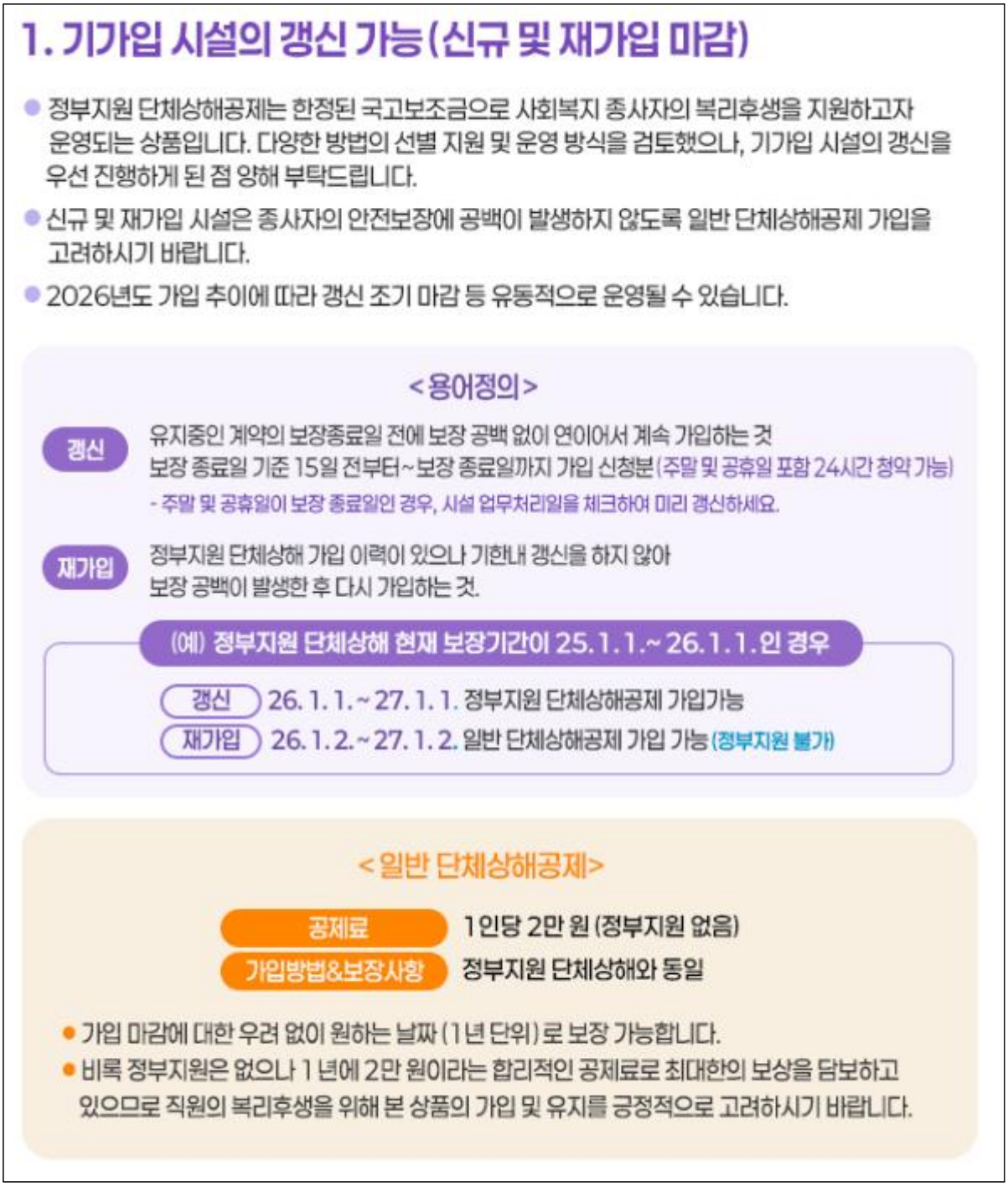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2025
가입자 지원	308,521명	335,432명	351,602명	349,077명
보상 건수 (보상 금액)	3,990건 (2,335백만원)	4,626건 (2,969백만원)	5,194건 (3,445백만원)	5,079건 (3,692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의 지원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가입 시설의 갱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는 국고보조금 기준, 2023년 35,940명, 2024년 36,495명으로 나타났고, 2025년의 경우에는 21,177명으로 전체 지원을 받은 가입자의 6%에 불과하였음.

< 2026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안내 >



자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상해보험 가입지원의 정책목적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상 위험 보장과 처우 개선이라면 신규 시설 종사자도 동일한 정책대상인데, 기존 가입자만 계속 우선하면 신규 시설 종사자는 매년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으로 지원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 및 인력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가입자의 보장 연속성 확보와 신규 종사자의 지원 기회 보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및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복지행정지원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066억 1,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 3,072억 2,400만원 중 3,048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06,614	306,614	307,224	304,834	-	2,389
일반회계	111,745	111,745	112,290	111,016	-	1,27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4,869	194,869	194,934	193,818	-	1,116

주)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122억 9,000만원 중 1,110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11,745	556	851 △863	112,290	111,016	-	1,273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6,620	-	-	6,620	5,995	-	625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67,723	-	-	67,723	67,723	-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30,189	-	-	30,189	30,189	-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978	556	97	4,631	4,020	-	611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972	-	685 △782	2,875	2,868	-	7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80	-	△12	68	65	-	3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183	-	69 △69	184	156	-	27

자료 : 보건복지부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자율)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949억 3,400만원 중 1,938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4,869**	**66**	**4 △4**	**194,934**	**193,818**	**-**	**1,116**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자율)	23,481	-	-	23,481	23,481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제주)	297	-	-	297	297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세종)	171	-	-	171	171	-	-
사례관리전달 체계 개선	170,920	65	4 △4	170,985	169,869	-	1,116

자료 :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이용은 없고,

□ 전용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장기계속 2차)'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6억 8,5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 등 회의·행사 경비 부족에 따라 400만원을 자체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700 △700**	
일반회계	**소계**	**696 △696**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85 △685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장기계속 2차)」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세부사업 내 685백만원 전용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0.3	○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총액)에서 국관 기본경비 조정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11 △11	○ 지침 제작·인쇄·배포를 위하여 자체 전용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0**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 △4	○ 회의·행사(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 '25. 11.) 경비 부족에 따른 비목 자체 전용(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은 없음.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액은 총 23억 8,9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6억 2,500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원고 소 취하에 따른 행정소송 종결 등으로 인하여 6억 1,100만원 등 총 1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으로 1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2,389	
일반회계	소계	1,273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625	○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11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원고의 소 취하에 따른 행정소송 종결 및 금융기관별 시스템 검토 등 금융재산조사 전산연계 참여 일정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	○ 일반수용비 집행잔액(6백만원), 연구용역비 등 기타 집행잔액(1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총액)	3	○ 집행잔액
	복지행정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27	○ 기재부 예산 미배정(24백만원) 불용 및 집행잔액(3백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1,11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116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시도별 집행현황 및 불용액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미교부액 발생(130백만원) ○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지역간 정원 조정시 국고보조율 차이로 집행잔액 발생(150백만원) ○ (의료급여관리사) 지역 간 정원 조정 시 국고보조율 차이 발생(200백만원) ○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비 집행잔액(6백만원) ○ (고독사예방사례관리) 2025년 하반기 신규 추진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 포함)에서 사례관리사 채용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639-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을 발굴하여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6억 2,000만원 중 59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620	6,620	-	-	-	6,620	5,995	-	625
고독사 정책 기반 구축	2,706	2,706	-	-	-	2,706	2,693	-	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3,914	3,914	-	-	-	3,914	3,302	-	612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고독사 고위험군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필요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수요와 지방자치단체 수행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 실태조사 지원, 고독사 예방 정책 연구 등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개발 및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정책기반구축 사업'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청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청년층의 경우 빈곤, 취업실패, 심리적 어려움 등 중장년층과 다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전화·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등 기존 복지서비스 접근 방식으로는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80개 내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음회복·관계회복·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었음.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적 지지와 격려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적 안부 문자 발송, 끊어진 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자조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자 간 네트워킹 지원 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의 약 3.5배 수준인 12,040명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추계하였으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8.8%를 반영하여 2025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약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사업 초기임을 고려해 이 중 10%인 4,977명으로 지원 대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3,914백만원 ○ 고독사 위험군 지원: 12,040명 x 460천원 x 50% = 2,769백만원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4,977명 x 460천원 x 50% = 1,145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청년층은 전체 고독사 위험군과 비교하여, 지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낮지만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외부 접촉을 회피하는 특성으로 인해 중장년층과는 다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은둔 성향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장년과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개입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1년도 고독사 사망 통계 >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 미상	계
고독사 사망자 수	2	53	164	526	1,001	981	624	27	3,378
전체 사망자수 대비	0.1	1.9	3.6	4.7	3.9	2.2	0.28	-	1.1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수	2	30	66	137	169	105	57	5	571

1)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연령미상은 변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경찰청 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연앙인구는 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인구를 말함.

□ 다만,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은 기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내에서도 청년층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신설된 것으로, 기존 사업과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된 지원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체계는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활용하되, 청년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2025년도 사업 집행 결과,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대상은 당초 예상한 4,977명의 약 42%인 2,081명에 그쳤고, 편성 예산 39억 1,400만원 중 약 15.6%인 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별도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비(5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청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청년 고독사 위험자 수	청년 서비스 지원자 수 (A=B+C)	청년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유형별 지원자 수							타 사업 연계 (C)
			지원자 수 (실인원) (B)	소계*	마음 확인	관계 회복	일상 회복	통합적 지원 체계	기타	
계	2,081	1,896	1,549	3,490	803	1,208	1,176	228	75	347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고독사 사망자는 청년층보다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령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에도,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관계 설정 및 지원대상 규모 산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연령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음.

<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 >

(단위 : %)

연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7년	0.0	2.3	6.5	18.8	33.6	21.5	12.0	5.2	100 (2,412)
2018년	0.0	1.8	6.3	16.0	31.3	25.4	13.2	6.0	100 (3,048)
2019년	0.0	1.9	5.7	18.0	30.7	24.4	13.1	6.2	100 (2,949)
2020년	0.0	1.4	4.9	14.6	32.3	28.5	11.8	6.5	100 (3,279)
2021년	0.1	1.6	4.9	15.7	29.9	29.3	12.6	6.1	100 (3,378)
2022년	0.0	1.7	4.2	14.8	30.4	31.4	12.2	5.3	100 (3,559)
2023년	0.0	1.2	4.6	13.8	30.2	31.6	13.0	5.7	100 (3,661)

* 연령 미상(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시 비중임
: ('17) 102명, ('18) 106명, ('19) 68명, ('20) 33명, ('21) 27명, ('22) 20명, ('23) 33명
** 계의 괄호는 연령 미상을 포함한 고독자 사망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연령별 고독사 위험요인 및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자를 실제 지원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밀하게 추계하는 등 사업 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1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회계·인사·후원금 및 대상자 서비스 이력관리 등 운영 업무와 기관 평가 등 관리 업무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화 기반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 2025회계연도 예산액 29억 7,200만원, 이·전용액 △9,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8억 7,500만원 중 28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972	2,972	-	685 △782	-	2,875	2,868	-	7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고도화	853	853	-	685 △718	-	820	819	-	1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2,010	2,010	-	-	-	2,010	2,010	-	-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 운영	109	109	-	△64	-	45	39	-	6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 소요 충당을 위한 집행 지양 필요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회가 확정한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도 신설·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경계선 지능 아동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기능 개선, 개인정보 파기 관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 중 6억 2,100만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장기계속 2차)' 사업의 잔금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9,7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1억 3,500만원으로, 편성액의 15.8% 수준에 그쳤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내역사업 예산 집행 내역 >

예산 853백만원 - (전용) 621백만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장기계속 2차)'에 대한 잔금 지급 - (내역변경) 97백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사업의 감리비 충당 -> (집행) 135백만원(집행률 15.8%)

자료: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관 업무환경 구축’ 사업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인사·회계 기능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22년 9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5차례 연장되어 2025년 1월에 완료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유사 정보화 사업인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 일정 지연 현황 >

구 분	당초	1차 연기 (‘23. 1.)	2차 연기 (‘23 .6.)	3차 연기 (‘24. 1.)	4차 연기 (‘24. 3.)	5차 연기 (‘24. 10.)
개통예정일	‘22. 9. 6.	‘23. 10. 30.	‘24. 1. 2.	‘24. 7. 31.	‘24. 10. 28.	‘25. 1. 31.
연장기간	-	+13개월	+2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지연사유	-	설계 오류로 전면 재개발 추진	테스트 결과 오류 다수 발생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통한 추가 기능 검증 및 오류 개선 시행)			완성도 제고

자료: 보건복지부

□ 동 내역사업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경계선 지능 아동 심리정서지원 사업 등 신규 제도 시행 및 기존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임에도, 상당 부분이 별도 사업의 잔금 지급에 활용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회가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한 취지에 배치되는 집행으로 볼 소지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아동 심리정서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기능 개선 및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는 과업에서 제외되었고,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 기능은 자체 개발을 통하여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장기계속 사업의 특성상 사업 종료 시점 및 최종 소요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해당 잔금 지급은 기존 사업의 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로서 당초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내역사업 예산 편성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편성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수요와 우선순위를 면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장기계속 사업의 종료 시점 및 잔여 소요액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 소요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는 등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자활·아동·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 단위 공공부문 사례관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교육훈련 등의 내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액 1,709억 2,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09억 8,500만원 중 1,698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70,920	170,920	65	0	-	170,985	169,869	-	1,116
통합사례관리	19,210	19,210	-	-	-	19,210	19,210	-	-
자활사례관리	3,982	3,982	-	-	-	3,982	3,982	-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55,389	55,389	-	4 △4	-	55,389	55,259	-	130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1,591	21,591	65	-	-	21,656	21,508	-	148
의료급여관리사	20,113	20,113	-	-	-	20,113	19,918	-	195
방문건강관리	48,143	48,143	-	-	-	48,143	48,136	-	6
사례관리정책지원 센터 운영	1,010	1,010	-	-	-	1,010	1,010	-	-
사회복지 교육훈련	462	462	-	-	-	462	462	-	-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1,020	1,020	-	-	-	1,020	385	-	635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사업의 수요 및 기존 사례관리 체계를 고려한 사업 설계 필요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규모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의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사업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 114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로 10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의 예산 편성 근거 >

1,020백만원 ○ (인건비) 114명 x 2,981천원 x 6월 x 50%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보유한 비율이 높아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7월부터 동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25년도 실제 채용된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는 48명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2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인원만큼 예산을 교부하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지연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동 내역사업을 '통합사례관리' 내역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신규 인력을 별도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채용 가능 규모와 기존 사례관리 체계와의 역할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우선,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4명, 2026년 115명을 채용하여 2년에 걸쳐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를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수요는 48명에 그쳤음.

특히,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1차 수요조사는 예산안 제출 이후인 9월 11일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인력 확충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채용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시·도별 고독사예방 사례관리사 수요조사 결과 >

(단위: 명)

구분	수요조사 결과				
	2024년		2025년		
	1차('24.9.11)	2차('24.11.21)	3차('25.5.1)	4차('25.7.1)	5차('25.8.12)
합계	**34**	**42**	**43**	**48**	**48**
서울	1	1	1	1	1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3	3	3	3	3
광주	-	-	-	-	-
대전	4	4	4	4	4
울산	2	2	2	2	2
세종	-	-	-	-	-
경기	7	9	8	8	8
강원	3	3	3	3	3
충북	4	4	5	5	5
충남	-	1	1	1	1
전북	-	1	1	1	1
전남	5	5	5	10	10
경북	3	4	4	4	4
경남	-	3	4	4	4
제주	2	2	2	2	2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독사 위험자 역시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활용하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신규 인력 채용은 단기간의 예산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인건비 및 인력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전담 인력을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 즉, 고독사 예방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관리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도 인력 확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와 기존 사례관리 체계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고, 이후 기존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통합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규모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의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연금정책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1) 개요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기초연금지급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추가경정예산 기준)은 21조 4,863억 2,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8,000만원)과 예비비(946억 1,200만원), 이용(705억 5,300만원 감), 전용(100만원 증·감) 및 세목조정·내역변경(7,600만원 증·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총 21조 5,104억 6,400만원으로,

이 중 21조 3,573억 7,3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3%)이 집행되었고,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3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1,878,987	21,486,325	80	94,612	77 △70,630	21,510,464	21,357,373	87	153,00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08-206)	51,912	51,912	-	-	-	51,912	51,912	-	-
연금정책사업관리 (2008-306)	876	876	-	-	-	876	652	50	174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초연금지급 (2131-300)	21,814,577	21,421,915	80	-	△70,553	21,351,442	21,202,820	-	148,62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82	82	-	-	20 △8	94	91	3	-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252	252	-	-	57 △69	240	204	34	2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	-	-	94,612	-	94,612	90,406	-	4,206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관리 운영비)(8420-841)	10,000	10,000	-	-	-	10,000	10,000	-	-
국민연금기금 전출 (출산크레딧급여) (8420-842)	1,288	1,288	-	-	-	1,288	1,288	-	-

자료: 보건복지부

2) 예비비 지출 현황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서의 패소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등 판정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6억 1,200만원이 배정되어 904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4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비비			비고
	배정	집행	불용	
계	94,612	90,406	4,206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7042-300)	94,612	90,406	4,206	○ ISDS 패소로 중재판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등 패소 판정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자료: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가) 이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705억 5,300만원이 이용 감액되었음.

- **기초연금지급**에서 이용 감액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1531-305)에 224억원, **국제협력관리**(7035-300)에 35억 3,800만원, **부모급여지원**(3143-300)에 213억 4,300만원,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에 232억 7,200만원이 각각 이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이용 사유
계	△70,553	
기초연금지급 (2131-300)	△70,553	○ 장애인연금 부족분(△22,400) ○ 정부대리로펌 계약금액 부족분(△3,538) ○ 부모급여 부족분(△21,343) ○ 의료공백 해소 및 비상진료체계 대응(△23,272)

자료: 보건복지부

나) 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된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에서 특근매식비(210-05목)와 직책수행경비(250-02목) 간 비목 변경에 따른 100만원의 전용 증·감이 있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전용 사유
계	1 △1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1	○ 원활한 기관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된 **연금정책사업관리**에서 연구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함에 따라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및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에서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각각 300만원과 3,4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8,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이월 사유
계	87	
연금정책사업관리 (2008-306)	50	○ 연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이월
연금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2)	3	○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이월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34	○ 원활한 국 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 이월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1,53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연금정책사업관리**에서 홍보용역 낙찰차액 등 1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초연금지급**에서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1,486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200만원이 불용되었고,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서 판정금 산정 및 지급 시점 간 환율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42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불용 사유
계	153,003	
연금정책사업관리 (2008-306)	174	○ 홍보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기초연금지급 (2131-300)	148,621	○ 국민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연계감액자 증가 등
연금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82)	2	○ 집행잔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042-300)	4,206	○ 달러($) 산정 판정금 특성에 따른 환율 차이 집행잔액

자료: 보건복지부

나. 국민연금기금 수입·지출

1) 수입 결산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피고용자분담금 등 총 17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계획액은 177조 5,694억 5,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38조 3,717억 9,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38조 3,201억 6,4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4억 2,200만원과 512억 1,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의 수납액이 계획액에 비하여 크게 초과 달성된 것은 채권·주식·대체투자에서 직접 실현된 이익으로서 '이자 및 재산수입'이 약 9조원 초과 수납되었고, 투자 이익 실현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기타유가증권매각대'가 약 35조원 초과 수납된 것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계	177,569,451	177,569,451	238,371,796	238,320,164	422	51,210
□ 자체수입	95,792,208	95,792,208	106,840,572	106,803,221	-	36,930
○ 사회보장기여금	62,022,087	62,022,087	63,880,276	63,880,276	-	-
- 고용주부담금 (38-381)	27,736,547	27,736,547	27,628,914	27,628,914	-	-
- 피고용자분담금 (38-382)	34,285,540	34,285,540	36,251,363	36,251,363	-	-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 이자 및 재산수입	33,670,477	33,670,477	42,841,527	42,809,862	-	31,665
-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54-542)	197	197	3,196	272	-	2,925
- 기타민간이자 수입(54-544)	6,627	6,627	4,343	4,065	-	278
- 기타재산이자 수입(54-546)	33,663,653	33,663,653	42,833,988	42,805,526	-	28,462
○ 잡수입	51,381	51,381	67,395	67,395	-	-
- 기타 잡수입(69-691)	8,858	8,858	19,315	19,315	-	-
- 기타영업외 잡수입(69-697)	42,523	42,523	48,080	48,080	-	-
○ 융자원금회수	48,263	48,263	51,374	45,688	422	5,265
-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75-752)	208	208	2,758	312	-	2,446
-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75-754)	48,055	48,055	48,616	45,376	422	2,819
□ 정부내부수입	**11,288**	**11,288**	**11,288**	**11,288**	**-**	**-**
○ 전입금	11,288	11,288	11,288	11,288	-	-
-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1,288	11,288	11,288	11,288	-	-
□ 여유자금회수	**81,765,955**	**81,765,955**	**131,519,936**	**131,505,655**	**-**	**14,281**
○ 유가증권매각대	59,424,405	59,424,405	114,375,006	114,375,006	-	-
- 지방채매각대 (84-842)	2,267,142	2,267,142	2,259,939	2,259,939	-	-
- 기타유가증권 매각대(84-843)	41,048,738	41,048,738	76,355,196	76,355,196	-	-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 국채매각대 (84-844)	16,058,525	16,058,525	35,460,687	35,460,687	-	-
- 공채매각대 (84-845)	50,000	50,000	299,185	299,185	-	-
○ 정부예금회수	22,341,550	22,341,550	17,144,929	17,130,649	-	14,28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2,246,770	2,246,770	3,473,382	3,473,382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3)	20,094,780	20,094,780	13,671,112	13,656,831	-	14,281
- 기타민간예치금 회수(85-854)	-	-	435	435	-	-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국민연금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연금급여의 지급에 관련된 제비용 집행분을 제외한 자금은 적립되는데,[26]

2025년도 기금 운용 수익금은 약 232조원으로 그 수익률은 18.82%로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총 적립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 약 1,526조원임.

26)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2) 지출 결산

가) 개요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은 여유자금운용 부문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급여지급 등 총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액(수정)은 50조 5,626억 7,9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159억 8,5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은 50조 5,786억 6,400만원으로, 이 중 50조 5,56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45억 7,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9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운용 부문 지출계획액(수정)은 127조 67억 7,200만원인데, 기금 운용 수익금 증가에 따른 초과지출 60조 7,572억 8,900만원이 발생하여 총 지출액은 187조 7,640억 6,1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지출 결산 현황(여유자금운용 제외)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49,290,445	50,562,679	15,985	50,578,664	50,556,103	4,574	17,988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584	867	37	904	639	80	185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448,790	448,790	-	448,790	441,021	-	7,769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04,098	103,815	135	103,950	101,976	159	1,815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31,602	31,602	-	31,602	29,060	-	2,542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6,746	6,746	4,409	11,155	6,870	4,285	-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24,044	23,669	1,395	25,064	23,815	-	1,249
본부 순환근무자 주거지원 (7431-455)	2,444	2,444	-	2,444	2,444	-	-
기금운용직 단기숙소 지원 (7431-457)	815	815	-	815	815	-	-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4,201	4,201	8,381	12,582	12,453	-	129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563	1,563	-	1,563	1,548	-	15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7432-441)	32,465	32,371	-	32,371	32,342	-	29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3,061	3,072	-	3,072	2,928	50	94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48,766	49,118	-	49,118	48,302	-	816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573	573	-	573	570	-	3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	1,344	1,344	-	1,344	1,029	-	315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17,054	16,770	-	16,770	15,883	-	887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7,623	7,597	-	7,597	7,363	-	234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7433-424)	9,089	9,505	1,628	11,133	11,130	-	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7433-425)	38,000	63,000	-	63,000	61,118	-	1,882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478-601)	94,327	94,327	-	94,327	94,327	-	-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401)	48,413,256	49,660,490	-	49,660,490	49,660,469	-	21

자료: 보건복지부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운용 부문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지출액
	당초	수정	
계	**128,279,006**	**127,006,772**	**187,764,061**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9720-972)	1,517,201	244,967	5,053,039
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9720-974)	39,198,063	39,198,063	21,981,844
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9720-976)	39,079,196	39,079,196	71,953,544
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9720-977)	26,196,589	26,196,589	53,911,222
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9720-978)	22,287,957	22,287,957	34,864,412

자료: 보건복지부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에서 당초 계획 대비 급여지출 규모 확대로 1조 2,472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에서 대출 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5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15개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이 8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변경액	변경 사유
계	1,279,320 △1,279,320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303 △20	○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 및 외부회계 감사 등 실시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2025. 4. 7.) ○ 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2025. 7. 23.)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897 △2,180	○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 및 외부회계 감사 등 실시를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확보(2025. 4. 7.) ○ 단가 인상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 및 하반기 신규직원 추가 채용을 위한 용역비 확보(2025. 8. 28.) ○ 청년인턴 연장 운영 등 부족분 확보(2025. 10. 31.) ○ 임차사무실(99개소) 임차료 부족분 확보(2025. 12. 18.)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7378-614)	1,813 △1,813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심의 결과 반영(2025. 4. 7.)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2025. 10. 31.)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375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2025. 10. 31.) ○ 해외투자 관련 국외출장 수요 증가 반영(2025. 12. 23.)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정보화) (7432-432)	815 △815	○ 해외사무소 망분리 구축 추진 등(2025. 4. 7.)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개통 순연으로 전담부서의 국내여비 소요 증가(2025. 10. 31.)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28 △28	○ 노후준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확보(2025. 10. 31.)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7432-441)	△94	○ 모바일 발송 확대로 인한 비용절감분 복지사업 내 전용(2025. 10. 31.)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변경액	변경 사유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40 △29	○ 연금개혁 후속 연구 관련 전문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및 출장비 지급예산 부족분 확보(2025. 8. 28.)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1,596 △1,244	○ 연금개혁 및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 관련 장기 운용전략 수립 등(2025. 8. 28.) ○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자문료 및 실사를 위한 국외 업무여비 부족분 확보(2025. 12. 23.)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284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2025. 10. 31.)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33 △59	○ 건강검진 수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예산 확보(2025. 8. 28.) ○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자문료 및 실사를 위한 국외 업무여비 부족분 확보(2025. 12. 23.)
복지타운운영사업비 (7433-424)	561 △145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2025. 8. 11.) ○ 청풍리조트 시설유지보수 등 부족분 확보(2025. 10. 3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융자) (7433-425)	25,000	○ 대부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2025. 8. 11.)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401)	1,247,234	○ A값 및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2025. 12. 4.)
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9720-972)	△1,272,234	○ 대부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2025. 8. 11.) ○ A값 및 수급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2025. 12. 4.)

자료: 보건복지부

다)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주요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에서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공정률(11.66%)이 계획(17.08%)에 미달함에 따라 42억 8,5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45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국민연금기금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이월 사유
계	**4,574**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80	○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업을 수행하는 결산감사용역 특성상 선급금 지급 후 잔액(60백만원) ○ 계약기간 미도래 연구용역 잔금 이월(20백만원)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59	○ 국민연금공단 결산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106백만원) ○ 기금운용직 채용 대행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53백만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4,285	○ 악천후 등 현장 여건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2025년 최종 공정률(11.66%)이 예상치(17.08%)에 미달하여 예산 집행 지연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50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자료: 보건복지부

라)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기금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관리운영 인건비**에서 정·현원 차이 등에 따라 77억 6,900만원이 불용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관리**에서 모바일 안내문 발송으로 우편물 제작·발송비가 절감되어 11억 2,1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179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연금정책관 소관 국민연금기금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불용 사유
계	17,988	
기금관리운영비 (7376-200)	185	○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7,769	○ 경영평가성과급·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3,261백만원) ○ 정현원차 급여잔액(4,508백만원)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1,815	○ 정현원차 등 인건비·운영비 집행잔액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7378-614)	2,54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7431-453)	1,249	○ 사옥 임대계약 중도해지 최소화 등으로 반환금·손실금, 에너지 사용량 절약 등 집행잔액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 (7432-432)	129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5	○ 상담·교육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7432-441)	29	○ 모바일 고지건수 증가(전년대비 26.1% 증가)로 DM발송 비용 절감(26백만원) ○ 화상회의 활성화 등에 따른 예산 절감(3백만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금 액	불용 사유
국민연금 조사연구 (7432-442)	9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816	○ 해외사무소 현지인력 정현원차에 따른 인건비, 투자 자문 비용 청구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 (7432-446)	3	○ 집행잔액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7432-449)	315	○ 민간전문가 결원에 따른 인건비·고용부담금 등 집행잔액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7432-452)	887	○ 안내문 모바일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물 제작·발송 비용 감소 등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7432-455)	234	○ 디지털 비대면 전자문서를 활용한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물 제작·발송 비용 감소 및 자문의사 계획 대비 실제 근무형태 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복지타운운영사업비 (7433-424)	4	○ 오수처리장 개량공사 정산 잔액 등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7433-425)	1,882	○ 대부금 집행잔액
국민연금 급여지급 (7631-401)	21	○ 반환일시금 급여 집행잔액

자료: 보건복지부

다.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27]에 따라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519억 1,2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08-206)	51,912	51,912	-	-	51,912	51,912	-	-
· 국내여비 (220-01목)	1	1	-	-	1	1	-	-
· 사업추진비 (240-01목)	1	1	-	-	1	1	-	-
· 기타보전금 (310-04목)	51,910	51,910	-	-	51,910	51,910	-	-

2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0년 1월 공포된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4를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2021년 8월)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당초에는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28]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온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그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29]

2025년 4월 공포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납부 재개’ 요건이 삭제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30]

- 참고로, 2026년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

28)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9)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이고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국가가 지원함.[31]

□ 동 제도는 소득활동 참여 여부의 변동성이 비교적 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속 납부를 지원하고, 이들이 적정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32]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33]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로부터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유지를 뒷받침하였다고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로부터 12개월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은

---

3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수준) 영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32)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 개정이유
(전략) 또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후략)

33)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0. 1. 2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107,070명) 중 약 90.8%(97,168명)가 2025년 6월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지하였고,

동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12월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2024년 12월의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에 따른 평균 납부기간(월) 증가분의 차이를 비교하면 수혜집단(22.25개월: 88.41개월 → 110.66개월)이 비수혜집단(17.93개월: 57.32개월 → 75.25개월)에 비하여 약 4.3개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분석 결과: ① 납부 유지 >

(단위: 명, %)

지원 종료자 수[1] (A)	납부 유지자 수[2] (B)	납부유지율 (B/A)
107,070	97,168	90.8

주 1)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지원기간(12개월) 충족으로 지원이 종료된 자
2) 2025년 6월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상태를 유지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분석 결과: ② 납부 기간 >

(단위: 개월)

구 분	제도 시행('22. 7.)					
	6개월 전 ('21. 12.)	6개월 후 ('22. 12.)	12개월 후 ('23. 6.)	18개월 후 ('23. 12.)	24개월 후 ('24. 6.)	30개월 후 ('24. 12.)
수혜집단 납부개월	88.41	94.12	97.35	101.19	105.62	110.66
'21. 12. 대비 증가분(A)	-	5.71	8.94	12.78	17.21	22.25
비수혜집단 납부개월	57.32	62.89	65.86	68.89	72.00	75.25
'21. 12. 대비 증가분(B)	-	5.57	8.54	11.57	14.68	17.93
차이(A-B)	-	0.14	0.40	1.21	2.53	**4.32**

자료: 보건복지부

나) 적절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목표관리 강화 필요

국가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재산·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성과지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평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성과 중심의 국가재정 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를 시행하면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34)]

- 참고로,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의 성과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기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고, '1 프로그램 - 1 성과지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3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인건비·기본경비나 청사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등과 같이 성과 측정의 실익이 낮은 일부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제2항[35] 본문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운영' 프로그램 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세부사업은 같은 프로그램의 '연금정책사업관리' 세부사업과 함께 기본경비성 비용이라는 사유로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성과관리 제외 대상 기준 >

구분	설정 범위
일반재정·정보화	○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교부금, 차입이자 상환, 예비비, 청사관리,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출연금 사업 등
R&D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 *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기준 • 정부연구소 인건비, 출연(연) 운영지원 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자료: 대한민국정부(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11면.

□ 그러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세부사업은 국민연금개혁 지원단[36]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정책사업관리' 세부사업과 달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국가재정을

35)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6)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5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홍보·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에 이전하는 복지성 재정사업에 해당하는바, 단순한 기관 운영 경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타당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농·어업인,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국민연금 수급자 수'나 '소득신고자 확대 성과'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는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효과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

지원대상	근거 (「국민연금법」)	세부사업명 (회계·기금/소관부처/사업코드)	성과지표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제외)	제100조의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일반회계/보건복지부/2008-206)	**미설정**
농·어업인	법률 제8541호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7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림축산식품부/4135-366)	지원대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해양수산부/3443-303)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업인
사업장 가입자	제100조의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반회계/고용노동부/1231-300)	고용보험 가입자 수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제19조의2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7432-441)	소득신고자 확대 성과
		실업크레딧지원(일반) (일반회계/고용노동부/1232-351)	고용보험 가입자 수
		실업크레딧지원(고보)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1293-35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세부사업의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도입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초연금지급(21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초연금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추가경정예산 기준) 21조 4,219억 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8,000만원)과 이용(감)(△705억 3,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1조 3,514억 4,200만원 중 21조 2,028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1,486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기초연금지급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초연금지급 (2131-300)	21,814,577	21,421,915	80	△70,533	21,351,442	21,202,820	-	148,621
· 기초연금급여	21,791,220	21,398,558	-	△70,533	21,328,005	21,179,448	-	148,557
· 제도운영비	23,357	23,357	80	-	23,437	23,372	-	65

나) 기초연금지급 사업의 신속집행 대상 선정 부적절

법정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지급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더라도 그 자금은 민간의 수급권자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신속집행제도의 민생회복·경기진작 목적에 직접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향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을 계획·시행하여왔음.

- 참고로, 정부는 2025년 1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7%)를 설정하고,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대상을 선정·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4년 vs. 2025년 >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잠정)			전년대비 증가분 (D-B)
	연간계획 (A)	상반기계획 (B)	집행률 (B/A)	연간계획 (C)	상반기계획 (D)	집행률 (D/C)	
합 계	561.8	351.1	-	562.5	358.0	-	6.9
중 앙	252.9	164.4	65.0	254.0	170.2	67.0	5.8
지 방	282.5	169.5	60.0	282.5	170.9	60.5	1.4
지방교육	26.4	17.2	65.0	26.0	16.9	65.0	△1.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1. 9.),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 국가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에 따른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자금 이전 규모를 확대하고 그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가운데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마다 주기적으로 집행 소요가 발생하는 법정 의무지출인바,[37]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을 앞당기거나 교부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수급권자에게 즉시 이전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신속집행의 목적이나 취지에 직접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신속집행'을 사유로 2025년 3월 18일 약 4조 8천억원의 국고조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액(21조 1,794억 4,800만원) 중 약 48.8%가 2025년 3월 말까지 교부 완료되었음.

---

37)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5회계연도 중 2022회계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4회계연도에 걸쳐 기초연금지급 사업을 국가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여왔음.

< 2025회계연도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 >

(단위: 백만원, %)

구 분	'25. 1. 15.	'25. 2. 6.	'25. 3. 10.	'25. 3. 18. (신속집행)	'25. 5. 12.	'25. 6. 5.
교부액	1,812,260	1,846,714	1,848,014	**4,824,300**	1,839,467	3,008,850
누적비율	8.56	17.28	26.00	**48.78**	57.47	71.67
구 분	'25. 7. 7.	'25. 8. 11.	'25. 9. 11.	'25. 10. 10.	'25. 11. 11.	'25. 12. 10.
교부액	543,684	1,098,364	1,998,109	1,847,744	254,573	257,368
누적비율	74.24	79.42	88.86	97.58	98.78	100

자료: 보건복지부

□ 국가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일정이나 규모뿐 아니라 해당 재정지출의 실제 민간 이전 시기와 규모 등 경기부양 효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적·경직적으로 집행되는 법정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조속한 자금 이전이라는 신속집행의 본래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한 것은 신속집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부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서 부처별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민생회복이나 경기진작 등의 정책목표 달성이 제한되는 법정 의무지출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게 되면 그 실적이 과장될 소지가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신속집행제도의 목적·취지에 직접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초연금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38]의 신속집행 대상 선정·관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는 2025년 7월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거쳐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15.8조원 초과 달성한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음.

< 2025회계연도 상반기 신속집행 성과 >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계획 (A)	상반기 목표액 (B)	상반기 집행액 (C)	집행률(C/A)	초과실적 (C-B)
합 계	622.3	390.3	406.1	65.3	15.8
❶재 정	551.1	349.9	363.8	66.0	13.9
중 앙	241.1	161.1	167.5	69.5	6.4
지 방	283.5	171.5	177.3	62.6	5.8
지방교육	26.6	17.3	19.0	71.4	1.7
❷공공기관	66.0	37.6	39.9	60.4	2.3
❸민간투자	5.2	2.8	2.4	46.1	△0.4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5. 7. 10.), 「상반기 신속집행 15.8조원 초과달성,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속도전 주문」

38)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지급 외에 부모급여·아동수당·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법정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2025년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되었음.

다)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실집행잔액의 연례적 반납 지연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에서 2026년 5월 말 현재까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실집행잔액(3,299억 2,400만원) 전액이 미반납된 상황인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잔액 적기 반납을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39]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세목으로 편성되는데,

---

39)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본예산(21조 7,912억 2,000만원) 대비 3,926억 6,200만원이 감액된 21조 3,985억 5,800만원으로, 이용(감)(△705억 5,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21조 3,280억 500만원 중 21조 1,794억 4,8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집행되고 1,485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21조 1,794억 4,800만원) 중 20조 8,495억 2,400만원이 기초연금 지급으로 실집행되고, 나머지 3,299억 2,400만원(1.6%)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참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460억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025회계연도 실집행잔액(3,299억 2,400만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용·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교부액)	불용액	실집행액	실집행잔액
	본예산	추경							
'21 결산	14,941,365	14,941,365	-	-	14,941,365	14,941,365	-	14,854,740	86,625
'22 결산	16,091,685	16,267,158	13,261 △119,739	92,859	16,253,539	16,253,539	-	16,148,692	104,847
'23 결산	18,507,787	18,507,787	△9,752	-	18,498,035	18,167,787	330,248	18,057,728	110,059
'24 결산	20,178,925	20,178,925	△202,256	-	19,976,669	19,586,669	390,000	19,487,574	99,095
'25 결산	21,791,230	21,398,558	△70,553	-	21,328,005	21,179,448	148,557	20,849,524	329,924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실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반환을 명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반납되고 있는데,[40]

2026년 5월 말 현재까지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잔액(3,299억 2,400만원) 전액이 반납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2023회계연도(9.4억원) 및 2024회계연도(34.5억원) 실집행잔액 일부도 아직 국고에 반환되지 아니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전년도 실적보고 후 4~12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41]하여 실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음.

---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5회계연도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 실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

(2026년 5월 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미반납액	727.5	141.4	140.8	133.7	53.8	188.3	18.7	5.6	366.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미반납액	90.1	245.1	296.6	138.8	278.1	413.2	59.0	2.1	3,299.2

주 1) '23회계연도 미반납 현황: 전북(9.4억원)
2) '24회계연도 미반납 현황: 서울(4.8억원)·인천(72만원)·충남(12.7억원)·전북(6.1억원)·전남(2.2억원)·경북(8.7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실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여 반납 의무가 면제되는바,[42]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잔액 반납 지연은 상당한 규모의 기회비용(이자수익 등)을 야기하므로 그 적기 반납을 독려·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교부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1,460억원가량 발생하여온 실집행잔액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실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집행잔액의 적기 반납을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급여 내역사업의 실집행잔액을 원활히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연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그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설명함.

라)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초 선발·양성된 강사의 활동기간이 해당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매년 신규 강사 선발·양성이 반복되는 실정이고, 강사 1인당 연평균 강의횟수는 약 2.8회에 불과하여 연간 강의계획 대비 강사 선발·양성 규모가 과잉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건복지부는 강사 선발·양성 및 활용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기획·운영되고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용역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5회계연도 '제도운영비'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액 3억 8,700만원 중 8,000만원은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

□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여왔고, 인재원은 매년 연초 10명 내외의 강사를 선발·양성하여 기초연금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일부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인재원이 연초 선발·양성한 강사의 활동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정되어 있어 'N년도 연초 강사 선발·양성 → 연말 활동 종료 → (N+1)년도 강사 선발·양성 → 연말 활동 종료'가 반복되고 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선발·양성된 강사 일부(3명)는 강의에 참여한 이력이 전혀 없는 등 강사 1인당 연평균 강의횟수가 약 2.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 강사 활용 현황: 2021～2025 >

(단위: 명, 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A)	12	10	10	8	12
보건복지부	2	-	-	-	-
지방자치단체	8	8	8	6	10
국민연금공단	2	2	2	2	2
강의횟수(B)	41	17	17	22	31
강사 1인당(B/A)	3.4	1.7	1.7	2.8	2.6
미참여 강사	-	2	-	-	1

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의 강사 선발·양성 프로그램이 매년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강사의 강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강사 활용의 낮은 실적은 연간 강의 계획 대비 강사 선발·양성 규모가 과잉인 측면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강사 선발·양성 및 활용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력과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컨대 인재원이 2017년부터 올해(2026년)까지 10년간 강사 선발·양성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온 점을 고려하여 그간 확보한 인재풀(talent pool)을 권역별로 운용하도록 하거나 당해 용역의

성과지표로 ‘강사 1인당 연평균 강의횟수’ 등을 설정하여 연간 강의계획과 강사 선발·양성 규모 간 비일관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의 강사 선발·양성 및 활용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기획·운영되고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용역계약 전반을 철저히 점검·감독**할 필요가 있음.

3)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은 국가가 「국민연금법」 제87조[43]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8420-841)	10,000	10,000	-	-	10,000	10,000	-	-

43)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상적 관리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에 반영되는 국민연금공단 인건비(7378-605), 기타경비(7378-607) 및 정보화 운영비(7378-614) 등 3개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합산하여 산출됨.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당초 계획액은 5,844억 9,000만원인데, 계획변경을 통하여 5,842억 7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전년도 이월액(1억 3,5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5,843억 4,200만원) 중 5,720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1억 2,600만원이 불용됨.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개 세부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584,490	584,207	135	584,342	572,057	159	12,126	617,358
공단관리운영 인건비(7378-605)	448,790	448,790	-	448,790	441,021	-	7,769	476,058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7378-607)	104,098	103,815	135	103,950	101,976	159	1,815	102,833
공단본부운영 정보화 운영비(7378-614)	31,602	31,602	-	31,602	29,060	-	2,542	38,467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1992년부터는 국민연금기금 지출계획으로 수립하되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왔는데,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38~66.7%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일반회계 지원율이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3%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지출액) 기준 지원율은 약 1.75%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지출액) 및 일반회계 지원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결산	'25결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A)	526,571	536,285	543,811	548,622	572,057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405,326	412,260	419,981	423,233	441,021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97,804	99,981	101,051	102,395	101,976
공단관리운영 정보화운영비 (7378-614)	23,441	24,044	22,779	22,994	29,060
일반회계 전입금 (B)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일반회계 지원율 (B/A)	1.90	1.86	1.84	1.82	1.75

자료: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요건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전 국민 의무가입'이 원칙인 국민연금제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회계 부담률 상향 관련 국회 지적사항 >

○ **('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 필요(제도개선 요구)
○ **('24년도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 필요(제도개선 요구)
○ **('25년도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25년도 및 '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률을 10% 수준으로 확대 필요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2025년 4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된 후 2033년부터 13%가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2056년경에서 2071년경(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 5.5% 가정)으로 15년가량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재원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여 지출 급증을 야기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여지가 있는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기금>

4)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7431-4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은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소속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당초) 67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44억 9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111억 5,500만원 중 68억 7,000만원이 지출되고, 42억 8,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7431-451)	6,746	6,746	4,409	11,155	6,870	4,285	-

나) 인재개발원 신축사업의 이월 반복 등 집행 부진 부적절

2022회계연도 이후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사업비의 이월이 매년 반복되어온바(2025년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61.6%),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인재개발원 준공 시까지 계획공정률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인재개발원 운영·관리와 관련한 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소요를 '202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적정 규모로 반영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44] 2021년 5월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에는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음.

□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는 조달청 중간·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공사비·시설부대비 등이 조정되고 설계용역이 약 15개월간 중단되면서 전체 일정이 순연되었고,[45]

2025년 1분기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 체결이 늦어져 착공이 1개월가량 지연되었으며,

2025년 말에는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한 동절기 공사 중단 등에 따라 2026년 4월 말 기준 공정률(17.84%)은 목표치(18.30%)에 미달하여 준공 계획도 약 3개월 늦추어진 상황임(2027년 5월 → 2027년 8월).

---

44)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45) (1차 정지)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심의(기간: 2023. 4. 14. ~ 2023. 10. 3.)
(2차 정지)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심의(기간: 2023. 11. 15. ~ 2024. 9. 2.)

□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이후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 관련 사업비의 이월이 매년 반복되었고,

2024년 11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2024년 내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에 수립된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의 차년도 이월이 예견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119억 6,600만원) 대비 52억 2,000만원을 감액한 67억 4,600만원은 2025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감액 규모를 확정하였으나,[46]

2025년에도 착공 지연, 공사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저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공정이 재차 지연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계획현액 111억 5,500만원 중 42억 8,500만원(38.4%)이 이월된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당시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규모가 실제로는 과소 추계되었고, 인재개발원 신축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미진하였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6) 「제418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11. 13.) 회의록」, 48면.
○ 보건복지부제1차관 OOO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첫 번째, 사옥 신축 및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액수를 따져 보니까 5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후략)

<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사업 비목별 명세 >

(단위: 백만원)

구분	차년도 이월액			2025년					2026년
	'22	'23	'24	계획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440	467	4,409	6,746	6,746	11,155	6,870	4,285	7,774
건설보상비 (410-01목)	440	24	-	-	-	-	-	-	-
실시설계비 (420-02목)	-	242	-	-	-	-	-	-	-
공사비 (420-03목)	-	200	4,390	5,534	5,534	9,924	5,716	4,208	6,484
감리비 (420-04목)	-	-	-	1,151	1,151	1,151	1,128	23	1,281
시설부대비 (420-05목)	-	1	19	61	61	80	26	54	9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6월 초 현재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비의 추가적인 이월 없이 2026년도 계획현액(120억 5,900만원) 전액이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으며 2027년 8월 중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매년 반복되어온 사업비 집행 부진과 이월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202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수립될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등에는 준공 계획이 3개월가량 늦추어진 사정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인재개발원 신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획공정률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준공 계획이 늦추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 규모의 인건비·자산취득비 등이 반영된 202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은 당초 487억 6,600만원이었는데, 두 차례의 지출계획 변경으로 총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491억 1,8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이 중 483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7432-443)	48,766	49,118	-	49,118	48,302	-	816
· 자산운용 및 전략	33,772	33,794	-	33,794	33,634	-	160
· 해외사무소 운영	12,863	13,370	-	13,370	12,753	-	617
· 글로벌 투자 경쟁력 강화	1,249	1,125	-	1,125	1,088	-	37
· 스마트워크센터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치 및 업무환경 구축	882	829	-	829	827	-	2

< 2025회계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지출계획 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금액	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 8. 28.)	상용임금 (110-03목)	△11	○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 관련 장기 운용전략 수립 위한 컨설팅 추진 및 부족한 국내여비 확보 등
	임차료 (210-07목)	△657	
	국내여비 (220-01목)	257	
	일반연구비 (260-01목)	400	
	소 계	**△11**	
자체변경 (2025. 12. 23.)	일반수용비 (210-01목)	347	○ 해외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자문료 및 글로벌 자산 실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확보 등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180	
	임차료 (210-07목)	△272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24	
	국외업무여비 (220-02목)	592	
	국외교육여비 (220-03목)	△100	
	소 계	**363**	
합 계		**352**	

자료: 보건복지부

나)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 계획변경 과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필요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당초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약 144.9%로 나타나는바, 지출계획안 과소 수립과 지출계획의 자체 변경이 연례적 관행으로 고착화되지 아니하도록 실제 소요를 반영한 지출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세부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탁한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47]이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드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에 수립된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약 16.1%를 기록하였고, 2025년도 연간 기금투자수익률(잠정)은 역대 최대치인 18.82%를 달성하는 등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국내외의 주식·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뿐 아니라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투자처를 발굴하며 여유자금을 운영하여온 성과를 뒷받침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자산운용 및 전략', '책임투자 및 위험관리'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직접 관련된 내역사업(이하 "여유자금 운용 내역사업"이라 한다)에 당초 수립된

47)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계획액 대비 연간 지출액의 비율이 최근 4년간 약 144.9%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실제 소요가 당초 지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연중 자체 계획변경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온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 내역사업의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지출계획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였던 2021년을 제외한 4년간의 당초 계획액은 총 50억 7,700만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28억 7,300만원이 수정·증액되어 총 73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음.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여비 지출계획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국내여비 (220-01목)				국외업무여비 (220-02목)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당초(A)	수정			당초(A)	수정		
2025결산	278	535	430	154.7	1,242	1,834	1,832	147.5
2024결산	278	489	483	173.7	1,346	1,841	1,778	132.1
2023결산	208	409	391	188.0	708	1,379	1,087	153.5
2022결산	238	264	261	109.7	779	1,199	1,094	140.4
2021결산	238	158	145	60.9	779	379	246	31.6
5개년 합계 ('21～'25)	1,240	1,855	1,710	137.9	4,854	6,632	6,037	124.4
4개년 합계 ('22～'25)	**1,002**	**1,697**	**1,565**	**156.2**	**4,075**	**6,253**	**5,791**	**142.1**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된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 운영위탁 등)’ 프로그램 지출계획액(2,921억 1,500만원) 대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세부사업에 반영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지출계획액의 변경 규모(8억 4,900만원) 비율은 약 0.3%로,

주요항목(분야·부문·프로그램)의 지출금액 변경범위가 20% 이하이면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48)]

□ 다만,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지출계획의 자체 변경은 지출계획안 수립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소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계획안의 과소 수립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지출계획의 자체 변경이 일반적 관행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49)]

---

48)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4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

□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지출계획안의 과소 수립과 지출계획의 자체 변경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실제 소요를 반영한 지출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5. 인구아동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조 2,318억 1,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5,855억 7,200만원이며, 이 중 5조 5,704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11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계	5,231,818	5,212,209	5,585,572	5,570,454	11,178	3,938
일반회계	4,852,250	4,827,232	5,200,387	5,185,313	11,162	3,9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2,661	342,661	342,850	342,839	0	11
국민연금기금	1,563	1,563	1,563	1,548	0	15
국민건강증진기금	35,344	40,753	40,772	40,754	16	2

주) 예산현액(계획현액) = 예산액(계획액) + 예산(계획)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은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사업 등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 예산현액(계획현액) 5조 5,855억 7,200만원 중 5조 5,704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고 39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연금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5,231,818	457	21,936 △599	5,585,572	5,570,454	11,178	3,938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1,038	-	-	1,038	1,038	-	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6,283	-	0 △10	36,273	36,219	-	5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544	14	-	17,558	17,540	-	18
가정위탁 지원·운영	5,706	-	250 -	5,956	5,952	-	4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3,570	89	-	3,659	3,654	-	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6,903	-	0 △250	46,653	45,751	-	902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51,041	-	0 △125	120,918	120,918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602	30	-	1,632	1,608	-	24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8,038	-	-	28,038	28,038	-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9,058	-	10 -	49,068	47,251	40	1,777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169	-	-	169	169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3,453	-	-	43,453	43,453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359,296	-	-	401,516	390,633	10,883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609	-	-	4,609	4,479	47	8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848	86	20 △15	939	774	72	9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334	-	0 △5	4,329	4,014	-	315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지원	-	-	240 △115	6,477	5,787	67	62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30	15 △15	4,291	4,290	-	1
아동수당 지급	1,958,823	-	-	2,006,642	2,006,631	-	1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135,263	-	21,343 -	2,416,764	2,416,719	45	-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43	-	13 △15	141	133	-	8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68	-	45 △49	264	250	8	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자율)	241,483	-	-	241,483	241,483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63,953	-	-	63,953	63,953	-	-
지역아동센터 지원	31,347	189	-	31,536	31,525	-	1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제주)	3,933	-	-	3,933	3,933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	590	-	-	590	590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세종)	784	-	-	784	784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세종)	571	-	-	571	571	-	-
노후준비서비스	1,563	-	-	1,563	1,548	-	15
모자보건사업	27,643	19	-	31,357	31,339	16	2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701	0	-	9,415	9,415	-	-

자료 :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은 총 2건, 전용은 총 6건임.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출생아 수 증가로 법정의무지출인 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지출을 위하여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213억 4,300만원을 이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용액	이용 사유
계		21,468	
일반회계	소계	21,46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	125	○ 사무처 운영비 부족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21,343	○ 출생아 수 증가로 법정의무지출인 부모급여 예산 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

□ 전용의 경우 가정위탁 지원 사업 내에서의 전문아동보호비 부족으로 인하여 총 2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사업에서 연구용역 예산확보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으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406 △405	
일반회계	소계	406 △405	
	가정위탁 지원·운영	250 0	○ 전문아동보호비 부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0 0	○ 연구용역비 부족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15 △15	○ 연구용역비 부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115 △115	○ 사무처 운영비 부족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15 △15	○ 연구용역비 부족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	○ 기관 운영비 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총 8개 사업에서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11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차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1,178	
일반회계	소계	11,16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0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첫만남 이용권 지원	10,883	○ 첫만남이용권 지출을 위해 '25년 예비비 잔액 이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7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72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67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5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8	○ 기관운영비 이월(임차료4백만원, 국외여비4백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계	16	
	모자보건사업	16	○ 연구용역 기한 미도래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액은 총 39억 3,8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사업에서 연구용역 집행잔액으로 5,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

모자보건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3,938	
일반회계	소계	3,91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54	○ 연구용역 집행잔액(35백만원), 사업운영비 집행잔액(15백만원). 지자체경상보조 집행잔액(4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8	○ 연구용역 집행잔액 발생(15백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3백만원)
	가정위탁 지원·운영	4	○ 집행잔액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4	○ 연구용역 낙찰차액(4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902	○ 집행잔액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24	○ 연구용역(22백만원) 및 국내여비(2백만원) 집행잔액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777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1,738백만원), 거점심리치료센터(39백만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83	○ 연구용역 집행잔액(38백만원) 및 보조금 교부 잔액(45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92	○ 운영비 집행잔액(38백만원)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54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15	○ 용역비50(낙찰차액), 수용비255(집행잔액), 임차료10(집행잔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623	○ 상근 위촉직 위원 미위촉 인건비(186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437백만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1	○ 집행잔액
	아동수당 지급	11	○ 집행잔액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	○ 집행잔액
	인구아동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6	○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11	○ 집행잔액
국민연금기금	**소계**	**15**	
	노후준비서비스	15	○ 집행잔액
국민건강증진 기금	**소계**	**2**	
	모자보건사업	2	○ 집행잔액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1331-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행사(꿈나무 축구대회)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액 10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1,038	1,038	-	-	1,038	1,038	-	-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200	200	-	-	200	200	-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838	838	-	-	838	838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참여 아동 확대 등 사업 활성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참여 아동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 점검을 통해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를 개선하며 관계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인지학습·사회성·정서 영역 프로그램, 진로탐색·성교육·경제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학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구간 지능(IQ 71-84)[50]을 말하며 국민 전체의 약 13.6%인 697만명 가량으로 추정됨.

□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에 아동생활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욕구아동 전수조사[51]에 따르면 807개소 아동 11,899명 중 경계선지능아동은 2,173명(18.3%)으로 조사되었음.

□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비는 총 8억 3,800만원으로, 432명의 아동(서울 41명, 지방 391명)을 대상으로 한 선별비 8,800만원과 636명의 아동(서울 83명, 지방 553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비 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50)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 기준

51)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장애, 경계선, ADHD 판정 등 특수욕구아동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체 아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함.

< 2025회계연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838백만원(전년동) · **(선별비) 88백만원** = (서울) **41명**×300천원×50% + (지방) **391명**×300천원×70% · **(사례관리비)** 750백만원 = (서울) **83명**×35천원×50회×50% + (지방) **553명**×35천원×50회×70%

자료: 보건복지부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예산액 8억 3,800만원 대비 88.7%인 7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9,5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52] 전년도(85.1%)보다 3.6%p 상승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년	1,076	1,076	1,076	-	771	71.7
2022년	1,076	1,076	1,076	-	726	67.5
2023년	1,076	1,076	1,076	-	763	70.9
2024년	838	838	838	-	713	85.1
2025년	838	838	838	-	743	88.7

자료: 보건복지부

□ 하지만, 집행률 상승은 2024년 및 2025년 예산액이 2023년 예산액 대비 2억 3,800만원 감액된 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효과로 보이고, 2025년 1인당 평균 이용건수가 37.8건으로 예산안 산정기준(50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52)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용액 9,500만원의 발생사유로 신규 아동 저조, 서비스 이용 아동의 전원 또는 퇴소, 사업 미참여 시설 존재 등을 언급함.

< 최근 5년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현황 >

(단위: 명, 회)

구 분	예산상 사례관리 대상	참여 아동수	연간 이용건수	1인당 평균 이용건수
2021년	880	845	33,984	40.2
2022년	880	811	28,568	35.2
2023년	880	802	31,168	38.9
2024년	636	782	30,468	39.0
2025년	636	824	31,129	37.8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시·도별 집행 실적을 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52.2%의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5년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계	**838**	**838**	**743**	**95**	**88.7**
서울	79	79	66	13	83.8
부산	62	62	61	1	98.8
대구	41	41	39	2	95.7
인천	25	25	24	1	95.3
광주	35	35	28	7	79.7
대전	31	31	26	5	81.6
울산	4	4	2	2	**52.2**
세종	2	2	2	-	100.0
경기	68	68	63	5	92.1
강원	53	53	51	2	98.1
충북	37	37	37	-	99.4
충남	81	81	76	5	93.6
전북	45	45	43	2	96.5
전남	120	120	93	27	77.3
경북	75	75	66	9	88.0
경남	45	45	40	5	88.5
제주	35	35	26	9	74.8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에도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의 경계선지능아동이 18세가 되어 해당 시설을 퇴소하게 되었을 때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관련 사업이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퇴소 전후의 연속적인 자립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음.

<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사업명	대상	내용	'25년 예산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고난도(경계선지능, ADHD 등) 시설 보호아동 대상 종합심리검사비 및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인지학습·사회성·정서·자립 등 영역	8.4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경계선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시설 1개소당 대상아동 4~5명 충족 시 경계선지능아동 교사 파견 지원 및 인지학습, 사회성 교육 및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205.8억원 (복권기금)
경계선지능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육부)	초중고 학생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습·심리·정서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16.3억원 (특별교부금)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와 사업 미참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참여 아동 발굴 및 관계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어 시설 등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53]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62억 8,300만원 중 36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5,4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6,283**	**36,283**	**-**	**-**	**36,283**	**36,230**	**-**	**54**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36,072	36,072	-	-	36,072	36,068	-	4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78	78	-	-	78	78	-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133	133	-	-	133	84	-	50

자료 : 보건복지부

53)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 ('21. 8.)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됨.

나)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보호종료아동의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립수당은 2019년 월 3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예산편성 근거인 지급대상 인원수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한 9,000명을 기준으로 362억 8,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추이 >

연도	지급대상(명)	예산액(백만원)	지급액	지원기간
2019	4,920	9,858	월 30만원	보호종료 2년이내
2020	7,820	21,823	〃	보호종료 3년이내
2021	7,809	22,240	〃	보호종료 5년이내
2022	9,982	27,467	월 35만원	〃
2023	12,000	43,745	월 40만원	〃
2024	10,000	45,402	월 50만원	〃
2025	9,000	36,283	월 5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보호종료아동은 1,177명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21~25년)
보호종료아동	2,102	1,740	1,173	1,203	1,177	7,395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호연장아동[54]의 증가는 보호종료 시점과 향후 자립수당 신규 진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기 보호종료 아동[55]의 자립지원 대상 포함은 지급대상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음. 보호연장아동은 2024년 4,997명에서 2025년 5,171명으로 증가하였고, 조기 보호종료 아동은 2025년 8월말 기준 지급결정자가 138명으로 집계됨.

□ 동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성 기준 인원의 정확한 추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연례적으로 편성 대비 집행 인원 수가 미달하였던바, 2025년에도 전년 대비 1,000명을 줄여 9,000명을 지급대상자로 하였으나 지급결정자는 7,5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립수당 예산상 지급인원 대비 지급결정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상 지급대상자	7,809	9,982	12,000	10,000	9,000
지급결정자*	7,268	9,121	9,885	8,501	7,518
지급률	93.1	91.4	82.8	88.6	86.0

주: 매년 12월말 시점에서 지급결정된 인원 및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54) 원칙적으로 보호조치는 18세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2022년 6월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55) 2024년 8월에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됨.

> **「아동복지법」**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역별 ‘자립수당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은 80%대에 머물러있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도(70.7%)와 경상남도(75.1%)는 평균(86.0%)보다 각각 15.3%p 및 10.9%p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 정확한 수요 산정이 필요해 보임.

< 최근 3년간 자립수당 자치단체별 경상보조사업 실집행률 >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93.3	93.0	88.1
부산	92.2	89.6	85.3
대구	94.4	92.5	94.0
인천	91.0	88.9	89.6
광주	88.5	98.2	96.0
대전	98.0	98.6	95.2
울산	83.5	92.1	92.9
세종	94.9	96.8	96.2
경기	91.8	91.7	89.7
강원	82.9	77.5	**70.7**
충북	90.3	86.0	82.8
충남	97.0	85.6	79.7
전북	88.2	91.9	89.5
전남	88.2	82.6	81.2
경북	87.3	84.3	79.3
경남	86.6	81.4	**75.1**
제주	85.7	89.8	82.4
합계	**82.1**	**88.6**	**86.0**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u>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등의 변동 현황과 자립수당 신청·지급결정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급대상자 추계 및 지자체 보조금 배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u>

다) 일반연구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관리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일반연구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내역사업 중 자립수당 사업운영비에 일반연구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중 타 세부사업에 1,000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일반연구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명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133	133	-	-	133	84	133	84	-	50
- 일반연구비(260-01)	45	45	-	△10	35	-	35	-	-	35

자료: 보건복지부

□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30일에 일반연구비 중 1,000만원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1339-301)의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전용하였음.

< 일반연구비의 타 사업 전용 현황 >

과제명	수행자	연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 부연구위원)	'25.12.1~'26.5.29.	4,000만원	수의계약

□ 전용 목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국정과제)에 따라 진행된 연구로, 전용 이외는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당초 일반연구비로 「보호시설 유형별 지원제도 형평성 검토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성평등가족부) 간 정책 방향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 추진을 유보하였다고 설명함.

□ 다만,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연구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협의 결과 당초 연구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연구비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구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용역은 과제 기획·발주 및 수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초 과제의 추진여부가 불확실해진 시점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개선 등 사업목적과 관련된 연구수요를 함께 검토하여 잔여기간 내 추진가능한 연구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56].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6)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당초 연구용역 추진을 유보한 이후 성평등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격차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립지원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현재 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간 합산 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활·주거·취업·교육·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75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75억 5,800만원 중 17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17,544**	**17,544**	**14**	**-**	**17,558**	**17,540**	**-**	**18**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6,559	6,559	-	-	6,559	6,559	-	-
자립지원 사업비	9,697	9,697	-	-	9,697	9,697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125	1,125	14	-	1,139	1,134	-	5
자립지원 운영비	163	163	-	-	163	150	-	13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자립지원전담인력 퇴직률 관리 및 운용 안정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퇴직자 발생 현황과 원인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기관[57]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인력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을 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타 기관 의뢰 및 초기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상담, 지원 연계,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 >

구분	지원 내용
자립상담	- 대상자별 최소 월 1회 상담 진행하되, 대상자 의사 고려해 상담주기 조정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 - 대면상담 원칙(대상자 의사·여건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 대체 가능)
자원연계	- (복지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 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 (의료자원 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 ※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사례관리비 지원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 사례관리비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57)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보호종료아동 간 상시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장기 근무와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2025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단가를 2024년 328만원에서 336.8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원도 230명 전원을 12개월 기준으로 확대 편성하였음.

< 2024년~2025년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예산편성 근거 >

2024년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예산편성 근거	2025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예산편성 근거
- 자립지원 전담인력 180명(12개월), 50명(6개월) × 월 328만원 × 보조율(서울 50%, 지방 80%)	- 자립지원 전담인력 230명(12개월) × 월 336.8만원 × 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그런데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 2025년에 퇴직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총 63명으로, 정원 230명 대비 퇴사율은 27.4%였으며, 인사이동 및 휴직대체까지 포함할 경우 인력 변동 규모는 68명으로 정원 대비 29.6%에 이름.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퇴직자 현황 >

(단위: 명)

2025년								
정원	기준인원 (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휴직대체	퇴사	인사이동	휴직대체	
230	205	85	2	4	63	3	2	228

주: 1. 현원은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임
2. 퇴직자 수는 당해 연도의 누적 퇴직 및 자립지원 외 업무로 직무 변경 인원의 총합
3. 2022년에 전국 17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자립지원 전담인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특히 부산광역시는 정원 20명 대비 퇴사자가 18명으로 퇴사율이 90%에 달하고, 경상북도 54.5%, 울산광역시 50.0% 등 일부 지역에서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지원전담인력 퇴사 현황 >

(단위: 명, %)

시도	정원	퇴사자	정원 대비 퇴사율
계	230	63	27.4
서울	36	11	30.6
부산	20	18	90
대구	9	1	11.1
인천	13	1	7.7
광주	11	0	0
대전	10	0	0
울산	2	1	50
세종	2	0	0
경기	45	14	31.1
강원	11	3	27.3
충북	9	2	22.2
충남	11	0	0
전북	11	3	27.3
전남	13	3	23.1
경북	11	6	54.5
경남	13	0	0
제주	3	0	0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타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대비 낮은 인건비와 높은 업무부담[58] 등이 원인으로 파악됨.

□ 특히 2026년에도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의 월 단가는 426만원인 반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월 단가는 351.6만원으로, 월 74.4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퇴직 원인, 공백 발생 여부, 처우 수준 및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8)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평균 32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12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교육프로그램운영,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및 자립지원전담인력 비교 >

구분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인력
역할	• 대상자 신청 • 전수조사·수시발굴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위험도 측정 및 대상자 선정·평가 • 사례회의 기반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개인별 지원 서비스 운영·연계 • (사후관리) 정기면담,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원 효과의 지속성 확인, 재개입 필요성 판단 및 재고립·은둔 예방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등 •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제공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업무 •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업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업무 • 비품 및 회계관리 등 자립지원 관련 행정 업무
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사례관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등) 종사 경력이 총 7년 이상인 사람 1.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외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건비	('24년) 월단가 396만원 → ('25년) 월단가 408만원→ ('26년) 월단가 426만원	('24년) 월단가 328만원→ ('25년) 월단가 336.8만원→ ('26년) 월단가 351.6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원대상 산정 및 이용 실적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6,500명 지원을 기준으로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11억 2,0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4억 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35.9%에 불과하였음[59].

<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3	1,145	495	411	35.9
2024	1,350	1,306	283	20.9
2025	1,125	1,120	404	35.9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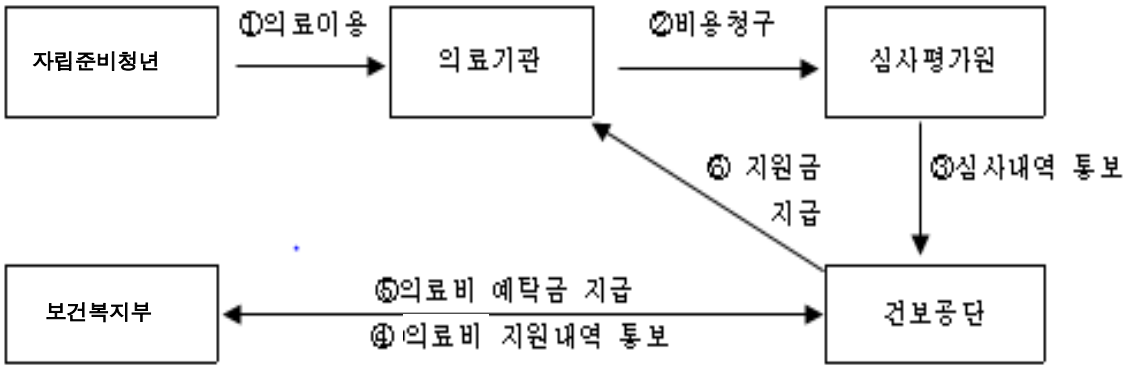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60]만 납부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

59)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액 국비로 집행되고 있음

60)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 적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의료이용 시 자립준비청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므로 자립 초기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내역 관리를 통해 타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6,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의료비 국고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621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의 40.3%에 그쳤음. 이에 따라 실집행률도 35.9%에 머물러 당초 편성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예산 편성 기준 >

- **'25년 예산액 편성 기준: 6,500명 × 월 150천원**
  (인원) '17~'21년 보호종료된 대상자(약 12,300명) × 자립준비청년 중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약 65%) 기준('22년)
  (단가)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9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5.5만원)('22년)

< 2025년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

(단위: 건, 천 원)

합계		'24.12월		1차수 (1-3월)		2차수 (4-6월)		3차수 (7-9월)		4차수 (10-11월)		5차수 (12월)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대상	금액
29,834	259,154	2,498	20,421	7,986	63,629	6,455	57,153	6,230	58,776	4,191	39,224	2,474	19,951

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국고지원 실인원수는 2,621명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실제 지원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시 단순한 건강보험 가입자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이용률, 1인당 평균 지원액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산정 방식, 의료이용 실적, 홍보 및 안내 체계 등을 점검하고 사업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은 가정위탁·입양 아동 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해보험료, 심리치료 및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57억 600만원, 이·전용액 2억 5,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9억 5,600만원 중 59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5,706**	**5,706**	**-**	**452 △202**	**5,956**	**5,953**	**-**	**3**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458	458	-	-	458	458	-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38	138	-	-	138	138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927	2,927	-	452	3,379	3,376	-	3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27	27	-	-	27	27	-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966	1,966		△202	1,764	1,764	-	-
가정위탁 사업운영비	190	190	-	15 △15	190	190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 추계 및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임.[61)]

□ 가정위탁의 보호유형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및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됨. 일반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고,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며, 일시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임.

□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생계·의료·교육 급여, 전문아동보호비, 일시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 그 중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만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이 초기에 아동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최초 1회 지원하는 사업

6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위기아동 가정보호(전문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시가정위탁을 의미)[62]나 전문가정위탁 참여가정에 지급됨.

□ 아동용품 구입비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에는 50만원을 지원함.

< 유형별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금액 >

사례	지원금액
일시가정위탁(위기아동 제외) →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50만원 지급
위기아동 가정보호 →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결정 시 100만원(지원 이력이 있는 가정인 경우 50만원) 지원,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미지원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으로 변경 시 50만원 지원
유형변경이 아닌 전문가정위탁 책정	전문가정위탁 결정시 100만원(지원 이력이 있는 가정인 경우 50만원)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 2025년 기준 위기아동 보호가정의 보호아동은 9명, 전문가정위탁 보호아동은 398명임. 다만 동 사업은 최초 1회 지원 방식이므로, 전체 보호아동 수뿐만 아니라 신규 책정 가정 수와 기존 지원 이력 여부가 실제 집행 규모에 영향을 미침.

< 위기아동 보호가정 및 전문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

(단위:명)

구분	위기아동 보호가정	전문가정위탁
2023년	14	314
2024년	12	358
2025년	9	398

주: 현재 위기아동 보호가정 수는 가정위탁 통계 분류 체계상 일시가정위탁 통계 조사로 갈음하여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

62)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4. (생 략)

□ 2025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예산액은 총 2,700만원으로, 총 61개 가정에 10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2025연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총액 27백만원 - (서울) (14명×1,000천원+11명×500천원)×국비 40%= 7백만원 - (지방) (18명×1,000천원+18명×500천원)×국비 70%= 20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14.7%, 2024년 44.2%, 2025년 63.0%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특히 2025년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실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예산액이 2023년 1억 3,600만원에서 2025년 2,7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것에 기인함. 실제 실집행액은 2024년 4,200만원에서 2025년 1,700만원으로 감소하여 사업 집행이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3년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예산 현액(A)						예산 현액	집행액(B)			
2023	136	136	136	136	-	136	20	136	20	-	116	14.7
2024	95	95	95	95	-	95	42	95	42	-	53	44.2
2025	27	27	27	27	-	27	17	27	17	-	10	63.0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 2025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사업비 2,680만원 중 1,73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64.6%임. 서울·인천·광주·경북·제주·전북은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반면, 대구·전남·강원은 집행 실적이 없고, 세종·충북·경남은 각각 25.0%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 지자체별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교부액(A)	집행액(B)	실집행률(B/A)
서울	1,600	1,600	100.0
부산	1,400	1,050	75.0
대구	1,400	-	**0.0**
인천	2,100	2,100	100.0
광주	1,400	1,400	100.0
대전	1,400	1,050	75.0
울산	1,400	1,050	75.0
세종	1,400	350	**25.0**
경기	2,100	1,400	66.7
충북	1,400	350	**25.0**
충남	2,800	2,400	85.7
전남	1,400	-	**0.0**
경북	1,400	1,400	100.0
경남	1,400	350	**25.0**
제주	1,400	1,400	100.0
강원	1,400	-	**0.0**
전북	1,400	1,400	100.0
계	26,800	17,300	64.6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지원대상 아동 발생 시점에 1회 지급되는 일회성 사업의 특성상 실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행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집행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발생 현황, 지원 이력,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비 추계 및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보호 수요와 제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교부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입양대상아동[63] 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센터 위탁가정[64],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예비 입양가정에 월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또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에 따른 아동의 인도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

□ 2025년에는 전년도보다 26명 감소한 234명의 입양대상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하여 예산액 1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2024년도 예산 편성 근거	2025년도 예산 편성 근거
○ 2,184백만원 - 260명×1,000천원×12개월×70%(보조율)	○ 1,966백만원 - 234명×1,000천원×12개월×70%(보조율)

자료 : 보건복지부

63) 지방자치단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중 입양이 적합하다고 결정된 아동으로, 입양기관 소속의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거나, 종래에 보호 중이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양 전까지 보호되기도 함.

64) 2025. 7.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기존 입양기관 소속 위탁가정을 위탁가정 주소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편입하였음('25.1～)

□ 그러나 2025년 12월 기준 지원 인원은 131명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2025년도 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7억 6,400만원[65] 중 9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1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56.3%이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임.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예산 현액(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	1,945	1,945	1,945	1,945	-	1,945	1,110	1,945	1,110	-	835	57.1
2023	3,024	3,024	3,024	3,024	-	3,024	2,116	3,024	2,116	-	908	70.0
2024	**2,184**	**2,184**	**2,184**	**2,184**	**-**	**2,184**	**1,599**	**2,184**	**1,599**	**-**	**585**	**73.2**
2025	1,966	1,764*	1,764	1,764	-	1,764	993	1,764	993	-	771	**56.3**

* 전문아동보호비로 202백만원 전용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강원과 충북은 집행 실적이 없고, 광주와 전남도 실집행률이 각각 9.7%, 11.1%에 그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집행이 저조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산과 제주도 각각 70.0%에 그쳐 전반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65) 같은 세부사업 중 다른 내역사업인 전문아동보호비로 2억 200만원을 전용함

< 2025년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역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실집행률(B/A)
서울	420,000	420,000	228,200	54.3
부산	42,000	42,000	29,400	70.0
대구	117,600	117,600	53,550	45.5
인천	109,200	109,200	72,450	66.3
광주	25,200	25,200	2,450	9.7
대전	33,600	33,600	16,450	49.0
울산	42,000	42,000	20,790	49.5
세종	25,200	25,200	6,300	25.0
경기	420,000	420,000	290,850	69.3
충북	33,600	33,600	-	0.0
충남	58,800	58,800	22,400	38.1
전남	25,200	25,200	2,800	11.1
경북	67,200	67,200	40,250	59.9
경남	50,400	50,400	19,250	38.2
제주	252,000	252,000	176,400	70.0
강원	16,800	16,800	-	0.0
전북	25,200	25,200	11,900	47.2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5년이 공적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여서 기존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업무가 국가·지자체 중심 체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 집행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였고, 향후 공적 보호체계가 안정화되고 입양 전 임시양육결정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보호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입양대상아동 중 가정위탁 아동 수는 2023년 118명에서 2025년 53명으로 감소하였고, 임시양육결정 아동 수도 같은 기간 92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가정위탁 및 임시양육결정 현황 >

(단위: 명)

분류	2023	2024	2025
입양대상아동 중 가정위탁	118	58	53
입양전제위탁(현: 임시양육결정)	92	73	31

자료 :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의 실제 보호 수요, 임시양육결정제도 운영 실적 및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부 규모 조정, 집행상황 점검 및 정산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의 추가 재원 확보 및 교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지원 수요와 지방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교부액 조정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만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 장애 등의 사유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전문위탁가정)이 부담할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을 보면 총 3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예산액 2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27명의 아동에게 국비 40%를 매칭하여 지원하고(예산액 1억 3,000만원), 지방에서는 333명의 아동에게 국비 70%를 매칭하여 지원할(예산액 27억 9,700만원) 계획이었음.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근거 >

2025년도 예산 편성 근거
○ 2,927백만원 - (서울) 27명×1,000천원×12개월×국비 40%= 130백만원 - (지방) 333명×1,000천원×12개월×국비 70%= 2,797백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2025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66] 보건복지부는 같은 세부사업 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에서 2억 2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타 세부사업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을 전용하여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을 증액하였음.

<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내역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0.29.)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30-01	202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330-01	전문아동보호비 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

< 타 세부사업에서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전용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29.)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67] (1334-301)	330-01	250	가정위탁 지원·운영 (1333-300)	330-01	전문아동보호비 부족

자료 : 보건복지부

□ 전문아동보호비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연내 보강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재원 또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던 유사 사업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가 재원 확보 자체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은 일견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음.

66)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상 아동 및 위탁부모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67)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33억 7,600만원 중 30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을 보면 서울 63.5%, 대구 64.9%로 낮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말 예산 사정 등으로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5년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2,927	452	3,379	3,376	3,376	-	3,376	3,083	3,376	3,083	-	293	91.3

자료 : 보건복지부

< 2025년도 전문아동보호비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실집행률(B/A)
서울	157,541	157,541	100,000	63.5
부산	255,033	255,033	244,650	95.9
대구	225,941	225,941	146,650	64.9
인천	233,241	233,241	211,400	90.6
광주	108,641	108,641	88,900	81.8
대전	216,679	216,679	207,900	95.9
울산	184,241	184,241	181,300	98.4
세종	28,141	28,141	22,050	78.4
경기	422,891	422,891	408,800	96.7
충북	281,400	281,400	268,800	95.5
충남	194,741	194,741	192,149	98.7

구분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B)	실집행률(B/A)
전남	51,589	51,589	49,139	95.3
경북	366,450	366,450	364,350	99.4
경남	121,941	121,941	113,400	93.0
제주	41,791	41,791	35,699	85.4
강원	130,516	130,516	110,775	84.9
전북	355,951	355,951	336,525	94.5

자료 : 보건복지부

□ 결국 보건복지부는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액 부족을 이유로 같은 세부사업 내 내역변경 및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해 예산현액을 4억 5,200만원 증액하였음에도,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2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수요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확보 여부와 지역별 실제 지원 수요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할 경우 추가 확보된 예산이 실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60%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는 연도 중 전문위탁아동 발생 현황, 지방비 확보 상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내역변경·전용 및 교부액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확보 여부와 실제 지원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연도 중 수요 변동을 반영하여 교부액 조정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취약계층 아동[68]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월 5만원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본예산 1,510억 4,100만원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299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타 사업[69]에 1억 2,500만원을 전용한 예산현액 1,209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151,041	121,043	-	△125	120,918	120,918	-	-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51,041	121,043	-	△125	120,918	120,918	-	-

68)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 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차상위계층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6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2537-302)

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및 적립률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률이 낮고 미적립 아동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적립 실적 관리와 후원 연계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대상아동 및 지원금, 매칭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외에 차상위계층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음.

< 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급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급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 중위 40% (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중위 50%(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2025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을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가입률은 2025년 기준 92.9%이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률은 88.9%로 나타났음. 반면 2025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률은 47.6%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70].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 >

(단위: 명, %)

연 도		대상아동(A)	가입아동(B)	가입률(B/A)	저축아동(C)	저축률(C/B)
2021	보호대상	24,985	24,669	98.7	24,087	97.6
	기초수급	55,744	43,812	78.6	39,947	91.2
	계	80,729	68,481	84.8	64,034	93.5
2022	보호대상	27,952	23,887	85.5	23,215	97.2
	기초수급	52,530	40,904	77.9	36,816	90.0
	계	80,482	64,791	80.5	60,031	92.7
2023	보호대상	27,159	23,334	85.9	21,234	91.0
	기초수급	60,688	39,866	65.7	32,714	82.1
	계	87,847	63,200	71.9	53,948	85.4
2024	보호대상	22,802	22,669	99.4	21,485	94.8
	기초수급	182,875	136,984	74.9	114,455	83.6
	계	205,677	159,653	77.6	135,940	85.1
2025	보호대상	23,334	21,681	92.9	20,936	96.6
	기초수급	204,903	182,137	88.9	168,397	92.5
	차상위	44,563	21,232	47.6	17,290	81.4
	계	272,800	225,050	82.5	206,623	91.8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5년의 경우 98.5%의 높은 실집행률을 보였지만 이는 202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299억 9,800만원 감액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사업(2537-302)으로 1억 2,500만원을 전용한 영향이 있으며, 본예산인 1,510억 4,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5년간의 실집행률과 유사한 수준인 78.9% 정도임.

70)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대상 자격 부여와 실제 가입 간의 시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지자체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	25,038	25,038	20,863	83.3
2022	55,445	55,445	41,165	74.2
2023	49,900	47,600	42,341	84.9
2024	126,733	126,112	84,326	66.5
2025	121,043*	120,918	119,139**	98.5**

* '25년 추경 감액 반영 및 이·전용 내역 포함
** '26. 7월말 기준 집계이며, 현재 정산 중으로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 더 높아질 가능성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차상위계층 아동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에도 실제 가입률이 낮아 집행 부진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2025년 4월 말 기준 차상위계층 아동의 계좌 가입률은 25.3%에 그쳤고, 이에 따라 추경 과정에서 대상자 수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3만 4,500명, 차상위계층 아동 1만 5,000명 감소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하고, 만 24세 이후에야 용도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함. 이러한 장기 저축 구조는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매월 저축액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음[71].

71)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조기인출 요건을 기존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2회 이내 인출에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5회 이내 인출로 완화하였음.

< 아동발달지원계좌 해지 >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	만2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아동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pp.64-65.

□ 실제로 2025년도 적립 및 미적립 아동 현황을 보면, 아동이 저축을 하지 못하여 1년에 한번도 매칭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아동은 총 3,715명이고 이 중 77.9%에 해당하는 2,895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며 19.2%에 해당하는 713명이 차상위계층 아동임.

< 연도별 미적립 아동 현황 >

(단위: 명)

연도	미적립아동			
	소계	요보호	기초수급	차상위
2021	352	146	206	-
2022	443	135	308	-
2023	734	77	657	-
2024	2,481	65	2,416	-
2025	3,715	107	2,895	713

주: 1. 미적립 아동은 당해연도 미적립으로 1회도 국가매칭금이 매칭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
2. 미적립 아동의 경우 지원중지 아동 및 12월 계좌개설(다음년도 1월에 12월로 소급) 아동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민간 후원 아동수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수는 2021년 6만 8,129명에서 2025년 22만 5,050명으로 15만 6,921명 증가한 반면(상승률 약 230%), 같은 기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후원 아동은 4만 2,175명에서 10만 3,063명으로 6만 888명 증가함에 따라(상승률 약 144%)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민간 후원율은 2021년 61.9%에서 2025년에 45.8%까지 낮아진 상황임.

<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 대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민간 후원 아동 현황 >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	민간 후원 아동	민간 후원율
2021	68,129	42,175	61.9
2022	64,348	45,569	70.8
2023	62,466	34,046	54.5
2024	157,172	83,463	53.1
2025	225,050	103,063	45.8

주: 1.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은 만 0세~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민간 후원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 민간 후원은 스스로 적립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저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으로 넓어지는 사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민간 후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민간 후원의 기반을 확충하지 않는 한 이들이 명목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도 실제 적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72].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스스로 저축하기 어려운 아동이 적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후원 기반을 확충하는 등 이들의 가입률과 적립률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후원금 106억원을 모금하여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하였고, 2026년에는 자산형성관리팀을 신설하여 후원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하는 등 후원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임.

6)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1337-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은 아동 양육·생활 환경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아동정책조정 업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아동학대의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에 한 서비스 지원, 노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16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6억 3,200만원 중 1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602**	**1,602**	**30**	**-**	**1,632**	**1,608**	**-**	**24**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152	152	30	-	182	158	-	2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사업	1,050	1,050	-	-	1,050	1,050	-	-
아동학대 대응체계 활성화 지원	100	100	-	-	100	100	-	-
아동학대방지 인프라기능보강사업	300	300	-	-	300	300	-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내역사업 구조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조정 사업과 아동학대 관련 보조사업이 혼재된 세부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내역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세부사업은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아동학대대응체계 활성화 지원,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내역사업은 성격상 아동정책 관련 업무와 아동학대 관련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는 아동정책 관련 업무로 볼 수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조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등 아동정책 전반의 조정·관리 업무임.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아동학대 관련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의 2025년도 내역사업 >

내역사업명	집행방식	성격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직접	아동정책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아동권리보장원 보조, 지자체 보조	아동학대
아동학대대응체계 활성화 지원	지자체 보조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	지자체 보조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내역사업 세부내용 >

내역사업명	세부 내용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조정, 아동종합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제출 등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 (현황) 광역 전담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전담의료기관 384개소('25. 6.)
아동학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 일반사례(비학대) 가정이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으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에 물품(기저귀 등), 교육·상담, 청소,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사업	노후·위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시설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되며, 아동안전·건강을 위해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등에 중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2025년 예산현액 기준으로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예산은 1억 8,200만원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반면, 아동학대 관련 3개 내역사업은 14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사업의 명칭·목적과 실제 예산 구성 간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목적, 수행주체 및 집행방식이 상이한 내역사업이 함께 편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사업 단위의 재정 투입 효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실제로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국민 아동권리 인식도' 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아동학대대응체계 활성화 지원,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 등 아동학대 관련 내역사업의 집행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민 아동권리 인식도(점)	목표	92.3	92.3	92.3	92.3	92.3	'24년도와 동일한 목표치 산출	리커트 4점 척도에 따라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기관
	실적	90.4	89.6	88.3	92.0	-			
	달성도	97.9	97.1	95.7	99.6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세부사업에 포함된 아동학대 관련 내역사업은 정책목적 및 집행방식 측면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에 편성하거나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2025년도 내역사업 >

내역사업명	세부 내용	집행방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지자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보조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	지자체 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원	지자체 보조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전반의 전산처리 시스템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아동학대 관련 연구용역	직접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조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세부사업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집행내용, 성과목표를 연결하는 재정관리 단위라는 점에서, 세부사업의 명칭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을 계속 포함하는 것은 사업관리의 체계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아동학대 관련 내역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편성·집행될 경우, 아동학대 대응 분야에 투입된 재정 규모와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내역사업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1339-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아동정책 개발 지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을 비롯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 자립지원 환경 조성 및 지원, 입양·가정위탁이나 아동학대 예방, 실종아동 지원 등 아동 보호서비스의 공적 책임강화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액 280억 3,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8,038**	**28,038**	**-**	**-**	**28,038**	**28,038**	**-**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28,038	28,038	-	-	28,038	28,038	-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나)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세분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의 주요 내역사업별 집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제 수행업무와 재정투입 구조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73]은 아동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임[74].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정책 연구·지원, 아동권리 증진, 아동성장·돌봄, 아동보호, 입양, 가정위탁, 아동자립, 위기임산부 지원이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 주요 사업 >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아동정책 연구·지원	아동정책 수립·평가 지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아동통계DB 구축 및 운영
아동권리 증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아동 이슈·문화 참여 활성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아동성장·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실종아동 등 보호 지원
입양	입양제도, 입양교육 및 신청, 친생부모 입양상담 문의, 입양인·입양가족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대기위탁부모 현황
아동자립	아동자립지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위기임산부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지역상담기관 안내, 상담문의,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정리

73)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본 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당시 명칭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재함.

7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특히 2025년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절차 지원, 입양기록물 보존,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응 등 입양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 8개소가 보유하고 있던 약 24만권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았고, 입양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위탁보존을 추진하는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정보공개서비스를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세부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위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이 개시된 2020년부터 편성되었음. 사업비는 2020년 190억 900만원에서 2025년 280억 3,800만원으로 90억 2,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47.5% 증가한 수준임.

< 최근 6년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비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9,009	19,824	24,316	25,739	26,427	28,038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06억 7,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고유사업비는 총 131억 9,400만원으로, 아동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36억 6,600만원,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 42억 4,700만원,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26억 6,200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실종아동 보호 지원 26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비 편성 근거 >

세사업 명	편성 근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 (편성총액) 28,038백만원 1) 인건비 : 10,679백만원 2) 관리운영비 : 4,165백만원 - 임차료 2,784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보수 392백만원 - 기본경비 등 989백만원 3) 고유사업비 : 13,194백만원 (1) 아동정책개발 지원 및 역량강화 3,666백만원 -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 502백만원 - 아동정책 개발지원 1,090백만원 -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2,074백만원 (2)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 4,247백만원 - 가정위탁 보호제도 지원 456백만원 - 지역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350백만원 - 입양정책지원 3,441백만원 (3) 아동돌봄 및 자립지원 2,662백만원 - 마을돌봄서비스 지원 1,708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39백만원 - 아동자립지원 715백만원 (4) 아동학대 예방 및 실종아동 보호 지원 2,619백만원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1,743백만원 -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876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280억 3,800만원 중 27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98.3%임.

< 2025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A)	실집행액 (B)	집행잔액(A-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아동권리보장원운영지원 (1339-300)	**28,038**	**27,553**	**485**	**101**	**384**	**98.3**
인건비	10,679	10,326	353	-	353	96.7
관리운영비	4,165	4,159	6	-	6	99.9
고유사업비	13,194	13,068	126	101	25	99.0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개선	502	502	-	-	-	100.0
아동정책개발 지원	1,090	1,080	10	10	-	99.1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2,074	2,074	-	-	-	100.0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806	805	1	-	1	99.9
입양정책지원	3,441	3,326	115	91	24	96.7
마을돌봄서비스 지원	1,708	1,708	-	-	-	100.0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39	239	-	-	-	100.0
아동자립지원	715	715	-	-	-	100.0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1,743	1,743	-	-	-	100.0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876	876	-	-	-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동정책, 공공아동보호 체계, 입양정책, 마을돌봄, 자립지원, 아동학대 예방, 실종아동 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과 '아동학대건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횟수' 2개로만 구성되어 있음.

<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초등 돌봄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목표	3.7	3.8	3.9	4.5	-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 수 /초등학생 수 × 100	-초등학생 수: 통계청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수: 행복e음 -돌봄센터이용자 수: 보장원 자체조사
	실적	4.3	4.4	4.7	5.0	-		
	달성도	116.2%	115.8%	120.5%	110%			
아동학대건수 대비 아동보호전문 기관 서비스 제공 횟수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0.60	0.65	0.76	아동보호전문 기관 서비스 제공 횟수(백회) /아동학대건수 ※ 백회란, 1/100로 조정한 숫자를 의미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실적	신규	신규	0.679	0.743	-		
	달성도	신규	신규	113.2%	114.3%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먼저 '초등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 수를 전체 초등학생 수와 비교하는 지표로, 아동돌봄 분야의 일부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는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아동정책 개발, 공공아동보호체계 지원, 입양정책 지원, 자립지원, 실종아동 보호 등 다른 주요 내역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아동학대건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횟수’는 아동학대 대응 분야의 서비스 제공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이 역시 본 세부사업 전체의 성과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 중에서도 정책·제도 정비, 대응인력 지원,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전문가 자문체계 운영 등 다양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횟수만으로 아동학대 대응 분야의 질적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처럼 본 사업은 전체 실집행률이 98.3%로 양호한 수준이나, 성과지표가 일부 내역사업의 이용률 또는 서비스 제공량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제 수행업무와 재정투입 구조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사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신규설치를 지원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490억 5,800만원에 이·전용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0억 6,800만원 중 47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7,700만원을 불용함.

< 2025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9,058**	**49,058**	**-**	**10**	**49,068**	**47,251**	**40**	**1,777**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5,006	45,006	-	-	45,006	43,268	-	1,738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1,200	1,200	-	-	1,200	1,200	-	-
·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1,283	1,283	-	-	1,283	1,244	-	39
·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운영	682	682	-	-	682	682	-	-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	887	887	-	10	897	857	40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인력운용 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지연이 반복되고 거점심리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추진상황과 인력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와 신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임[75].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76].

□ 2024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19.42건으로, 2020년 62.69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사례관리와 지역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75)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6) 직영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7개소임(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서대문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5. 12. 기준) >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02	13	6	3	6	2	3	2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5	4	5	7	5	4	8	2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

(단위: 사례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례 수	62.69	51.44	31.89	27.44	19.42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예산상 누적 설치목표가 119개소였으나 실제 설치는 102개소에 그쳐 목표 대비 17개소가 부족하였음. 2026년 7월 기준으로도 실제 설치는 106개소로, 2026년 목표 123개소와의 차이(17개소)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확충 현황 >

(단위: 개소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예산상 설치목표	71	81(+10)	95(+14)	105(+10)	115(+10)	119(+4)	123
실제설치	69	77(+8)	85(+9-1)	92(+7)	98(+6)	102(+2)	106(+4)
목표 및 설치 간 차이	2	4	10	13	17	17	17

주1. 개소수는 누적 개소수임
주2. ( )는 전년도 대비 증가 개소수를 의미함. 2022년은 9개소 설치 및 1개소 폐쇄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러한 설치 지연은 회계연도 내에 실제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실집행률은 2023년 36.9%, 2024년 37.3%, 2025년

52.3%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12억원 중 5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년	2,400	2,400	2,100	2,100	1,607	3,707	2,072	2,100	886	1,470	165	36.9
2024년	2,400	2,400	1,400	1,400	1,470	2,870	1,906	1,400	894	576	388	37.3
2025년	1,200	1,200	1,200	1,200	576	1,776	1,182	1,200	627	573	21	52.3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2025년에 신규 설치비가 교부된 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과 충남은 교부액 전액을 집행한 반면, 서울은 9.0%, 경기는 0.0%에 그쳐 지역별 설치 추진상황에 큰 차이가 나타났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 지자체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	설치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계	1,200	576	1,776	1,182	1,200	627	573	21	52.3
서울	300	587	587	302	300	27	273	12	9
경기	300	589	589	281	300	-	300	9	0
강원	300	300	300	300	300	300	-	-	100
충남	300	300	300	300	300	300	-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매입, 시설 리모델링, 운영법인 선정,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및 지방비 추경 반영 등 신규 설치 절차가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77].

□ 한편, 내역사업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시·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가진 고난도·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직접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거점 심리치료팀의 역할 >

○ (고난도 사례) 긴급한 개입을 요하지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등에 대해 직접 심리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교육, 전문가 사례회의** 등으로 시·도 내 지역 아보전 및 쉼터 심리치료인력 역량 제고 * 거점 심리치료인력이 지역 아보전 인력대상 1:1로 심리치료 적절성 등 업무수행 고도화 지원 ** 심리학·정신의학 전문위원 위촉, 심리학·정신의학적 사례 분석 등 논의 ○ (지역 심리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 시·도 내 기관 심리서비스 제공현황 조사를 통하여 심리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시도 내 심리검사 제공현황, 심리치료 유형(인지행동, 미술·놀이치료 등) 조사 ○ (전담의료기관 등과 연계) 정신학·병리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담의료기관(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 등과 연계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시도 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아동 대상 심리서비스 제공도 검토

자료 :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의 거점 심리지원팀 인력 근무 현황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정원 51명 중 현원은 43명으로 8명이 미충원된 상태임. 특히 부산·전북에는 팀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울산·강원·경북에는 팀원이 부족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제주에는 근무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못하였음.

77)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서울 및 경기의 경우, 이월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완료 후 현재 운영 중으로 실질적인 실집행률은 100%라고 설명하고 있음('26.3월 서울 1개소, '26.7월 경기 1개소 운영)

< 시·도별 거점 심리지원팀 인력 근무 현황(2025년 말 기준) >

(단위: 명)

지역	정원	현원	
계	51	43	
서울	3	3	팀장1, 팀원2
부산	3	3	팀원3
대구	3	4	팀장1, 팀원3
인천	3	3	팀장1, 팀원2
광주	3	3	팀장1, 팀원2
대전	3	3	팀장1, 팀원2
울산	3	2	팀장1, 팀원1
세종	3	3	팀장1, 팀원2
경기	4	3	팀장1, 팀원2
강원	3	2	팀장1, 팀원1
충북	3	3	팀장1, 팀원2
충남	3	3	팀장1, 팀원2
전북	3	1	팀원 1
전남	3	3	팀장1, 팀원2
경북	3	1	팀장1
경남	3	3	팀장1, 팀원2
제주	2	-	-

자료 : 보건복지부

□ 전문인력의 미충원은 단순한 인건비 불용을 넘어 고위험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로 거점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2025년 실집행률은 80.9%였으며, 제주 0.0%, 전북 50.0%, 경북 55.0%, 부산 65.0%, 충남 68.8%, 강원 70.0% 등 일부 지역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음[78].

78)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처우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민간 대비 인건비가 71.2%~82.4%('24.12월 기준)에 불과하여, 해당 인력의 안정적인 충원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	정원	현원	교부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계	51	43	1,244	1,007	237	80.9
서울	3	3	5	5	0	100.0
부산	3	3	80	80	28	65.0
대구	3	4	80	80	2	97.5
인천	3	3	80	80	6	92.5
광주	3	3	80	80	2	97.5
대전	3	3	80	80	6	92.5
울산	3	2	80	80	14	82.5
세종	3	3	80	80	0	100.0
경기	4	3	104	104	0	100.0
강원	3	2	80	80	24	70.0
충북	3	3	80	80	7	91.3
충남	3	3	80	80	25	68.8
전북	3	1	40	40	20	50.0
전남	3	3	80	80	8	90.0
경북	3	1	80	80	36	55.0
경남	3	3	80	80	4	95.0
제주	2	-	55	55	55	0.0

자료 :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여부, 시설 확보 절차 및 전문인력 채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 추계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9)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기반으로, 위기임산부[79]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46억 900만원 중 4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609**	**4,609**	**-**	**-**	**4,609**	**4,479**	**47**	**83**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2,617	2,617	-	-	2,617	2,617	-	-
보호출산 산모 지원	720	720	-	-	720	720	-	-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340	340	-	-	340	340	-	-
보호출산 정책 수행 경비	364	364	-	-	364	279	47	38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28	28	-	-	28	20	-	8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540	540	-	-	540	503	-	37

자료 : 보건복지부

7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나) 지원대상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의 반복적인 실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수요 추계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여금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려기간 동안 위기임산부가 처한 상황, 특성,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임.

□ 참고로 보호출산제[80]란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조치나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 방지 등을 위한 제도임. 보호출산 후 임산부에 의한 양육이 어려울 경우 아동은 관할 시·군·구에 인도되며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됨.[81]

---

8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8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



□ 그런데 본 내역사업의 2025년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0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36.1%에 불과함.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4	720	720	720	720	-	720	108	720	108	-	612	15.0
2025	720	720	720	720	-	720	260	720	260	-	460	36.1

자료 : 보건복지부

□ 구체적으로 2025년의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은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각 100만원, 숙려기간 지원으로 각 14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2025년 기준 의료비만 지원한 건수는 12건,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한 건수는 11건, 의료비·숙려기간 비용을 모두 지원한 건수는 99건으로 총 122건에 불과함.

< 2025년 집행 실적 >

(단위: 건)

구분	총합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 모두 지원	의료비만 지원	숙려기간 비용만 지원
지원 건수	122	99	12	1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보호출산 산모를 300명으로 추계한 것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2024년 7월) 당시 수요 추계에 활용 가능한 자료인 2022년 병원 출산 출생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수 174명이나 2021년 유기 아동 인원 수 117명을 고려한 것임.

□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은 병원 밖 출산 및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 실집행률이 15.0%에 그친 데 이어 2025년에도 실집행률이 36.1%에 머물렀고, 당초 추계한 보호출산 산모 300명 대비 실제 지원 실적도 122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사업 수요 산정과 집행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 산모 지원 사업의 반복적인 실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보호출산 지원 수요 산정 방식과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보호출산 신청·지원 실적 및 출생미등록·아동유기 관련 통계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와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 신청 실적과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소요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은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가정위탁 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82]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 지급 대상은 일시보호시설, 영아양육시설, 전문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이며 지급된 비용은 아동건강검진비용, 상해보험가입, 아동용품구입, 돌봄인력비용 등에 사용됨.

□ 본 사업은 2025년에 신규 편성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총 300명의 아동에게 긴급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총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내역사업명	편성 근거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540백만원= 서울 100명 × 1백만원 × 40%(보조율) × 3개월 + 지방 200명 × 1백만원 × 70%(보조율) × 3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8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 6. (생 략)

□ 그런데 2025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5억 4,000만원 중 1억 4,900만원이 실집행되고 3억 5,4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27.6%에 불과함.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C)			
540	540	503	503	-	503	149	503	149	-	354	27.6

자료: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0%), 대구(3.5%), 울산(5.6%), 충남(6.3%), 전남(9.0%), 충북(9.7%)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고 인천(76.4%), 전북(56.9%), 경북(50.7%)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률에 큰 편차를 보였음.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서울특별시	55.68	5.6	10.1
부산광역시	25.20	17.15	68.1
대구광역시	25.20	0.875	3.5
인천광역시	25.20	19.25	76.4
광주광역시	25.20	3.5	13.9
대전광역시	25.20	5.95	23.6
울산광역시	25.20	1.4	5.6
경기도	94.08	24.5	26.0
강원특별자치도	25.20	6.65	26.4
충청북도	25.20	2.45	9.7
충청남도	25.20	1.58	6.3
전북특별자치도	25.20	14.35	56.9
전라남도	25.20	2.28	9.0
경상북도	25.20	12.78	50.7
경상남도	25.20	5.25	20.8
제주특별자치도	25.20	-	-

자료: 보건복지부

□ 위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 시 보호출산 신청 인원을 300명으로 가정하였으나, 사업 시행 첫 해인 2024년(7월~12월)에는 63명, 2025년에는 122명만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지원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다만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은 보호출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도 실집행률이 27.6%에 그친 것은 보호출산 수요 예측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도 0%에서 76.4%까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별 보호출산 신청 규모와 보호조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 신청 실적, 신생아 보호조치 기간 및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 대상 규모와 소요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지역별 집행 편차의 원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라) 다양한 내역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세분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보호출산 산모 지원, 보호출산시스템 등 운영 지원, 보호출산 정책 수행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시스템 구축 지원 및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내용) >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 비용 지원
보호출산시스템 등 운영 지원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정책 수행 경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뉴미디어 노출, 홍보 자료 제작 및 유관기관(산부인과 의료기관, 위기 청소년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한부모시설 등) 배포 등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심사평가원 출생정보 수집·전송시스템 -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개선 및 연계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고려하여 보호출산아동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 위 내역사업들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이 달라 사업수행방식(보조·위탁)이나 피보조·수탁기관도 상이함.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집행방식) >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결산)	지원 비율(%)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보조	중앙상담지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564백만원	100%
	보조	지자체 보조	2,053백만원	서울 50% / 그 외 70%
보호출산 산모 지원	보조	중앙상담지원기관 (아동권리보장원)	720백만원	100%
보호출산시스템 등 운영 지원	보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80백만원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백만원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백만원	100%
		아동권리보장원	20백만원	100%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	위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백만원	100%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40백만원	서울 40% / 그 외 70%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내역사업별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세부사업은 희망이음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상담기관 지정 건수라는 단일 성과지표만으로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상담기관 지정 건수는 상담기관의 설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하여 위기임산부 상담 실적,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지원,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 시스템 운영,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 등 각 내역사업의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상담기관 지정 건수 (단위: 건)	목표	-	-	12	12	16	'25년 예산서 상 12개소 지정	희망이음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상담기관	희망이음시스템
	실적	-	-	16	17	-			
	달성도	-	-	133%	142%	-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내역사업별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사업의 특성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집행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83].

83)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세부사업의 집행성과를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향후 '위기임산부 상담서비스 제공(명)'으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성과지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국민연금기금>

10)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소득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당초·수정)은 15억 6,300만원으로, 이 중 15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노후준비서비스 (7432-440)	1563	1563	-	1563	1548	-	15
· 전담인력 역량 강화 교육 및 서비스제공자양성	211	206	-	206	201	-	5
· 상담서비스 제공	464	459	-	459	452	-	7
· 교육서비스 제공	888	898	-	898	895	-	3

< 2025회계연도 노후준비서비스 지출계획 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금액	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 10. 31.)	일반수용비 (210-01목)	△5	○ 상담·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상담사 및 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부족분 반영
	임차료 (210-07목)	△5	
	국내여비 (220-01목)	28	
	일반연구비 (260-01목)	△18	
	합 계	-	

자료: 보건복지부

나)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일반회계 편성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 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4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노후준비서비스(舊) 노후설계서비스'는 2009년 1월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춘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국민연금기금 지출계획에 반영되어왔음.

법률 제9385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 >

□ 당초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었는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84]를 법제화한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년 6월 제정되면서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도 함께 개정되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84)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336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

□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대상이 종전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동 사업비는 계속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임.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목적[85]과 직접 관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된 국민연금기금[86]을 재원으로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85)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6)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6. 노인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액은 5조 6,576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5조 6,650억 4,400만원이며, 이 중 5조 6,603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계	**5,657,650**	**5,657,650**	**5,665,044**	**5,660,398**	**149**	**4,498**
일반회계	4,824,643	4,824,643	4,829,678	4,828,947	79	6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7,427	647,427	649,695	648,653	-	1,042
국민건강증진기금	185,580	185,580	185,671	182,798	70	2,803

주) 예산현액(계획현액) = 예산액(계획액) + 예산(계획)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계획현액) 4조 8,296억 7,800만원 중 4조 8,289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900만원이 이월되었고 6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4,824,643	-	5,171 △136	4,829,678	4,828,947	79	65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7,656	-	-	7,656	7,334	-	322
노인보호전문기관	12,740	-	-	12,740	12,740	-	-
노인단체 지원	95,709	-	95 △119	95,685	95,623	50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84,689	-	40 △17	2,184,713	2,184,682	-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523,049	-	4,992	2,528,041	2,527,736	21	284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	-	484	484	-	-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06	-	11	116	114	2	1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210	-	33	243	234	6	3

자료 : 보건복지부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계획현액) 6,496억 9,500만원 중 6,486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647,427	360	1,934 △26	649,695	648,653	-	1,0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9,422	-	-	539,422	538,999	-	423
장사시설설치	25,271	-	26 △26	25,271	25,271	-	-
봉안시설 설치(자율)	22,987	-	-	22,987	22,987	-	-
노인요양시설 확충	28,649	-	-	28,649	28,031	-	61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1,098	360	1,908	33,366	33,365	-	1

자료 : 보건복지부

4) 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입은 없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 계획현액 1,856억 7,100만원 중 1,827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8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85,580	91	185,671	182,798	70	2,803
치매관리체계 구축	178,235	46	178,281	176,219	70	1,992
노인건강관리	7,345	45	7,390	6,579	-	811

자료 : 보건복지부

5)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이용은 없고, 전용은 총 3건임.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단체 지원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지침 발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48	
일반회계	소 계	41 △41	
	노인단체 지원	△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노인일자리 지침 발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노인일자리 지침 발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 △17	○수용비→국외여비(국외여비 출장비)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소 계	7 △7	
	장사시설설치	7 △7	○장사법 개정*('25.1.24. 시행), 친자연적 지속 가능한 해양장·산분장 등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전용

자료 : 보건복지부

6)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총 총 5개 사업에서 노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총 1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49	
일반회계	소 계	79	
	노인단체 지원	50	노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25.8월)에 따른 노인정책 영향평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이월계약('25.10~'26.3)을 추진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1	연구용역 계약기한 미도래
	노인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2	원활한 국관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등 이월
	노인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	6	원활한 국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이월
국민건강 증진기금	소 계	70	
	치매관리체계구축	70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액은 총 44억 9,800만원임.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일반회계) 사업에서 사할린한인 입국 지연에 따른 특별생계비 및 임대주택 보증금 집행잔액으로 3억 2,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복구비용 유보액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신축 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6억 1,8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공립요양병원 BTL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불용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공모 미신청에 따른 불용 등으로 19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인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4,498	
일반회계	소계	65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322	사할린한인 입국 지연에 따른 특별생계비 및 임대주택 보증금 집행잔액
	노인단체 지원	12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1	자치단체경상보조 미교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284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	기본경비 집행 잔액
	노인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	기본경비 집행 잔액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소계**	**1,04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23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교부 후 집행잔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618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복구비용 유보액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신축 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 미신청 사유 :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1	국내여비·사업추진비 등 집행잔액
국민건강 증진기금	**소계**	**2,803**	
	치매관리체계구축	1,992	홍보비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불용액, 공립요양병원 BTL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불용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공모 미신청에 따른 불용
	노인건강관리	811	기본경비 및 연구용역 집행잔액,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은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76억 5,600만원 중 73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7,656	7,656	-	-	-	7,656	7,334	-	322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정착비지원	6,220	6,220	-	-	-	6,220	5,898	-	322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지원	1,436	1,436	-	-	-	1,436	1,436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정착비 단가 현실화 등 정착 지원 확대 필요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정착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 사업은 2026년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바, 개선 필요사항을 충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사업은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들에게 임대아파트 관리비(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영주귀국 예정인 사할린한인들에게 귀국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항공료, 임대주택 보증금 및 집기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특별생계비는 기존 입국자와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7만 5,500원이 지원되고, 임대주택 보증금은 신규 입국자(2인 1가구)를 대상으로 1,700만원이 지원되며, 항공료와 집기비품비는 신규 입국자 각각 1인당 45만원, 집기비품비는 140만원이 지원되었음.

2013년 대비 2025년 소비자물가가 약 25.4% 상승하고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문 물가는 약 38~40% 상승했음에도, 정착비 지원단가는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실정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단가 추이(2013~2025) >

(단위: 천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특별생계비(월)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항공료 (신규입국자)	895	895	895	895	500	500	500	500	450	450	450	450	450
집기·비품비 (신규입국자)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임대보증금 (신규입국자, 2인1가구)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17,700

자료: 보건복지부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 대한 수요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신청한 인원은 매년 예산상 지원 인원을 상회하고 있음.

예산상 지원 인원은 2021년·2022년 350명, 2023년·2024년 270명, 2025년 23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반면, 실제 신청한 인원은 2021년 1,079명에서 2022년 685명, 2023년 506명, 2024년 45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72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신청인원 722명에 비해 예산 지원인원은 234명으로, 신청인원이 지원인원의 약 3.1배에 이르는 등 영주귀국 수요와 예산상 지원 규모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수요조사 현황(2021～2025) >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지원인원	350명	350명	270명	270명	234명
신청인원	1,079명	685명	506명	452명	722명

* 선정기준: ①신규입국자 우선 ②기존입국자 동반가족 ③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 2025년부터 모든 자녀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24년 452명에서 2025년 722명으로 신청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직계비속 1명→모든 자녀)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7.17. 시행) 개정사항 >

현행법률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 다만 동 사업은 2026년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바,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후 정체된 정착비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성과 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인원 증가 추이 등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재외동포청에 충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2)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은 노인학대 신고·접수 판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홍보·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법률지원·전문상담 등을 수행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27억 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12,740	12,740	-	-	-	12,740	12,740	-	-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294	1,294	-	-	-	1,294	1,294	-	-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9,015	9,015	-	-	-	9,015	9,015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2,430	2,430	-	-	-	2,430	2,430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필요

노인 복지 분야 종사자의 저임금 해소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고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8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으로서, 사회복지시설[88] 종사자의 직급 및 경력 등에 따른 적정 보수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임.

노인복지시설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88)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국고지원시설 10종에 적용 중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 해당 가이드라인의 평균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8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각각 96.1%와 94.7%로 여전히 평균 준수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90]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단위 :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 (2021~202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83.8%	88.6%	93.4%	95.5%	96.1%	12.3%p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84.6%	89.5%	90.8%	92.6%	94.7%	10.1%p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91])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2024.11.)에 따르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51.3%로 가장 높으며,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이 11.7%,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이 11.6%로 조사된 바도 있음.

---

89)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2026. 6.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90)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측정방법>**
-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정직위 호봉 측정대상에 대하여 당해연도 확보된 인건비의 가중평균을 구해 비교하 는 방식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15호봉 1명), 부장·과장(10호봉 1명), 선임·사회복지사(10호봉 3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회복지사(5호봉 1명), 생활지도원(5호봉 4명)

9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근로여건 개선 희망 >

(단위 : %)

개선 시급 과제	2020년 조사	2023년 조사
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45.3%	51.3%
② 낮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15.8%	11.7%
③ 사회복지시설 단일급여체계 구축으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11.4%	11.6%
④ 기타 (승진연한 및 경력인정 개선,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대 등 9종)	27.7%	25.4%

자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노인 복지 분야 종사자의 저임금 해소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의 전임제 전환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치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겸임 인력을 줄이고 전임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국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9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개소가 운영 중임.

<2025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기준: 2025. 12. 31.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노보	39	4	3	2	2	1	1	1	6**	3	2	2	2	2	4	2	2
쉼터	20	1	1	1	1	1	1	1	3***	1	1	1	1	2	2	1	1

** 경기 1개소 지방비 100% 운영 중
*** 경기 1개소 지방비 100%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리·지원 등을 담당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분리보호, 숙식 제공, 심리치유, 의료지원 및 재학대 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음.

<각 기관별 주요 업무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연구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노인학대예방 교육 – 노인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역별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쉼터에 입소하여 보호받은 노인(입소자)은 522명, 방문하여 상담·치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용자)은 705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입소자는 월평균 43.5명, 이용자는 월평균 최대 58.75명으로 입소하지 않고 단순히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역별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입소자	월평균 입소자	이용자	월평균 이용자
서울	26	2.17	–	–
부산	31	2.58	7	0.58
대구	12	1.00	312	26.00
인천	25	2.08	16	1.33
광주	24	2.00	11	0.92

대전	21	1.75	16	1.33
울산	34	2.83	31	2.58
경기	76	6.33	7	0.58
강원	25	2.08	92	7.67
충북	25	2.08	10	0.83
충남	34	2.83	14	1.17
전북	22	1.83	61	5.08
전남	48	4.00	-	-
경북	43	3.58	96	8.00
경남	47	3.92	16	1.33
제주	29	2.42	16	1.33
계	**522**	**43.50**	**705**	**58.75**

*세종시는 미설치
자료: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3항 [별표 14])을 보면 쉼터장 1명,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요양보호사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쉼터장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92]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업무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93]에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 대상을

9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94]으로 하는 등 두 기관의 담당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기관 간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

직종	배치기준	자격기준
쉼터의 장	1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3명 이상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등 학대사례를 조사·관리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피해노인의 분리보호를 전제로 생활지원, 심리치유,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재학대 방지 등 피해노인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및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94)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4개월 이내의 보호기간 동안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인력기준은 쉼터장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일부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조사·관리 업무와 쉼터의 직접적인 보호·치유 업무를 동일 인력이 병행함으로써 각 업무에 충분히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임.

쉼터의 보호·치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소 초기의 생활지원부터 심리치유,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원가족 회복 및 재학대 방지에 이르기까지 피해노인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쉼터 전문인력이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학대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증가하여 노인 돌봄 공백과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95]

<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2021～2025) >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고건수	19,391	19,552	21,936	22,746	26,578
학대판정	6,774	6,807	7,025	7,167	7,973

자료: 보건복지부

95) '노인학대 10년새 2배로…피해자 10명 중 1명은 맞고 또 맞았다', 2025. 6. 13. 뉴스1

이처럼 노인학대 대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피해노인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쉼터 전문인력의 겸임을 최소화하고 전임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노인단체 지원(2133-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단체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 민간단체, 대한노인회, 경로당 중앙지원본부·광역지원센터의 운영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은 957억 900만원, 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6억 8,500만원으로 956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노인단체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단체 지원 사업	**95,709**	**95,709**	**-**	**△24**	**-**	**95,685**	**95,623**	**50**	**12**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900	900	-	-	-	900	900	-	-
대한노인회운영지원	4,090	4,090	-	-		4,090	4,090	-	-
경로당중앙지원본부 운영	430	430	-	-		430	430	-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428	2,428	-	-		2,428	2,428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7,479	87,479	-	-		87,479	87,479	-	-
노인정책수립 지원	382	382		△24	-	358	296	50	12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부식비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는 냉방비 지원 기간을 확대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식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국고 지급이 제외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냉방비·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하여 국고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다가[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7]이 개정되고 2019년도부터는 노인단체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냉방비는 국고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하여 지원하되 서울특별시에는 국고 20%, 지방비 80% 비율로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연 33만원이 7~8월에 걸쳐 월 16.5만원씩 2개월간 지원되었음.

난방비는 냉방비와 동일한 분담 비율로 월 40만원씩 5개월간 총 200만원이 지원되었음.

양곡구입비는 경로당 1개소당 정부양곡 20㎏ 12포가 지원되었음.

---

96) 난방비 지원: 2008년, 2010년~ / 양곡비 지원: 2012년~ / 냉방비 지원: 2013년~

9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18. 11. 27. 개정)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

< 2025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 >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구입비	운영비
지원 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 내용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62.8만원 정부양곡 20㎏ (52,340원) 12포 지원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지자체마다 상이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에는 양곡비를 8포대에서 12포대로 확대하였는데, 냉방비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냉방비는 7월 및 8월에 해당하는 2개월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온열질환 발생 추이 및 폭염 등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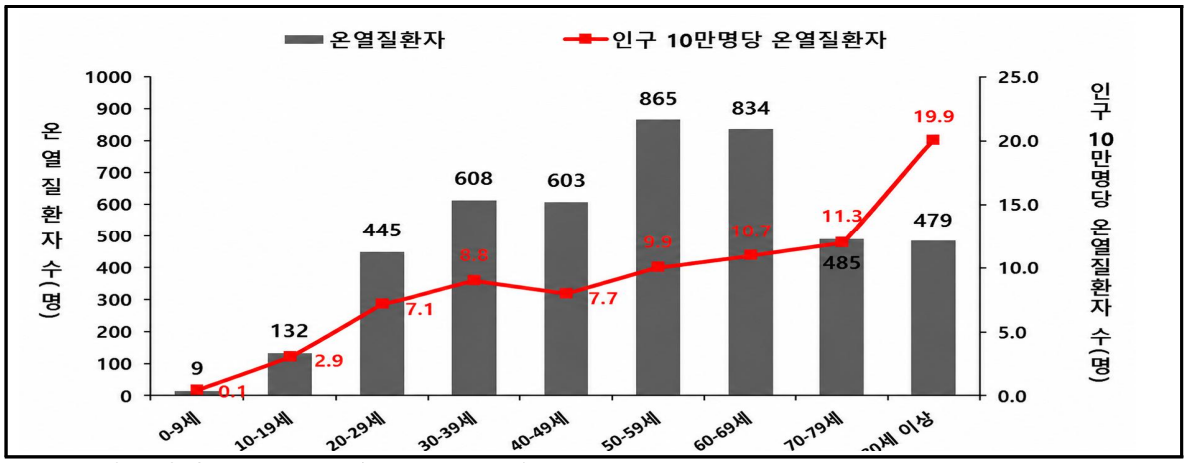
< 경로당 냉방비 지원 내역(2022~2025)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지원기간	7월~8월 (2개월)	7월~8월 (2개월)	7월~8월 (2개월)	7월~8월 (2개월)
지원액(월 단위)	11.5만원	7월: 12.5만원 8월: 22.5만원	17.5만원	16.5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98]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감시체계 운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460명이었음.[99] 이 중 60세 이상은 1,798명(60대 834명, 70대 485명, 80대 이상 479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약 40.3%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 역시 60대 10.7명, 70대 11.7명, 80대 이상이 19.9명으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2025년도 연령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5. 10. 17.)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폭염에 취약한 계층으로 온열질환 발생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는 점에서 폭염 시 고령자의 안전한 실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2025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냉방비 지원 기간(7~8월)이 아닌 기간인 5월에 63명, 6월에 416명, 9월에 18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6월 중순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음.[100]

98)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99)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표' 2025.10.17.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2025년 발생주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

주별 증상발생	온열질환자수(명)	온열질환 추정사망자수(명)
계	4,460	29
1주(05.15.~05.17.)	14	-
2주(05.18.~05.24.)	33	-
3주(05.25.~05.31.)	16	-
4주(06.01.~06.07.)	29	-
5주(06.08.~06.14.)	62	-
6주(06.15.~06.21.)	102	2
7주(06.22.~06.28.)	120	-
8주(06.29.~07.05.)	450	4
9주(07.06.~07.12.)	729	3
10주(07.13.~07.19.)	60	-
11주(07.20.~07.26.)	752	2
12주(07.27.~08.02.)	803	8
13주(08.03.~08.09.)	214	2
14주(08.10.~08.16.)	254	1
15주(08.17.~08.23.)	346	4
16주(08.24.~08.30.)	257	-
17주(08.31.~09.06.)	126	3
18주(09.07.~09.13.)	32	-
19주(09.14.~09.20.)	44	-
20주(09.21.~09.25.)	17	-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5. 10. 17.)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다수의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폭염 기간 경로당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비 지원은 단순한 시설 운영비 지원을 넘어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있음.

100) '연일 폭염에… 2025년 온열질환자 벌써 263명', 2025. 6. 23. 세계일보

< 경로당 이용 이유 >

(단위: %)

연도	경로당 이용 이유							
	친목도모	식사 서비스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017	91.4	57.2	8.3	9.0	0.3	0.6	1.5	0.6
2020	82.9	62.5	19.0	11.0	2.3	1.6	1.3	0.2
2023	66.2	19.2	3.4	4.6	0.4	1.0	0.9	4.3

* 2017·2020년은 복수응답, 2023년은 단일응답
자료: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경로당의 지역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냉방비 지원기간을 실제 온열질환 발생 시기와 기상여건에 맞게 확대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신설되었고(2024년 12월 20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도 부식비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101]

그러나 관련 경비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식재료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은 양곡구입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0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25. 12. 31. 개정·시행)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기준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은 전체의 88.0%이며,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주 3.6회로 주 5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족한 실정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위 심사 시 경로당 부식비 605억원 증액안이 의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부식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지역별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

(기준: 2025. 9. 30. / 단위: 개소, %, 회)

시 도	경로당 수	식사 제공중인 경로당 수(%)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횟수
합계/평균	69,724	61,333(88.0)	3.6
서울	3,648	3,331(91.3)	3.9
부산	2,427	2,215(91.3)	3.4
대구	1,856	1,576(84.9)	3.6
인천	1,585	1,411(89.0)	3.5
광주	1,391	1,337(96.1)	4.2
대전	868	844(97.2)	3.1
울산	862	806(93.5)	3.2
세종	525	502(95.6)	3.5
경기	10,432	9,113(87.4)	3.2
강원	3,369	2,830(84.0)	3.7
충북	4,298	3,646(84.8)	3.8
충남	5,973	5,135(86.0)	3.2
전북	6,956	5,774(83.0)	3.9
전남	9,256	8,697(94.0)	3.6
경북	8,165	7,247(88.8)	4.0
경남	7,639	6,495(85.0)	3.8
제주	474	374(78.9)	1.5

자료: 보건복지부 (2025.9월 기준 지자체별 제출자료 기준)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39-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2조 1,846억 8,900만원, 이·전용 2,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1,847억 1,300만원으로 2조 1,846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184,689**	**2,184,689**	**-**	**24**	**-**	**2,184,713**	**2,184,682**	**-**	**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153,452	2,153,452	-	-	-	2,153,452	2,153,422	-	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	22,103	22,103	-	-	-	22,103	22,103	-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9,004	9,004	-	-	-	9,004	9,004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	130	130	-	24	-	154	153	-	1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의 저소득 노인 지원 기능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 노인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보수단가 인상과 사업기간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구분됨.

먼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으로 봉사(사회활동)의 성격을 지니며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월 29만원(11개월)을 지급받음.

노인역량활용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시설 학습 보조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 수준은 월 76.1만원(10개월)임.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사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 수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함.

<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내용 >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1,098 (+68)	※ 괄호: '24년 대비 증감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92 (+38)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노인역량 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156 (+15)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아이돌봄 시범사업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	60세 이상	5 (신규)	여가부 아이돌봄 사업 준용	
민간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64 (+6)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지원 사업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99 (+4)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산업 안전·전기 등)		70	기업에 최대 270만원 인턴지원금 (월40만원X3개월) 채용지원금 (월50만원X3개월) 지원	
	노인친화 기업·기관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개선)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102] 수급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해당 유형의 일자리는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보다는 일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소득 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10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 2025년도 공익활동형 일자리(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 프로그램 유형 >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자료: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103]은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1인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임.

이 산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104](약 239만원)의 약 95.3%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임.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103)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

(단위: 원)

구 분	2023	2024	2025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인가구)	2,020,000	2,130,000	2,280,000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인가구)	3,232,000	3,408,000	3,648,000

자료: 연도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월)

구 분	2023	2024	2025
1인가구	2,077,892	2,228,445	2,392,013
2인가구	3,456,155	3,682,609	3,932,658
3인가구	4,434,816	4,714,657	5,025,353
4인가구	5,400,964	5,729,913	6,097,773
5인가구	6,330,688	6,695,735	7,108,192
6인가구	7,227,981	7,618,369	8,064,805
7인가구	8,107,515	8,514,994	8,988,428

자료: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사업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이 저소득 노인과 동일한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주요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90.3%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위소득 구간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공익활동	공동체 사업단	취·창업형	노인역량 활용형	계(명)
50% 미만	90.3	2.3	4.6	2.8	100.0 (348)
50% 이상~100%미만	88.7	1.8	4.1	5.3	100.0 (223)
100%이상~150%미만	67.7	7.6	11.3	13.4	100.0 (58)
150% 이상	56.9	12.1	18.1	12.9	100.0 (46)

자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의 소득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기초연금 수급 여부 중심의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적정성 등 질적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의 소득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2025년 활동비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9,667원 수준으로 같은 연도의 최저임금 10,030원보다 낮은 수준임.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활동비는 근로에 대한 임금과 법적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의 소득보완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활동비 수준이 참여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완에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형 보수단가와 최저임금 추이 >

(단위: 원/시간당)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익활동형	6,667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667	9,667
최저임금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10,030

* 음영 :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단가(시간당)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활동비 산정 시 물가 및 생활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비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105]

10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 12. 20.>

□ 그 외에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사업기간은 연간 11개월로 운영되고 있어 1개월의 활동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임.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1개월의 활동 공백은 해당 기간 동안 활동비가 중단되어 참여자의 소득보완 효과가 단절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의 소득보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11개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의 낮은 연계율 원인 분석 및 향후 유사 사업 반영 필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낮은 참여 및 일자리 연계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6년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비롯한 향후 유사 사업의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 지원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업하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유·아동 등·하원, 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되었음.

동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60세 이상 노인 중 참여자를 선발하면, 여성가족부에서 1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한 가정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월 60시간 근무하고 월 76만원을 지급하였음.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개요 >

□ **추진 목적**
- ○ 복지부-여가부 협업 통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로 공급,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

□ **시범사업 개요**
- ○ **(사업명)** 사회서비스형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 ○ **(사업 규모)** 40개소, 5,000명 (60세 이상)
- ○ **(주요직무)** 유·아동 등·하원/등·하교 서비스 지원
- ○ **(운영기간)** 12개월 (2개월 양성교육기간 포함)
- ○ **(참여자 근무시간)** 월 60시간
- ○ **(참여자 급여)** 월 76만원 (주휴수당 포함)

□ 사업 운영 체계

○ **(수행기관 선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0개소*를 아이돌봄 지원법 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시·군·구) 하여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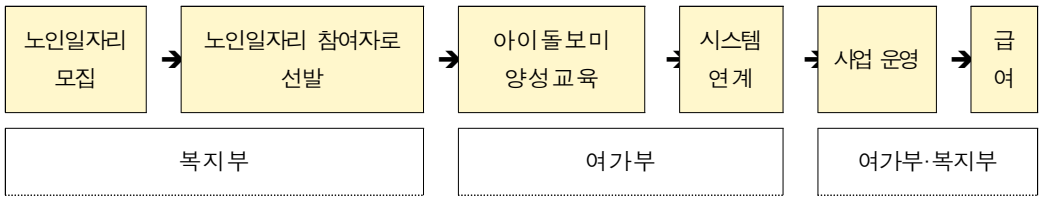
○ **(참여자 선발 및 교육)**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로 선발*(1월)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120시간, 전국 시군구 여성인력개발센터 57개소) 이수(2월)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상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

○ **(사업 운영)** 여가부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보미-이용자' 연계 시작(5월～)

< 복지부 - 여가부 연계 체계 >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모집,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스템 연계 및 참여자 매칭 등 수행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선발이나 교육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참여를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완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이수자의 실제 일자리 연계 여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실제 동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면, 사업량(참여자 수) 목표는 5,000명이었으나 신청자는 2,353명으로 목표량 대비 47%에 그쳤으며, 교육을 최종적으로 이수한 노인 1,995명 중 실제 가정과 연계된 일자리 수도 499개로서 연계율은 25.0%에 불과한 바 참여자 모집 단계와 교육 이후 실제 일자리 연계 단계에서 각각 어떤 요인이 사업 참여와 연계를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결과 >

(기준: 2025. 12. 31. / 단위: 명, %)

사업량 목표(A)	신청 (B)	교육 이수(C)	이수율 (C/B)	연계 (D)	연계율 (D/C)	목표대비 (D/A)	비고
5,000	2,353	1,995	84.8%	499	25.0%	10.0%	신청가정: 19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참여자 모집 단계에서는 근무조건, 보수 수준, 업무 특성 및 교육 부담 등을, 일자리 연계 단계에서는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이용가정과 참여자 간 매칭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1,995명에 달했음에도 실제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은 1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제 서비스 수요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서비스 신청가구가 19가구에 그친 원인을 이용가정의 수요 규모와 이용조건, 서비스 제공시간, 참여자와 이용가정 간 매칭 방식 및 지역별 수급 여건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예산에는 노인인력을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하는 '유아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음. 해당 사업은 전국 245개 유치원에 60세 이상 노인 400명을 배치하여 유치원의 아침·저녁 돌봄, 등·하원 지도 및 급·간식 배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준하여 10개월간 운영될 예정임.

< 2026년도 유아돌봄 특화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개요 >

○ (사업명)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 ○ (대상기관) 전국 아침·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 ○ (사업규모) 40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예산활용** * 전국 245개 유치원 참여 ** 노인역량활용사업 신노년세대 일자리로서 별도 예산 배정 없음 ○ (근로조건) 월 60시간 근무, 월 급여 90만원(주휴수당 포함) ○ (주요직무) 아침(7:00～)·저녁(～19:00) 돌봄, 등·하원 지도, 급·간식 배식 등 ○ (운영형태)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준하여 운영(특화교육 포함 10개월) - 60세 이상(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 유치원 자부담 1시간당 3,000원 책정

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시범사업은 2025년 시범사업과 달리 개별 가정이 아닌 유치원을 수요처로 하여 노인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노인인력을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사업에서 나타난 참여자 모집 및 실제 수요처 연계 과정의 제약요인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6년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비롯한 향후 유사 사업의 사업량 산정, 참여자 모집·교육 및 수요처 확보·매칭 등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은 5,394억 2,200만원 중 5,38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3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539,422**	**539,422**	-	-	-	**539,422**	**538,999**	-	**42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534,474	534,474	-	-	-	534,474	534,354	-	120
중앙노인 돌봄지원 기관 운영지원	3,030	3,030	-	-	-	3,030	3,030	-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관리	1,622	1,622	-	-	-	1,622	1,319	-	303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296	296	-	-	-	296	296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서비스 수행인력의 교통비·통신비 등 실비성 비용 지원기준 마련 및 고용 구조 개선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 등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의 실비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고용 구조 개선을 검토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 등이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55만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연계 제공하는 사업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자료: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동 사업 예산은 주로 서비스 수행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와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액 5,344억 7,400만원 중 인건비 예산액은 5,059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94.7%를 차지하며, 전체 집행액 5,343억 5,400만원의 약 94.7%인 5,054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전담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는 2025년 기준 3,135명이 근무 중임. 이들은 생활지원사 16명당 1명씩 배정되며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현장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생활지원사는 2025년 기준 35,994명이 근무 중임. 이들은 사업대상 15명당 1명씩 배정되며 이들과 직접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며,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등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 및 돌봄 욕구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도 전담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현황 >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일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제외)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기본급	(1년 미만) 2,281,800원 (1년 이상 ~ 2년 미만) 2,324,300원 (2년 이상 ~ 3년 미만) 2,366,500원 (3년 이상 ~ 4년 미만) 2,411,500원 (4년 이상 ~ 5년 미만) 2,475,400원 (5년 이상) 2,538,700원	1,426,000원
정규직 전환여부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사업안내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행기관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	
평균연령	43.8세	56.4세
인력현황 (2025.12.31. 기준)	3,135명 (생활지원사 12명당 1명)	35,994명 (취약 독거노인 16명당 1명)
배정기준	생활지원사 16명당 1명	사업대상 15명당 1명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수행인력의 업무가 대상자 가정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및 통신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적절히 보전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지원사 등의 업무시간, 대상자 간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소요시간, 기존 담당 대상자 수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수행인력에 대하여 교통·통신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106)]

106)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p.90
3.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 그 외 수당
·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 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현재 수행인력의 교통비 및 통신비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비는 107개, 통신비는 6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최소 월 5천원(인천, 대전 등)에서 최대 월 25만원(전북 정읍시)의 교통·통신비가 지원된 바 있음.

< 2025년도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현황 >

(기준 : 2025. 12. 31.)

구 분	서비스관리자	생활지원사
교통비	9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통신비	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기타 별도지원 (처우개선비·특별수당· 종사자수당·활동지원비· 직급수당)	1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방비 지원사항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수행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비용의 부담 정도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교통·통신비 지원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수행인력의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행인력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교통비·통신비 등의 실비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임.

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방문형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용구조는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매년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생활지원사는 동일한 대상자의 상태변화와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나 담당자 변경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고용 구조 개선을 검토하여 수행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장사시설설치(지원), 봉안시설 설치(자율)(2140-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사시설설치 사업은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장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액 252억 7,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장사시설설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사시설설치 사업	25,271	25,271	-	26 △26	-	25,271	25,271	-	0.3
공설 장사시설 설치	21,709	21,709	-	-	-	21,709	21,709	-	-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	3,400	3,400	-	-	-	3,400	3,400	-	-
장사제도 운영	162	162	-	26 △26	-	162	162	-	0.3

자료 : 보건복지부

□ 봉안시설설치 사업은 기존 장사시설설치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025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공설장사시설(봉안당·담) 확충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 장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봉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액 229억 8,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봉안시설설치(자율)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봉안시설 설치(자율) 사업	**22,987**	**22,987**	**-**	**-**		**22,987**	**22,987**	**-**	**-**
봉안시설 설치(자율)	22,987	22,987	-	-		22,987	22,98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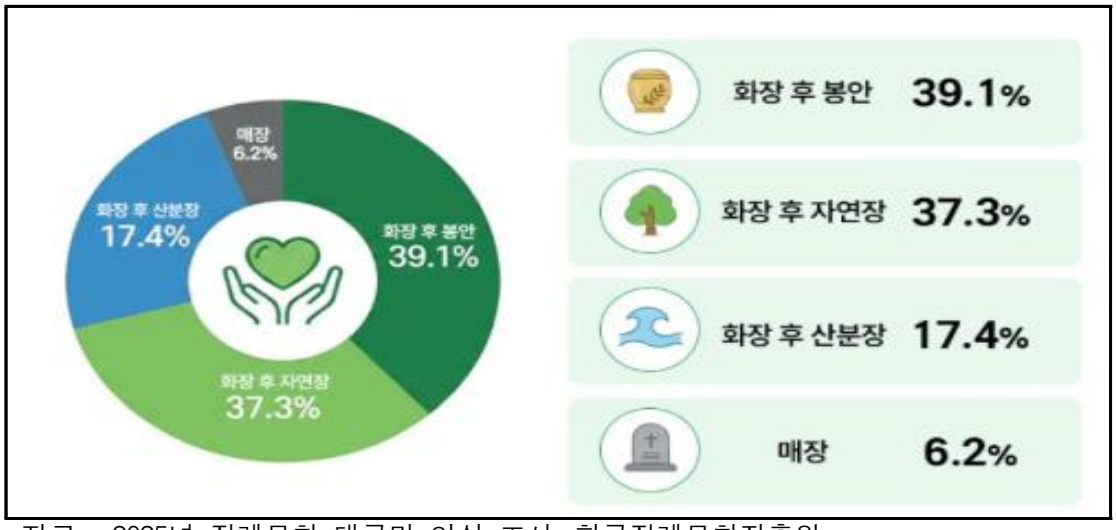
나) 자연장지 확대 조성 및 봉안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장지 확대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봉안시설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절차 지연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장 후 자연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확충과 함께 자연장지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화장 후 희망하는 장사 방법으로 자연장 37.3%, 산분장[107] 17.4%로 나타나 자연친화적인 장사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장사 방법 >



자료 : 2025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07) 「2025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장사방법
-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수목형태 자연장",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 "화초형태 자연장",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형태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산분장"으로 부를 수 있음
- 산분장은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 "해양산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 "시설산분"으로 구분함

2025년 1월부터 산분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등 자연장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연장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장사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 말 기준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는 총 211개소이며, 공설은 79개소(37.4%), 사설은 132개소(62.6%)로 사설 자연장지가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67개소), 전라남도(24개소), 경상남도(22개소) 등에 자연장지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는 자연장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음. 또한 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은 사설 자연장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등은 공설 자연장지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 공급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자연장지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개소, 기)

시도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		
	합계	공설	사설
계	211	79	132
서울	1	1	-
부산	0	-	-
대구	2	1	1
인천	7	7	-
광주	3	2	1
대전	1	1	-
울산	1	1	-
세종	2	1	1
경기	67	16	51
강원	17	8	9
충북	12	5	7

충남	14	7	7
전북	14	8	6
전남	24	9	15
경북	19	2	17
경남	22	6	16
제주	5	4	1

* 사설 자연장지(수목장림)은 법인 및 종교단체 시설만 포함
* (산분장지) 2025년 1월부터 산분장 제도 시행에 따라 산분장지 현황 미해당
자료 : 보건복지부

자연장지 설치 개소 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152개소에서 2024년 211개소로 59개소(38.8%)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설 자연장지의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사설 자연장지는 85개소에서 132개소로 47개소(55.3%) 증가한 반면, 공설 자연장지는 67개소에서 79개소로 12개소(17.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자연장지 중 공설 자연장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44.1%에서 37.4%로 감소하였음.

< 자연장지 현황(2020년～2024년) >

(단위 : 개소)

연도		자연장지 설치 개소 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2	164	184	192	211
공 설		67	70	77	78	79
사설	소계	85	94	107	114	132
	법인	20	23	27	27	26
	종교	65	71	80	87	106

* 출처 : 각 시도 장사업무실태조사 제출자료
** 사설자연장지는 법인 및 종교단체 시설만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처럼 자연장지 전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증가가 주로 사설 자연장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설 자연장지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공설 자연장지는 사설 자연장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장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장사 수요에 공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의 경우 공설 자연장지는 개인 관내 35만원, 관외 70만원인 반면, 사설 자연장지의 개인 사용료는 400만원으로 약 5.7배(관내 기준)에서 11.4배(관외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108)]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설 자연장지는 민간시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지역별 장사수요에 공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장지의 전체적인 증가 추세만을 기준으로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설 자연장지에 비해 공설 자연장지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연장 수요와 시설 접근성 등을 파악하고 공설 자연장지의 확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8)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여주추모공원 자연장지(공설), (재)여자세종추모공원 자연장(사설) 가격정보 검색(2026. 8. 3.)

□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산분장이 제도화되어 자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었음.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분장지 등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으로, 유골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는 방식과 달리 별도의 봉안시설을 마련하거나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앞서 2025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17.4%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산분장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국민의 장사방식 선택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이용환경에 대한 수요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자연장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장지 확충뿐만 아니라 산분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의 이용 여건과 시설·관리체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및 산분장 등 자연친화적인 장사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지역별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설 자연장지의 지역별 공급 및 접근성을 점검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설 자연장지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산분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이용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봉안시설 설치 사업은 봉안당·봉안담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지역 장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봉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국비 70%, 지방비 30%)임.

동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에 지자체가 국비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이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봉안시설 설치 사업 집행 절차 >

<전년4월~5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 (시·도)부처·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신청서 제출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전년6월~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	
↓		
<전년9월~12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예산 확정 시·도 통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		
<6월>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장점검**	
↓		
<10월>	**국고보조금 실집행 현장점검**	
↓		
<익년2월>	**사업비 정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그런데 2025년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률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업지 229억 8,7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집행액은 115억 3,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50.2%에 그쳐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2025년 봉안시설 설치 사업 예산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2,987	22,987	22,987	22,987	-	22,987	11,539	22,987	11,539	10,799	649	50.2

자료: 보건복지부

□ 실집행률이 이와 같이 저조한 사유는 지자체의 봉안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 및 불용으로 보이는바, 2025년 주요 설치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산지전용협의 지연, 광주광역시는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109] 예비인증 지연, 경기도 용인시는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유인 한편, 전남 영암군의 민원 발생 우려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2025년도 봉안시설 설치 지연현황 및 사유 >

(단위 : %)

지자체	사업명	실집행률(%)	사유
인천	봉안당 신축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0%	산지전용협의 지연 '25. 9월 착공, '26년 하반기 집행 예정
광주	봉안당 신축	21%	BF예비인증 지연 '25. 10월 인증 완료, '26. 2월 착공, '26. 8월 집행 예정
경기 용인	봉안담 설치	38%	설계, 도시계획시설변경 지연 '25. 12월 착공, '26. 9월 준공 예정
강원 원주	봉안당 신축	90%	맨홀 발견으로 맨홀 이전 후 공사 추진 '25. 9월 착공, '26년 8월 집행완료 예정

109) 장애인·고령자 등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강원 인제	봉안담 신축	50%	준공시기 미도래 '25. 8월 착공, '26. 10월 집행완료 예정
충남 아산	봉안당 설치	0%	설계 결과 사유지 확보 필요, 수용 재결 절차 진행 '26. 6월 착공, '26. 6월 집행 예정(사업완료는 28년 2월 예정)
충남 당진	봉안당 설치	0%	건축기획업무 심사 보완처분으로 인한 기간 증가 '26. 7월 착공, '26. 6월 집행완료(선급금 지급)
전남 영암	봉안담 설치	-	주민수용성 및 민원발생 우려로 군 의회 극심한 반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포기
전남 완도	봉안담 설치	51%	실시설계용역기간 연장 '25. 11월 착공, '26. 6월 집행완료 예정
경남 함안	봉안담 설치	21%	군계획시설 인가, 도계약심사 등 협의 절차 지연 '25. 9월 착공, '26. 5월 준공

자료 : 보건복지부

건축공사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한 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은 해당 지자체의 연도 내 집행실적을 저하시키고 사업비의 이월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포기될 경우 국고보조금이 당초 계획한 시기에 지역의 장사시설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됨.

또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시설 확충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봉안시설 설치 사업의 지자체 선정 단계에서 산지전용·도시계획시설 변경·BF 예비인증·토지 확보 등 주요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와 예상 소요기간, 지방비 확보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집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7) 노인요양시설 확충 (223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양로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화재안전창문 설치,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 예산액은 286억 4,900만원 중 280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6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28,649**	**28,649**	-	-	-	**28,649**	**28,031**	-	**618**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25,505	25,505	-	-	-	25,505	24,887	-	618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60	160	-	-	-	160	160	-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626	626	-	-	-	626	626	-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356	2,356	-	-	-	2,356	2,356	-	-
직접수행	2	2	-	-	-	2	2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관리 강화 및 건축단가 현실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장기간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선정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간 동결된 건축 지원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과 함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5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서울 50%·지방 70%의 국비에 나머지 지방비가 매칭되어 실시되었음.

2025년에는 255억 5백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15억 5,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5.3%에 그쳤으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실집행률이 개선되는 반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11.8%, 2024년 29.9%, 2025년 19.1%로 최근 3년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전체 사업의 집행부진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치매전담형 사업의 집행 저해요인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실집행 현황(2023~2025) >

(기준: 2025. 12. 31.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2,893	6,165 (47.8)	5,433	6,691 (123.1%)	3,832	7,414 (193.5)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27,198**	**3,219 (11.8)**	**13,149**	**3,934 (29.9%)**	**21,673**	**4,144 (19.1)**
합 계	40,091	9,384 (23.4)	18,582	10,625 (57.2%)	25,505	11,558 (45.3%)

자료: 보건복지부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예산액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예산액에 맞추어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게 됨.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집행 절차 >

전년3월	익년 국고보조사업 계상신청 및 접수	시·군·구→시·도→복지부
	↓	
전년12월	익년 정부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복지부
	↓	
전년12월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복지부→시·도→시·군·구
	↓	
1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군·구→시·도→복지부
	↓	
1월~	국고보조금 교부	복지부→시·도→시·군·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설계, 계약, 착공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부분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해당 연도 국고보조금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자체의 수요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설계 완료 여부,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단가(198만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110] 이는 조달청이 공시한 공공건축물의 유형별 공사비 중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시설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노유자시설의 2023~2025년 평균 공사비(약 398만원/㎡)의 약 55% 수준에 불과함.

평균 공사비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원단가는 2022년 이후 4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실제 공사비와 지원단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었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달청 노유자시설 평균 공사비(유형별 공사비) 현황(2023~2025) >

(단위: 원)

3개년 평균	2023	2024	2025
3,978,465	4,203,094	3,412,444	4,319,859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홈페이지(https://pcae.g2b.go.kr:8044/)>공사비현황 >유형별공사비 검색(2026. 8. 3.)

110) 지원단가 인상 이력: 2019년 150만원 → 2020~2021년 180만원 → 2022~2025년 198만원

2025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례로는 사전검토 지연 및 기부채납 타당성 검토·조율로 인한 일정 지연(전남 영암), 법인 유휴부지 논의,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 지연(충남 부여, 경기 안산, 경남 창원 등), 2026년 준공 예정(부산 사상, 전남 순천) 등이 있음. 사업 포기 사례로는 위탁운영 업체의 부재, 코로나 이후 지역 요양원 입소자 급감, 요양보호사 구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 포기(전남 신안)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지자체 선정 단계에서 설계 완료 여부,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간 동결된 건축 지원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ICT기기(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 신속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예산액 310억 9,800만원, 예비비 19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3억 6,600만원 중 333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31,098**	**31,098**	**360**	**-**	**1,908**	**33,366**	**33,365**	**-**	**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31,098	31,098	360	-	-	31,458	31,457	-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	-	-	-	-	1,908	1,908	1,908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응급관리요원 적정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댁내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관리요원의 인력 배치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위하여 보수체계와 고용여건 및 교통비·출장비 등 지역별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한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서비스는 대상자 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댁내장비를 통해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임. 감지된 응급신호는 통신망을 통해 디지털돌봄정보시스템과 응급관리요원에게 전달되며,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과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음.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조손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



자료: 2025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동 서비스는 장비가 감지한 이상 신호를 토대로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응급관리요원의 역할이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함.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시·도의 사업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의 행정지원을 수행하며, 응급관리요원은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댁내장비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함.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시·도별로 1~2명이 배치되고, 응급관리요원은 지역센터를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여건과 서비스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배정되고 있음.

특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관리요원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평일 야간, 휴일)에 휴대전화 착신전환, 탄력근무, 당직 등의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2025년도 응급관리요원 현황 >

(기준 : 2025. 12. 31.)

구 분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
자격요건 (권고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노인·장애인 관련 대인서비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가산점 부여	
근무시간	- 주 5일, 일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로시간 유연적용 (예시: 7시~16시 / 13시~22시)	
기본급(월)	2023년: 2,010,580원 (최저임금) 2024년: 근속수당 도입 (1년 미만) 2,060,740원 (최저임금) (1년 이상 3년 미만) 2,096,340원 (최저임금+35,600원) (3년 이상 6년 미만) 2,131,940원 (최저임금+71,200원) (6년 이상) 2,167,540원 (최저임금+106,800원) 2025년 (1년 미만) 2,096,270원 (최저임금) (1년 이상 3년 미만) 2,131,870원 (최저임금+35,600원) (3년 이상 6년 미만) 2,167,470원 (최저임금+71,200원) (6년 이상) 2,203,070원 (최저임금+106,800원)	
정규직 전환여부	-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평균근속기간	- 23개월	- 37개월
평균연령	- 45세	- 47세
인력현황 (2025. 12. 31.)	- 22명	- 724명
배정기준	- 1명(9곳):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제주·충북 - 2명(7곳): 강원·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세종 포함)	- 지역센터를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인력배분 * 도시, 농·어촌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적절하게 대상자 배정

자료 : 보건복지부

□ 댁내장비 설치 대수는 2021년 9만 9,273대에서 2025년 27만 6,954대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응급호출·통화 건수도 7만 8,745건에서 38만 5,066건으로 약 4.9배 증가하였으며, 활동미감지 대응 역시 6만 2,356건에서 35만 1,872건으로 약 5.6배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서비스 규모와 대응 건수의 증가는 응급관리요원의 모니터링·안전확인 업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적(2021～2025) >

(단위: 대, 건)

연 도	댁내장비 (A)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 호출·통화	화재감지	활동미감지 대응
2021	99,273	78,745	12,016	4,373	62,356
2022	167,855	131,187	15,640	5,319	110,228
2023	238,806	155,373	17,954	6,836	130,583
2024	268,505	341,608	27,096	9,106	305,433
2025	**276,954**	**385,066**	**25,083**	**8,111**	**351,872**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같은 기간 응급관리요원은 590명에서 766명으로 176명(29.8%)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따라 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 장비는 2021년 168대에서 2025년 362대로 약 2.2배 증가하여 응급관리요원 1명이 담당하는 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응급관리요원이 모두 766명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댁내장비는 26만 8,505대에서 27만 6,954대로 증가하여 1인당 관리 장비도 351대에서 362대로 증가하였음.

<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 현황(2021~2025) >

(단위: 대, 명)

연 도	댁내장비 (A)	응급관리요원 배정인원 (B)	1인당 장비 운영 대수 (A/B)
2021	99,273	590	168
2022	167,855	651	258
2023	238,806	671	356
2024	268,505	766	351
2025	**276,954**	**766**	**362**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인력은 추가로 확충되지 않은 반면 관리 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급상황 대응, 대상자 안전확인, 장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1인당 관리 장비 수가 증가할수록 잠재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장비 수뿐 아니라 응급호출·출동·방문점검 건수 등 실제 업무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별로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장비 운영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전국 평균은 361대이나, 대구 413대, 부산 395대, 울산 393대, 경남 386대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면적과 이동거리, 응급호출·현장출동 건수, 대상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배치기준을 보완하고 업무 부담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지역별 응급관리요원 및 댁내장비 운영 현황 >

(기준 : 2025. 12. 31. / 단위 : 가구)

시도	응급관리요원	장비 운영 대수	인당 장비 운영 대수
계 / 평균	**766**	**276,954**	**361**
서울특별시	8	2,029	254
부산광역시	**47**	**18,555**	**395**
대구광역시	**34**	**14,033**	**413**
인천광역시	18	5,953	331
광주광역시	20	7,075	354
대전광역시	**26**	**9,784**	**376**
울산광역시	**16**	**6,284**	**393**
세종특별자치시	5	1,561	312
경기도	101	36,268	359
강원특별자치도	73	25,448	349
충청북도	40	14,236	356
충청남도	66	22,898	347
전라북도	**71**	**26,368**	**371**
전라남도	108	36,388	337
경상북도	**61**	**22,746**	**373**
경상남도	**60**	**23,159**	**386**
제주특별자치도	12	4,169	347

* 음영 표시: 평균 운영 대수(361 대) 초과 지역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응급관리요원의 연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 비율은 2024년 101.6%, 2025년 91.1%로 나타났음. 다만 해당 비율은 당해 연도 채용인원과 전체 퇴직인원을 비교한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이직률과는 차이가 있으나, 매년 채용 규모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인원이 퇴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인력 유지의 어려움에는 보수, 고용형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 등 근무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3~2025년 응급관리요원 채용현황 >

(단위 : 명, %)

연 도	채용인원	이직(퇴직)	이직률	근무 중	미채용(공석)
2024	376	382	101.6	741	25
2025	305	278	91.1	746	20

*해당연도 채용인원 및 퇴직(이직)인원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관리요원의 2025년 기본급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209만 6,27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경력수당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월 10만 6,800원이 지급되는 수준임. 또한 수행인력은 기간제로 채용되고, 교통비·통신비와 출장여비, 야간·휴일 출동수당 등은 사업안내상 시·군·구의 승인 및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응급관리요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착신전환·당직 등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장비 점검과 대상자 안전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및 긴급 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출장비·교통비 등은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의 성격이 강함.

현재 출장비·교통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자체별 월 평균 지원금액을 보면 교통비는 7만 2천원~19만 8천원, 통신비는 1만 5천원~8만 2,500원, 출장비는 2만원~18만 7천원(또는 1회당 5천원~4만원) 수준이며, 교통비와 통신비를 일괄로 지원하는 시군구는 약 10만원~20만원 범위에서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지자체 지원 현황 >

(단위: 지원 중인 시군구 개소 수 / 2025.8월 기준)

시도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서울**	2 (권역, 8개 시군구)	2 (권역, 7개 시군구)	1 (권역, 4개 시군구)
부산	-	-	-
대구	9	9	1
인천	1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1	1	1
경기	2	1	6
강원	3	-	1
충북	3	1	-
충남	16	10	-
전북	1	-	3
전남	14	1	2
경북	15	4	2
경남	-	-	-
제주	2	-	-

* (월 평균 지원금액) (교통비)72~198천원, (통신비)15~82.5천원, (출장비)20~187천원(또는 1회당 5~40천원) 수준이며, 교통비와 통신비를 일괄로 지원하는 시군구는 약 100천원~200천원 범위에서 지원 중

** 서울의 경우, 시군구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총 7권역, 권역당 2~4개 시군구)로 운영

※ 교통비·통신비·출장비 외에도 처우개선비·자격수당·명절휴가비, (혹한·혹서기) 활동비 등 시군구별 다양한 형태로 지원 중

자료 :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상 현장 방문과 긴급 출동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출장비와 교통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댁내장비 수뿐만 아니라 응급호출·현장출동 건수, 지역별 이동거리 및 대상자 특성 등 실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을 보완하고, 업무 부담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수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교통비·통신비 및 야간·휴일 출동수당 등의 지역별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이 전소됨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응급상황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예비비 15억 3,300만원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6억 6,900만원(43.6%)에 그쳐 8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 예비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	-	1,533	1,533	-	1,533	669	1,533	669	-	864	-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경과를 보면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돌봄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비상 대응인력 운영, 응급관리요원 수당 지급 등 긴급 대응을 위하여 2025년 10월 15일 예비비가 편성되었음.

그러나 시스템 복구가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단기인력이 채용되지 않았고, 기존 응급관리요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각종 수당도 일부만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비상대응 추진경과 >

○ (대응기간) 2025. 9. 26.(금)~10. 26.(일)
○ (추진경과)
2025.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2025. 9. 29. 비상대응 매뉴얼 전파 및 광역지원기관 대상 교육 실시
2025. 10. 1. 1차 대상자 케어콜 시행 및 지역센터/중앙모니터링센터 추가 안전확인 실시
2025. 10. 13. DB서버 2개 구동
2025. 10. 24. 1, 2차 서버 복구
2025. 10. 27. 시스템 재오픈

자료: 보건복지부

□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당시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실제 집행률이 43.6%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다소 크게 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사한 재난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되, 예비비 요구 단계에서 비상 대응기간, 실제 인력 투입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산정하여 예비비가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9) 치매관리체계 구축(2234-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치매 예방·조기발견, 치매환자 가족 지원,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계획액 1,725억 6,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600만원 및 예비비 19억 8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1,782억 8,100만원 중 1,751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9,2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178,235**	**178,235**	**46**	**178,281**	**176,219**	**70**	**1,992**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4,452	4,452	46	4,498	4,358	70	26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1,588	1,588	-	1,588	1,588	-	-
광역치매센터 운영	7,928	7,928	-	7,928	7,928	-	-
치매안심센터 운영	150,577	150,577	-	150,577	149,798	-	779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569	569	-	569	569	-	-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급	3,838	3,838	-	3,838	3,726	-	112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3,287	3,287	-	3,287	2,225	-	1,062
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323	323	-	323	323	-	-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876	3,876	-	3,876	3,876	-	-
치매공공후견지원	954	954	-	954	954	-	-
치매관리사업	843	843	-	843	830	-	13

자료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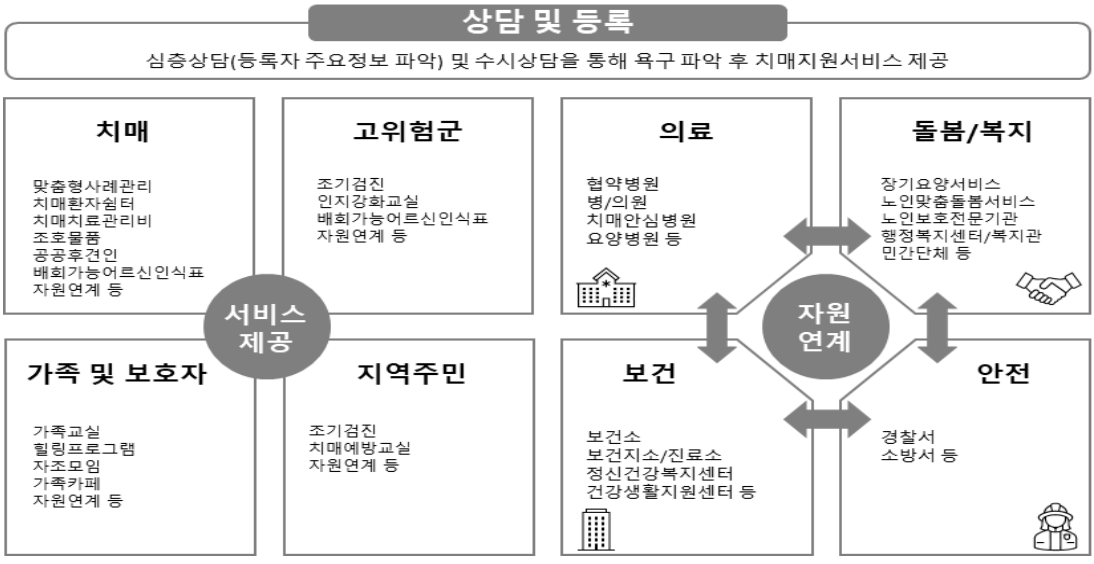
나)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노력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는 농촌지역 등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규정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기초 지자체(시·군·구)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상담, 등록관리, 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치매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



자료: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은 직역별(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1명 이상 채용이 원칙인데[111] 이를 충족한 센터는 전국 256개 중 38.7%인 99개소에 불과함.

<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현황 >

(기준 : 2025. 12. 31. / 단위 : 개소, %)

구 분	총 계	충 족	
			임상심리사
계	256	99(38.7%)	109(41.0%)
도시	103	49(47.6%)	52(50.5%)
도농복합	66	29(43.9%)	32(48.5%)
농촌	87	21(24.1%)	25(28.7%)

* 2026년부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단서(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근거, 직역별 업무범위를 준수하면서 미배치 직역의 업무를 타 직종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침 개정

자료 : 보건복지부

특히 도시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 충족률이 47.6%인 반면 농촌 지역 소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기준 충족률이 24.1%에 불과한 실정임. 각 직종 중 임상심리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임상심리사 채용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력 기준 충족률이 낮은 상황임.

보건복지부는 임상심리사의 배출인력(2024년말 기준 23,881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육 등 타 복지제도에서도 임상심리사를 인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많아, 치매안심센터에서 임상심리사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11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제8조 관련)**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울러 동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대체 인력 채용을 허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직종의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였더라도 직역별 업무범위를 준수하면서 미배치 직역의 업무를 타 직종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함.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정 직종의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예외 및 간주 규정을 활용하여 대체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직역별 전문인력을 각각 배치하도록 인력기준을 정한 것은 각 직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 및 간주 규정이 인력기준 미충족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상시화될 경우 직역별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직종 간 연계·협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농촌지역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규정에 정해진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에 교부되어 집행되고 있음(국비 50%, 지방비 50%).

치매안심병동이란 치매안심병원의 30~60병상 입원실 및 필수실 등 시설과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한 병원내 구역(ward)을 지칭하며 치매안심병원[112]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함. 2025년 기준 공립요양병원 총 76개소 중 6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기관 11개소(강릉, 충북도립, 여수, 영광, 진도, 함평, 고령, 청도, 의성 등 9개소 및 설치 중인 강남구립, 춘천시 등 2개소)임.

동 사업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필요한 치매안심병동의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2025년 예산의 실집행은 부진한데 계획으로는 2024년 공모 계속사업 2차연도분(5개소)에 대하여 25억 100만원, 개보수 및 장비보강(6개소)에 대하여 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실집행액은 1억 4,700만원(실집행률 4.5%)에 불과함.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2025년 예산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부처			지자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87	3,287	2,225	2,225	899	3,124	999	3,287	147	2,011	114	4.5

자료 : 보건복지부

112)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원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시설공사 사업 특성 상 장기간 소요로 인해 실집행률 부진이 불가피하며, 2025년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2025년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지자체 사업 포기현황 및 사유 >

(단위 : %)

지자체	병원명	예산액	사유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립요양병원	1,314백만원* *24년이월포함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변경에 따른 사업 포기

자료 : 보건복지부

<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운영 현황 >

(기준 : 2025. 12. 31. / 단위 : 개소)

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전체	치매안심병원		전체	치매안심병원
서울특별시	1	-	강원도	2	-
부산광역시	4	1	충청북도	6	1
대구광역시	2	-	충청남도	4	1
인천광역시	2	2	전라북도	7	1
광주광역시	1	1	전라남도	12	1
대전광역시	2	1	경상북도	15	4
울산광역시	1	1	경상남도	9	2
세종특별자치시	-	-	제주도	-	-
경기도	8	4	계	76	20

*공립요양병원 외에 사설요양병원으로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5개소임. 서울 서북병원(지방의료원), 충남 홍성/서산의료원(지방의료원), 전북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민간), 제주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의료원 설립)
자료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확충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지역 내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접근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10) 노인건강관리(2235-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계획액 73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73억 9,000만원 중 65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1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노인건강관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노인건강관리 사업	**7,345**	**7,345**	**45**	**7,390**	**6,579**	**-**	**811**
기본경비	15	15	-	15	13	-	2
노인실명예방 관리	2,062	2,062	-	2,062	2,062	-	-
전립선질환예 방관리	182	182	-	182	182	-	-
노인무릎관절 수술지원	4,086	4,086	-	4,086	4,086	-	-
요실금 치료지원	1,000	1,000	45	1,045	193	-	809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 필요 등

보건복지부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의 경우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과 현장수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검진을 실시하고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등 안질환에 대한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실명을 예방하고 노년기 시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재단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실시하고 수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백내장·녹내장·망막증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5년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개요 >

구 분	내용
사업내용	저소득 노인 등에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추진절차	(수행기관)한국실명예방재단 * 매년 공모로 선정
	(대상자) 보건소에 수술지원 신청→ (보건소) 재단에 신청서 송부→ (재단) 대상자 확정 통보→ (의료기관) 대상자 수술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
지원 세부내용 (인당 지원금액 포함)	백내장·녹내장, 망막증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항목 중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일부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개안수술비 지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개안수술비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연도 중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음. 지원 예산은 2023년 12억 9,800만원에서 2024년·2025년 15억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신청안(眼)수에는 못미치는 실정임.

< 연도별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예산 현황(2023～2025) >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1,298	1,519	1,519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액에 맞추어 2023년에는 7,020안에 대하여 지원되었는데 7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 규모가 8,327안으로 확대되었음에도 8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음. 2025년에는 8,250안으로 지원 규모가 다시 감소하면서 7월에 신청이 마감되어 최근 3년간 모두 하반기 이전에 신청 접수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량과 신청마감 시기(2023～2025) >

(단위: 안)

2023			2024			2025		
신청 안수	지원 안수	신청마감	신청 안수	지원 안수	신청마감	신청 안수	지원 안수	신청마감
7,687	7,020	7월	8,485	8,327	8월	8,530	8,250	7월

주1) 개안수술비 신청 및 지원 안구수 차이는 자격요건 부적합, 구비서류 미흡 등에 따른 것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산 한도내에서 모두 지원중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수요가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신청 마감 이후 발생하는 수술 수요는 당

해 연도에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 개안수술의 적기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량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 개안수술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신청 추이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의료비와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25년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었음.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용
사업내용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 지원
사업추진절차	•(보건복지부) 참여지역 선정 등 총괄 •(시·군·구)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등 •(의료기기 비치 기관) 의료기기 사용·관리 등 •(평가기관) 사업 평가 기준 마련, 평가 등
지원세부내용 (인당 지원금액 포함)	•(의료비)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 •(의료기기)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에 식약처 허가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의료기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소득·연령 무관)

자료: 보건복지부

□ 사업 시행 이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에 참여한 곳은 2024년 20개소, 2025년 35개소로 참여율은 약 8.8%와 약 15.5%에 그침.

< 요실금 치료지원 내역사업 예산 집행 현황 (2024～2025) >

(단위: 백만원, %, 개)

구 분	2024			2025		
	계획액 (백만원)	집행액 (%)	지원 지자체 (개)	계획액 (백만원)	집행액 (%)	지원 지자체 (개)
의료비 지원	975	238	19	1,000	193	35
의료기기 지원	975	272	19	-	-	-
합 계	1,950	510 (26.5)	20	1,000	193 (19.3)	35

* 의료비와 의료기기 함께 지원한 시군구는 1개로 봄
자료: 보건복지부

이처럼 지자체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동 사업은 국비 50%에 지자체 50%가 매칭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2025년 집행실적 또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3,800만원에서 1,900만원만 집행되어 1.9%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2025년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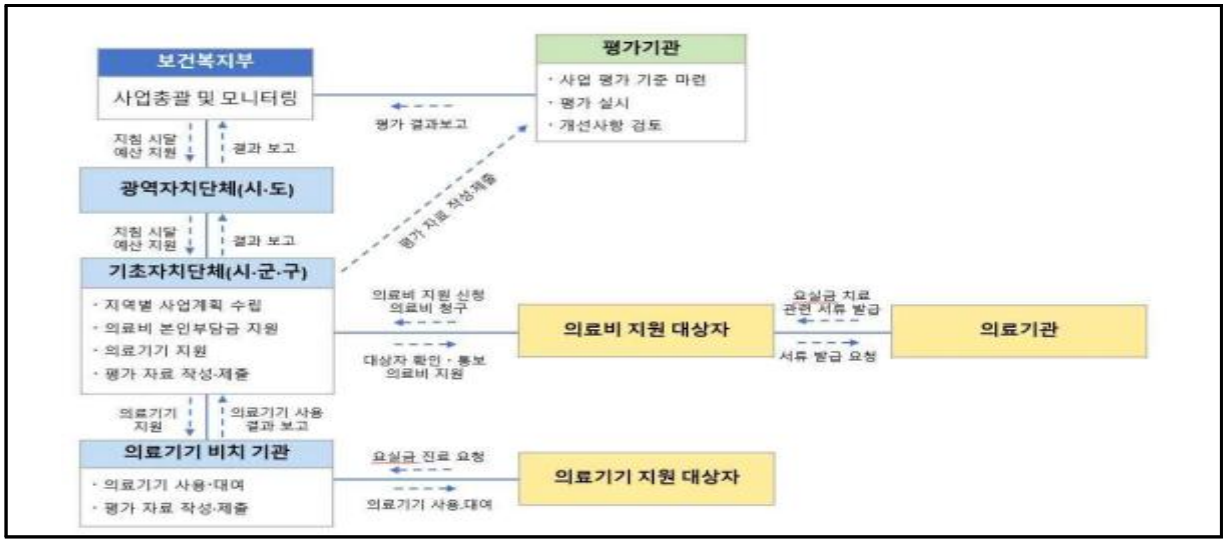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000	1,000	193	193	45	238	19	193	19	-	-	1.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수립, 참여지역 선정 및 예산 지원 등을 총괄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및 지역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하므로 사업 실적은 기초지자체의 참여 여부와 사업 추진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자체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과 현장 수요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7. 사회서비스정책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191억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3,192억 8,400만원이며, 이 중 3,163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을 이월하였고, 28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08,809	319,158	319,284	316,388	9	2,888
일반회계	55,700	55,700	55,826	53,658	9	2,1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3,109	263,458	263,458	262,730	-	728

주)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의사상자 지원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58억 2,600만원 중 536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55,700	101	-	55,826	53,658	9	2,160
의사상자 지원	2,526	-	-	2,526	1,118	-	1,408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40	-	-	40	38	-	2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655	-	-	7,655	7,655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6,800	-	-	6,800	6,798	-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2,815	100	-	2,915	2,904	-	11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1,477	-	-	11,477	11,477	-	-
사회복무제도지원	660	-	-	660	507	-	15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3,522	-	-	23,522	22,941	-	581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61	-	-	60	58	-	2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4	1	-	171	162	9	1

자료 : 보건복지부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634억 5,800만원 중 2,627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3,109**	**263,458**	**-**	**263,458**	**262,730**	**-**	**7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39,090	49,439	-	49,439	48,711	-	7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205,371	205,371	-	205,371	205,371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주)	7,164	7,164	-	7,164	7,164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종)	1,484	1,484	-	1,484	1,484	-	-

자료 : 보건복지부

3)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전용 사항은 없음.

4)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다음연도 이월은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900만원을 이월하였음.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9	
일반회계	소계	9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9	○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의사상자 지원 사업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인정 결정 건수에 따른 집행잔액 14억 800만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연구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5억 8,100만원 등 총 21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서 국비 추경 확보 이후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7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2,888	
일반회계	소계	2,160	
	의사상자 지원	1,408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 건에 대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인정 결정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어 집행잔액 발생
	의사상자제도 운영지원	2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2	연구비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11	연구비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사회복무제도지원	153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581	연구 낙찰차액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집행잔액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총액)	2	집행잔액
	사회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	집행잔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7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	728	국비 추경 확보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불용 발생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의사상자 지원(193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5억 2,600만원 중 1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의사상자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2,526	2,526	-	-	-	2,526	1,118	-	1,408
보상금	2,517	2,517	-	-	-	2,517	1,115	-	1,402
기념사업비	9	9	-	-	-	9	3	-	6

자료 : 보건복지부

나)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예산 편성 필요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 시 사업 성격과 수행 주체를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비목으로 편성·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113]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의 경우 대구 달성군의 주관 하에 추모비가 설치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총 6건의 추모비가 건립되었음.

< 최근 5년간 기념사업비 집행 내역 >

연도	성명	수행기관	사업비	사업수행경로
2020	故이○○	부산광역시	300만원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 주관하여 모교인 동래중학교에 추모비 건립
2022	故이○○	경북 성주군	300만원	성주군에서 주관하여 마을에 추모비 건립
	故김○○ 故현○○	간호사협회	600만원	간호사 2명 간호연수원에 부조상 건립(간호협회 주관)
2023	故김○○	강원 고성군	300만원	고성군에서 주관하여 사건발생지에 인근에 추모비 건립
2024	故전○○	경남 의령군	300만원	의령군에서 주관하여 용덕초등학교에 부조상 건립
2025	故박○○	대구 달성군	300만원	달성군에서 주관하여 추모비 설치

자료: 보건복지부

1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상자 관련 장소를 중심으로 동상, 비석, 추모의 벽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물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타보전금(310-04)'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기타보전금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을 의미하므로, 동상이나 비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물 설치 대가로 집행되는 예산 비목으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기타보전금 >

310-04 기타보전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 보건복지부는 기념비 등이 의사자 유족 등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보상의 형태로 간주하여 '기타보전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의 비목으로 편성할 경우에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의 취지 달성 및 예산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설치된 기념비는 기념사업을 수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그 설치 비용 또는 설치물을 의사자 유족 등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기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념비 설치 등 기념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등 적정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보조사업 관련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재정법」[114]은 예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출예산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편성된 예산 비목이 실제 사업 수행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을 통해 적정한 비목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11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실제 수행 주체와 지출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비목으로 편성·집행하고, 불가피하게 편성 목적과 집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8억원 중 6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6,800	6,800	-	-	-	6,800	6,798	-	2
대체인력 인건비	6,496	6,496	-	-	-	6,496	6,496	-	-
대체인력 운영지원	204	204	-	-	-	204	203	-	1
인건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100	100	-	-	-	100	99	-	1

자료 : 보건복지부

나) 대체인력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 집행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115]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목적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생활 균형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런데, 2025년 동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기준 및 제도개선을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비 1억원 중 7,950만원을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해 집행되었고, 대체인력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편성된 예산 2,000만원 중 약 600만원이 '처우개선위원회[116] 수당'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으로 집행되었음.

---

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1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 2025년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원)

지급일자	세목	지급내역	지급액
2025.7.11.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지급(처우개선위원회 안건 인쇄)	473,000
2025.8.22.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준비	376,200
2025.12.26.		일자리창출 및 처우개선 장관 표창장 제작	385,000
2025.12.26.		1차·2차 처우개선위원회 참석 수당 (11명)	2,400,000
2025.12.30.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2,000,000
2025.13.10.		처우개선위원회 준비	296,000
합계			5,930,200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연 2회 개최되는 등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운영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돌봄인력 전반의 역량 및 자격체계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서, 대체인력의 확보·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117]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적정

1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은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즉,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 및 위원회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은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처우개선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이 필요한 조직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맞게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연구 및 위원회 운영 등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은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인구구조 및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94억 3,900만원 중 48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39,090	49,439	-	-	-	49,439	48,711	-	728
생활서비스 투자사업	35,030	44,731	-	-	-	44,731	44,231	-	500
긴급돌봄 지원사업	3,500	4,148	-	-	-	4,148	3,923	-	225
스마트사회서비스 시범사업	500	500	-	-	-	500	498	-	2
사업관리비	60	60	-	-	-	60	59	-	-

자료 : 보건복지부

나)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수행 상황과 수요를 점검하고,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방비 매칭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①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취약지 지원사업)과 ②긴급돌봄 지원사업, ③스마트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돌봄필요 청년(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 중장년 등의 욕구에 대응하여 일상돌봄 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급기관을 육성하여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본예산 350억 3,000만원이 편성됨.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기존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대상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35억원이 편성됨.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ICT기술, 돌봄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연계해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본예산 5억원이 편성됨.

□ 본예산 편성 이후 2025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요 증가,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참여 등을 반영하여,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7억 100만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6억 4,800만원 등 총 103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2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

10,349백만원 i)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 서비스) - 9,701백만원 = [25년도 1～4월 바우처 실결제액(12,033백만원) + 25년도 5～12월 바우처 예상 결제액(27,656백만원*)] - 25년도 본예산(29,988백만원) * 8,300명 × 8개월 × 595천원(단가) × 70%(보조율) ii) 긴급돌봄 지원사업 - 648백만원 = 700명 × 1,320천원(단가) × 70%(보조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실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현액 447억 3,100만원 중 374억 8,300만원(83.8%)이 집행되고 72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1억 4,800만원 중 33억 3,400만원(80.4%)이 집행되고 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규모와 비교할 경우,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추가 편성액 97억 100만원 중 72억 4,800만원(74.7%)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긴급돌봄 지원사업 역시 추가 편성액 6억 4,800만원보다 많은 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과정에서는 지방비 매칭 가능성을 전제로 신청을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한 지방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및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의 경우 기존 사업 수행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 준비 기간 부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규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따른 증액의 경우에도 참여 의향을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나 재정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예산규모를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추가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후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관리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편성 시점의 불확실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액된 예산이 실제 서비스 확대와 연결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불용된 경우에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향이나 예상 수요만을 반영하기보다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실제 이용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상황과 서비스 이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매칭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통합돌봄지원관

가. 개요

1) 결산 총괄

□ 통합돌봄지원관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함)」시행(2026.3.27.)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기존 노인정책관에서 담당하던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이관받아 집행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1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18억 8,9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1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130	7,130	288	4,472	11,889	11,852	15	23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7,130	7,130	288	4,472	11,890	11,852	15	23

2) 예비비 현황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돌봄통합지원법」시행(2026.3.27.)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44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예비비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비비	예비비 편성 사유
계	**4,472**	
일반회계	**4,472**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4,47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3) 이월 및 불용 현황

가) 이월 현황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예산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500만원이 2026회계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15	
일반회계	15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15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나)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예산의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인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통합돌봄지원관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23	
일반회계	23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23	- 집행잔액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돌봄(건강관리·가사·식사 지원 등)과 진료(방문진료 등)를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은 71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8억 9,000만원이며, 이 중 118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7,130	7,130	288	4,472	11,890	11,852	15	23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6,480	6,480	-	-	6,480	6,470	-	10
· 전문 인력 양성·교육	300	300	-	-	300	297	-	3
· 통합지원정책연구	350	350	-	-	350	325	15	10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	288	4,472	4,760	4,760	-	-

나) 통합돌봄서비스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 3. 27.)에 앞서,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2개 지방자치단체[118]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음.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

○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 **(기간·규모)** 2023.7~2026.3, 12개 시군구
○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 **(지원현황)** 노인 14,655명에게 의료·돌봄서비스* 통합 연계·지원
*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방문 건강관리),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등 지원),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 등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118)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 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출연하여 집행하였음.

< 2025년 교육과정 운영 사업 >

○ **(사업목적)**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역량 강화 ○ **(사업기간)** 2025. 1. ~ 12. (12개월) ○ **(사업예산)** 2억 2,800만원 ○ **(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출연) ○ **(사업내용)** - 신규 시범사업 지자체 실행계획 컨설팅 -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동영상 제작·우수사례 공모전 등 지자체 자체교육 역량강화 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 동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집합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온라인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및 의료인력 등 관계기관 담당자까지 수강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되었음.

- 2025년도 집합교육의 경우 '시·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통합판정체계 적용 과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침 및 조사체계 과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규 지자체 컨설팅 과정 등 총 5개 과정이 운영되었고,

-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통합판정체계 적용 과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 교육 과정, ▲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설명회 과정 등 총 4개 과정이 운영되었음.

- ‘온라인교육’의 경우 ▲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정책이해 과정,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무이해하기 과정, ▲ 지역사회 노인돌봄 연계하기 과정 등 총 6개 과정이 운영되었음.

<2025년도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과정(교육시간)	운영 횟수	수강 인원
집합교육[1]	시·도 (1개 과정)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도 담당자 워크숍(7시간)	1	22
	시군구 (5개 과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통합판정체계 적용(7시간)	2	100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침 및 조사체계(2시간)	2	91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규 지자체 컨설팅(11시간)	7	333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및 추진체계 이해(4시간)	3	356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장강사 양성(12시간)	2	32
		계	**16**	**912**
	읍면동 (4개 과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통합판정체계 적용(7시간)	2	378
		의료돌봄 통합지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교육(15시간)	7	1,179
		의료돌봄 통합지원 읍면동 팀장교육(14시간)	3	108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설명회(2시간)	2	3,205
		계	**14**	**4,870**
	합 계		**31**	**5,804**
온라인교육	이러닝 (6과정)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정책이해(2시간)	상시	2,365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무이해하기(2시간)		2,310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필요도 평가도구 적용의 이해(2시간)		248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이해와 적용(1시간)		657
		지역사회 노인돌봄 연계하기(2시간)		1,099
		지역진단을 통한 우리동네 돌봄계획 수립하기(2시간)		113
		합 계		**6,792**

주1: 집합교육: 대면교육 + 실시간 라이브(Zoom)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2025년 교육 수강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교육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담당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전체 수강인원 12,596명(집합교육 5,804명, 온라인교육 6,792명)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121명(80.4%)으로 교육 참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교육과정 수강 현황>

(단위: 명)

구분			수강인원(비중)
집합교육	지자체 공무원		5,804(46.1%)
온라인교육	지자체 공무원		4,317(34.3%)
	관계기관 담당자	건보공단 직원	6(0.04%)
		유관기관 담당자[1)]	2,394(19.0%)
		병의원 등 의료인력	75(0.6%)
	계		6,792
합 계			12,596

주1: 유관기관 담당자: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등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러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및 장기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2025.12.)」를 수행한 바 있음.

□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연구」p. 659~660

제2절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5) 통합지원 관련 교육과정 부족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시군구 본청 전담부서 담당자들은 시범사업을 운

영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관계자들에게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지원의 개념이 단순 사업내용을 넘어서서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보건-복지 분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용이하므로 이와 관련한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내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민간기관의 담당자 간 협업이 중요하고,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식 제고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이 필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교육 참여기회를 확인한 결과,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간 1인당 교육과정 참여횟수에 큰 편차가 발생했고, 실제로 각각의 담당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내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적 교육 기회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돌봄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119]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9) 집합교육이 대면 방식과 실시간 라이브(ZOOM)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집합교육 대상에 관계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이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재택의료 참여기관 및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6년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었음.

□ 통합돌봄서비스는 병원 또는 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등이 입원이나 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재택의료는 의사(한의사 포함)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및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 재택의료 수가 기준 >

○ (건강보험 재정) 의사의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월 최대 140건)

구분	금액(원)	기준	본인 부담
방문진료료 I	(의원) 131,720 (병원) 140,600	·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	30%
방문진료료 II	(의원) 91,360 (병원) 97,080	· 추가 의료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미포함(별도행위료 있음)	
※ 간호사 동반 시 (의원)33,530원, (병원)29,390원 가산			

※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진료료 I 또는 II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 가능

○ (장기요양보험 재정) 다학제 팀 운영, 통합 사례관리를 고려한 별도 시범사업 수가

구분	금액(원)	기준	본인 부담
재택의료 기본료	140,000/월	-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기준 충족 시 지급 (수급자당 월 1회)	없음
지속 관리료	60,000/6개월	-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유도를 위해 6개월 이상 사례관리 시 지급 (수급자당 6개월 단위로 연2회 한도)	없음
추가 간호료	53,770/회	- 월 2회 초과 방문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 (수급자당 월 3회 한도) ※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다-3. 30분 이상 60분 미만) 적용	15%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하여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그러나 2026년 6월 말 기준 참여기관은 전국 463개에 불과하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88개 시·군·구는 지역 내 참여기관이 1개뿐인 상황임.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현황(2026. 6. 기준)>

(단위: 개)

구분	참여 기관 수
합 계	463
민간의원(한의원 제외)	253
한의원	117
지방의료원	30
보건소	21
보건의료원	12
병원	30

자료: 보건복지부

<시·군·구 별 재택의료 참여기관 수 현황(2026. 6. 기준)>

(단위: 곳)

구분	시·군·구 수
합 계	229
참여 기관이 0개인 시·군·구	-
참여 기관이 1개인 시·군·구	88
참여 기관이 2개인 시·군·구	81
참여 기관이 3개인 시·군·구	37
참여 기관이 4개인 시·군·구	16
참여 기관이 5개 이상인 시·군·구	7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2026년 5월말 기준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자는 14,632명[120]으로, 참여기관 수(463개)를 고려하면 기관당 평균 약 31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상자 증가 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을 것임.

120)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재택의료를 신청한 이후 한 달 이상 대기하거나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121]도 있는 상황임[122].

□ 통합돌봄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초기 단계의 사업으로, 향후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재택의료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123].**

□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124]는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이 2024년 3월 제정된 이후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기준 27개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25].

---

121)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조선일보, 2026.6.25.)

122)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신청 후 진료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파악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 이내 재택의료가 실시되며,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방문주기가 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임.

123)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인프라 부족 등 의료취약지 여건을 고려한 보건소 협업형* 및 병원급 모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여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보건소 협업형: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와 보건소의 간호사·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한팀으로 구성

124)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125)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본사업 초기에 지역 확대보다는 서비스 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참여 지자체의 확대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미시행 시·군·구 현황(2026.7.기준)>

시·군·구	비고
- 경기도 :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인제군 - 충청남도 : 계룡시 - 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무주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남구, 동구, 곡성군, 구례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 경상북도 :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영양군, 영덕군, 칠곡군, 울릉군	27곳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장애인정책국

가. 개요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포함 5조 4,401억 200만원으로, 이·전용 등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 4,632억 9,300만원이고, 예산현액 중 5조 4,539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90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예산액(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당초계획)	추경 (수정계획)				
계	5,414,911	5,440,102	5,463,293	5,453,975	296	9,021
일반회계	5,400,579	5,425,770	5,448,961	5,439,643	296	9,0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48	5,448	5,448	5,448	-	-
국민건강증진기금	8,884	8,884	8,884	8,884	-	-

주) 예산현액(계획현액) = 예산액(계획액) + 예산(계획) 확정 후 증감액(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장애수당(기초) 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포함 5조 4,257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5조 4,489억 6,100만원이며, 이 중 5조 4,396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0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계)	5,400,579	5,425,770	5,448,961	5,439,643	296	9,021
장애수당(기초)	156,715	156,715	154,336	154,336	-	-
장애수당(차상위 등)	71,939	71,939	74,318	74,318	-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1,812	51,812	51,812	51,805	-	7
장애인연금	884,658	884,658	907,060	906,963	-	97
장애인의료비 지원	35,868	35,868	35,868	35,868	-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5,079	5,079	5,073	4,973	-	100
장애인지원관리	850	850	908	906	-	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56	156	156	75	-	81
장애인활동지원	2,532,343	2,532,343	2,532,428	2,532,353	64	10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아동가족지원	232,654	232,654	232,654	232,654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89	2,589	2,589	2,589	-	-
발달장애인 지원	402,962	427,853	428,213	422,251	184	5,778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1,547	1,547	1,645	1,622	-	2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655	28,655	28,655	26,083	-	2,57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90,308	690,308	690,308	690,122	31	155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11,581	11,581	11,581	11,581	-	-
장애인단체	6,843	6,843	6,843	6,843	-	-
장애인일자리지원	234,510	234,510	234,510	234,510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9,565	9,565	9,604	9,458	-	146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626	4,926	5,060	5,005	15	40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10,442	10,442	10,448	10,440	-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370	370	370	370	-	-
장애인 편의증진	1,015	1,015	1,015	1,015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20,352	20,352	20,352	20,352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2,900	2,900	2,900	2,900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94	94	96	96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46	146	159	155	2	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4억 4,8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계)	5,448	5,448	5,448	5,448	-	-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5,448	5,448	5,448	5,448	-	-

4) 기금 결산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재활병원 건립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계획액과 계획현액은 88억 8,4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민건강증진기금(계)	8,884	8,884	8,884	8,884	-	-
재활병원건립	5,500	5,500	5,500	5,500	-	-
권역재활병원 지원	684	684	684	684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2,700	2,700	2,700	2,700	-	-

5) 이·전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사업에서 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224억원을 이용(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용 현황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용액	이용 사유
계		22,400	
일반회계	장애인연금	22,400	-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분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부족분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4,6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7,700만원을 전용(증)하였고,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에서 4,4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7,400만원을 전용(감)하였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77	△74	
일반회계	장애인연금	2		-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현황 조사 관련 국외 출장비 부족으로 장애인지원관리에서 1백만원, 활동지원에서 1백만원 전용
	장애인보조기기지원		△6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연구사업 수행인력 상용임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지원(1532-304)에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으로 자체 전용(6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전용액		전용 사유
계		77	△74	
	장애인지원관리	20	△44	-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자체 전용(20백만원),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분 전용(△43백만원), 장애인 소득보장·일자리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견학 출장여비 자체전용(△1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46	△4	-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일반연구비를 '고령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일반연구비로(260-01) 전용(43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외업무여비(220-02)를 장애인활동지원사 인식개선 등 홍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일반수용비(210-01)로 자체 전용(3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외업무여비(220-02)를 장애인활동지원사 인식개선 등 홍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일반수용비(210-01)로 자체 전용(△3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외업무여비(220-02)를 장애인연금(1531-305) 출장여비로 전용(△1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20	- 일반연구비(260-01)를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장애인지원관리(1532-307) 일반연구비로 자체 전용(20백만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6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연구사업 수행인력 상용임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지원(1532-304)에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542-307)으로 자체 전용(6백만원)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총액)	3		-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조정**

6) 이월 및 불용 현황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 8,4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총 2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이월액	이월 사유
계		296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64	- **장애인활동법 소송 위임 계약 관련 재판 절차 미진행 이월(14백만원), 연구기간 미도래(50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184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차년도 이월(일반연구비 184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1	- 연구용역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31백만원 이월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5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구용역비 15백만원 이월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	- 기본경비 이월(일반수용비 1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미교부를 이유로 불용액 32억 9,200만원이 발생하는 등 14개 세부사업에서 총 90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정책국 소관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	불용액	불용 사유
계		9,021	
일반회계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7	- 연구용역 집행잔액(7백만원)
	장애인연금	97	- (수용비) 집행잔액 39백만원 - (임차료) 집행잔액 3백만원 - (일반연구비)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5백만원
	장애인보조기기	100	-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상용임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100백만원)
	장애인지원관리	2	- 집행잔액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81	-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23백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금리 인하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8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0	- 집행잔액(10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5,778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의사인력기준 미충족 등 7개소 미지정으로 인한 불용(2,394백만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방비 부족, 국회 지적 등을 고려하여 미교부(3,292백만원) - (일반연구비, 수용비) 연구용역 및 홍보예산 입찰 낙찰차액 발생 (92백만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23	- 집행잔액(연구용역 낙찰차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572	- 공립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총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2,255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317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5	- (민간경상보조)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70백만원), IoT·AI 활용 돌봄사업(34백만원) 등 집행잔액(104백만원) - (일반연구비) 연구용역 집행잔액(50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46	- **기존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로 신규 보조사업자 공모 중(146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0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40백만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	- 사업비 집행잔액(8백만원)
	장애인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2	- 집행잔액 불용(공공요금및제세 1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1백만원)

나.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1) 장애수당(기초) 사업(1531-300),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15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수당(기초)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26]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장애수당(기초)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56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억 7,900만원을 감액 전용한 예산현액 1,543억 3,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수당(기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수당(기초) 사업	156,715	156,715	-	△2,379	154,336	154,336	-	-
장애수당(기초)	156,715	156,715	-	△2,379	154,336	154,336	-	-

12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외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중증·경증 등록 장애아동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장애수당(차상위 등)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71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억 7,900만원을 증액 전용한 예산현액 743억 1,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	**71,939**	**71,939**	**-**	**2,379**	**74,318**	**74,318**	**-**	**-**
장애수당(차상위 등)	71,939	71,939	-	2,379	74,318	74,318	-	-

나)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 부정수급 누적 미징수액 증가에 따른 환수 관리 강화 필요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의 부정수급 누적 미징수액이 증가하고 징수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징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관련, 보건복지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동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허위 수급, 무자격 수급 등이 확인되면, 「장애인복지법」 제51조[127]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환수함.

127)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2021년~2025년도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 부정수급 등 조사 현황 >

실시 시기	조사 내용
2022년 2월	2021년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3년 3월	2022년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3년 7월	2023년 상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4년 3월	2023년 하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4년 9월	2024년 상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5년 3월	2024년 하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5년 9월	2025년 상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2026년 3월	2025년 하반기 장애수당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현황 조사

주1): 2025년 상반기 조사부터는 행복e음 부정수급과 e나라도움시스템 부정수급 실적 정보를 연계함.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장애수당(기초)과 장애수당(차상위 등)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전체 사업예산에 비해 크지 않으나, 누적 미징수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환수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장애수당(기초)의 누적 미징수액은 2021년 162만원에서 2025년 1,111만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는 40%대로 전반적인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수당(기초) 부정수급 환수 현황 >

(단위: 건, 원)

연도	고지		징수			해당연도 미징수액	누적 미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2021년	8	3,180,000	5	1,560,000	49.1%	1,620,000	1,620,000
2022년	6	6,200,000	5	2,840,000	45.8%	3,360,000	4,980,000
2023년	14	4,060,000	11	3,690,000	90.9%	370,000	5,350,000
2024년	20	10,060,000	11	7,180,000	71.4%	2,880,000	8,230,000
2025년	13	5,400,000	8	2,520,000	46.7%	2,880,000	11,110,000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장애수당(차상위 등)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는 부정수급 고지 전액이 징수되었으나, 2023년부터 미징수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누적 미징수액은 2023년 18만원에서 2025년 342만 5,000원으로 약 19.0배 증가하였음.

- 징수율 역시 2021년과 2022년에는 100.0%였으나, 2023년 88.0%, 2024년 92.3%, 2025년 63.1%로 나타나 최근 환수 실적이 저조해지는 추세임.

< 장애수당(차상위 등) 부정수급 환수 현황 >

(단위: 건, 원)

연도	고지		징수			해당연도 미징수액	누적 미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2021년	1	440,000	1	440,000	100.0%	-	-
2022년	1	40,000	1	40,000	100.0%	-	-
2023년	5	1,500,000	4	1,320,000	88.0%	180,000	180,000
2024년	3	2,600,000	1	2,400,000	92.3%	200,000	380,000
2025년	11	8,260,000	6	5,215,000	63.1%	3,045,000	3,425,000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의 개별 부정수급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누적 징수액 역시 연간 예산과 비교할 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미징수액이 현재 추세처럼 증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장애인 관련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2025년 부정수급액 징수율이 96.0%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수당(기초)과 장애수당(차상위 등)의 2025년 징수율은 각각 46.7%, 63.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 부정수급 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환수 결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촉, 분할납부, 체납처분 등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연금 사업(1531-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846억 5,800만원이며, 이용 및 전용을 통해 224억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 9,070억 6,000만원 중 9,069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연금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연금 사업	884,658	884,658	-	22,402	907,060	906,963	-	97
장애인연금 급여	884,304	884,304	-	22,400	906,704	906,704	-	-
제도운영비	354	354	-	2	356	259	-	97

나) 장애인연금 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소요 추계 및 집행 점검 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연금 급여는 수급자 유형별 구성 변화에 따라 실제 소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2025년에 이러한 변동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증액 이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유형별 인원 변화 등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여 급여 소요 추계와 집행 점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그런데 2025년의 경우, 동 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 급여 소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24억원을 증액 이용하였음.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예산을 상호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에 비해 국회가 의결한 예산의 큰 단위를 변경하는 예외적인 집행 방식임.

-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는 장애인연금급여 등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 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28] 동 이용은 예산총칙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128) 기획재정부. (2025).「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액 충당을 위한 이용 추진 경과 >

추진 시점	주요 내용
2025년 7월~8월	-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연금 집행실적 및 연말 집행 전망 조사를 통해 예산 부족액 파악
2025년 9월	- 보건복지부 내 예산 부족액 충당 방안 협의 및 기획재정부와 이용 관련 사전 협의
2025년 9월 29일	-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액 224억원에 대한 이용 승인 요청
2025년 10월 2일	- 장애인연금 이용 224억원 승인(기획재정부)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다만, 동 이용이 예산총칙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최근 5년간 장애인연금 급여 사업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이용이 발생한 것은 2025년이 처음으로,

법정급여 사업인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급여 소요 추계와 실제 집행 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급여는 수급자 수, 수급률,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등에 따라 소요 재원이 결정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사업임.[129]

129)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2021년~2025년 내역사업 장애인연금 급여 예산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예산	829,084	832,631	878,663	893,157	884,658
예산현액	828,704	832,251	878,283	892,627	884,304
집행금액	821,113	823,741	877,063	892,627	906,704
불용액	-	-	-	-	-
예산조정 내용	△7,591 (내역변경)	△8,510 (내역변경)	△1,220 (내역변경)	-	22,400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기는 어려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7만 1,413명에서 2025년 34만 7,898명으로 감소하였고, 수급률도 2021년 71.6%에서 2025년 70.1%로 대체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급자 수	371,413명	362,127명	355,094명	351,051명	347,898명
수급률	71.6%	70.3%	70.0%	70.3%	70.1%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이용 발생 원인에 대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급자 유형별 인원 분포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인원 분포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정해지는데,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됨[130]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부가급여 지급단가가 높은 유형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부가급여 소요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임.[131]

□ 장애인연금 급여는 전체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정급여 사업이지만,

수급자 유형별 인원 분포와 지급단가에 따라 실제 소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수급자 총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더라도 유형별 구성 변화에 따른 소요 변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급여 부족분을 이용·전용 등 사후적인 예산조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국고 지급액은 월평균 768억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현행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예산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전망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132]

130) 보건복지부. (2024. 7. 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131)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년 12월 수급자 기준 집행 내역에 따르면, 부가급여액은 당초 편성액 2,945억 1,100만원에서 3,147억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13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인 2025년 4~5월과 정부안 확정 시점인 같은 해 8월에는 수급자 유형별 인원 분포 변화와 이에 따른 예산 부족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2025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소요 증가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급여와 관련하여 기준중위소득 인상, 수급자 유형별 인원 변화 등 급여 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월별 집행액과 수급자 유형별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규모 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급여 소요 추계와 집행 점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연금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장애인연금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연구과제 간 중복 여부와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미흡하여 5,500만원이 불용되어 필요한 연구에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반연구비 집행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도운영비'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외 여비, 일반연구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임.

□ 그런데 2025년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 예산 1억 5,000만원 중 5,500만원(37%)이 불용되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초 「주요 선진국 장애인 현금급여제도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 7월말 계약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의 과업 내용에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이 포함되어 별도로 연구 용역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두 연구 과제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두 연구를 개별 연구 주제로 계획하였으나,

- 같은 해 5월 「주요 선진국 장애인 현금급여제도 사례 연구」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의 범위에 편입하기로 하였음.

< 연구과제별 추진 경과 >

구분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	주요 선진국 장애인 현금급여제도 사례 연구
연구주제 계획	- 2025년 3월	- 2025년 3월
연구계획 수립·조정	- 2025년 5월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5월 동 연구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에 편입
계약 및 과업 확정	- 2025년 7월	- 연구용역 미추진
보고 일정	- 2025년 8월 착수보고 - 10월 중간보고 - 12월 최종보고	- 해당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는 장애인연금의 적정성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주요 선진국 장애인 현금급여제도 사례 연구」는 해외 제도 사례를 별도로 심층 분석하려는 과제로,

두 연구는 그 목적과 분석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연구계획 수립·조정 과정에서 일부 과업이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개별 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2025년 5월 연구 내용을 편입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중복되는 과업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활용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어야 함.

□ 즉, 해외 사례 분석을 기존 연구의 일부 과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면, 이에 따라 발생한 잔여 연구비 5,500만원을 전액 불용하기보다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 주제를 재설계하거나 장애인연금 사업 일반연구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한 추가적인 연구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이는 예산 편성 및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연구의 필요성, 과업 범위와 기존·예정 연구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례로,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025년 5월 연구 내용 편입 결정 이후에도 별도 연구비 5,500만원의 활용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채 전액 불용한 것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과 수급자 특성 변화, 부가급여 적정성 등 정책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재원을 필요한 연구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과제별 필요성, 기존·예정 연구와의 중복 여부, 과업 범위 및 연구결과 활용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과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또는 계약 단계에서 관련 예산의 활용 계획을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연구비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532-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는 한편,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장애인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0억 7,900만원이며, 감액 전용 6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50억 7,300만원 중 49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5,079	5,079	-	△6	5,073	4,973		100
보조기기교부	1,847	1,847	-	-	1,847	1,847	-	-
중앙보조기기센터	1,087	1,087	-	△6	1,081	981	-	100
지역보조기기센터	2,145	2,145	-	-	2,145	2,145	-	-

나)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체계 개선 필요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예정자 사전 파악 및 휴직 개시 전 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대체인력 채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원’은 중앙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보조기기 이용 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33]

□ 그런데 2025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상용임금 등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편성예산 5억 5,600만원 중 600만원은 감액 전용되었고, 6,8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고용부담금도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13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2025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상용임금 등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상용임금	556	556	-	△6	550	482	-	68
고용부담금	109	109	-	-	109	92	-	17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조기기센터 소속 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절차가 지연되면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에는 총 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대체근로자는 3명만 채용되었고, 이 중 2명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뒤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및 대체근로자 현황 >

연도	육아 휴직자	주요 담당업무	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일자	대체인력 근무기간
2025년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모니터링, 백서 발간	'25.1.1.~ '25.12.31.	'24.12.16.	'24.12.16.~ '25.8.11.
	연구원 (팀장) 1명	- 센터 사업 총괄, 연간 사업 계획 및 사업 수행 로드맵 수립	'25.3.1.~ '25.9.30.	-	-

연도	육아 휴직자	주요 담당업무	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일자	대체인력 근무기간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정책 홍보·성과 발굴, 박람회 홍보부스 및 맞춤 제작 서비스 공유 컨퍼런스 운영	'25.9.1.~ '26.8.31.	'25.10.1.	'25.10.1.~ '26.8.31.
	연구원 1명	-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지원·성과관리, 지역특성화 및 기능보강 사업 지원	'25.10.8.~ '26.12.7.	'25.12.1.	'25.12.1.~ '26.11.30.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러한 대체근로자 채용 지연은 2025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및 대체근로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 개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채용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됨.

- 2021년에는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대체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아, 인건비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대체근로자가 채용되어 인건비 8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24년에는 육아휴직자가 1명 발생하였으나 대체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후 약 4개월이 지난 뒤 채용되어 인건비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134]

134) 2023년과 2024년의 해당 육아휴직자는 동일인으로, 기존 대체근로자의 근무 종료(2024.8.11.) 후 약 4개월간 대체인력 공백이 발생함.

< 2021년~2024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및 대체근로자 현황 >

연도	육아 휴직자	주요 담당업무	휴직기간	대체인력 채용일자	대체인력 근무기간	비고
2021년	연구원 (팀장) 1명	- 센터 사업 총괄,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 로드맵 수립, 정책·서비스 연구	'21.1.1.~ '21.1.31.	-	-	인건비 200만원 불용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모니터링, 백서 발간	'20.12.6.~ '21.2.5.	-	-	-
2023년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정책지원·연구, 이용실태 모니터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지원	'23.2.1.~ '23.3.10.	-	-	인건비 800만원 불용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모니터링, 백서 발간	'23.7.14~ '24.5.13.	'23.6.1.	'23.6.1.~ '24.8.11.	-
2024년	연구원 1명	-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모니터링, 백서 발간	'24.5.14.~ '24.12.31.	'24.12.16.	'24.12.16.~ '25.8.11.	인건비 1,900만원 불용

주1): 2022년은 육아휴직자 없음.
주2): 2023년 휴직자 1인('23.7.14~'24.5.13.)은 2024년 휴직자와 동일인임.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와 같은 대체근로자 채용 지연은 2025년 기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인력이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건비 불용에 그치지 않고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는 모두 연구원으로, 이 중 2021년과 2025년에는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사업 수행 로드맵 수립 등을 총괄하는 팀장도 포함되어 있었음.

- 그 밖의 육아휴직자도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모니터링, 백서 발간, 보조기기 정책지원·홍보,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관리 등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이처럼 육아휴직자가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체근로자 채용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지역센터 운영지원 등 주요 업무의 연속성과 적기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전에 신청·승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육아휴직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휴직 개시 전 대체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인건비 불용과 업무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육아휴직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휴직 개시 전에 대체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 계획을 정비하는 등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과 인건비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체인력 채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지원관리 사업(1532-30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지원관리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및 장애인 관련 정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8,200만원과 감액 전용된 2,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9억 900만원 중 9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지원관리 사업	**850**	**850**	**82**	**△23**	**909**	**907**		**2**
장애인법률구조	492	492	-	-	492	492		-
연구개발비	203	203	82	△23	262	261		1
기타운영비	155	155	-	-	155	154		1

나) 반복적인 예산조정에 의존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 개선 필요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반복적인 예산조정에 의존하여 세부사업 간 연구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연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연구수요는 해당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비'는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

□ 2025년 동 사업의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2회의 전용이 있었음.

- 7월에는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모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으로부터 일반연구비 2,000만원을 증액 전용 받았고,

- 9월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고령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안 관련 연구용역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일반연구비 4,300만원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감액 전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연구개발비 전용 현황 >

구분	날짜	감액 사업명	목-세목 코드	금액	증액 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6.	발달장애인지원 (1535-309)	260-01	2,0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1
전용	2025.9.9.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1	4,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532-304)	260-01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이 장애인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더라도, 동일 회계연도 중 다른 세부사업에서 연구비를 전용 받고,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연구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연초에 확정된 연구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집행되기보다 세부사업별 연구비 부족분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으며,

연구과제의 소관 사업, 추진 시기,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사전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연초 자체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배분하고 일부는 추가 현안에 대비한 예비 재원으로 두었으나, 회계연도 중 예상치 못한 추가 연구수요가 발생하여 이 같은 내용의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 연구과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참고로,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도 당초 정책연구비로 편성되지 않은 「장애인 권리보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4,500만원을 전용받고,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4,5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세목조정하여 총 9,000만원의 연구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음.[135)]

135) 보건복지위원회. (2024).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부 소관(1차관 소관) 검토보고(Ⅰ).

- 2023년 사례와 2025년 사례는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전용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연구수요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중 타 세부사업 전용 또는 세목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2023회계연도 장애인지원관리 연구개발비 전용 및 세목조정 현황 >

구분	날짜	감액 사업명	목-세목 코드	금액	증액 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3.11.22.	장애인연금 (1531-305)	210-01	3,0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전용	'23.11.2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36-300)	260-01	1,5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세목조정	'23.11.15.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1	4,5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 (1532-307)**	260-02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의 연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연구수요를 해당 사업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개발비가 다른 세부사업의 연구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1535-3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급되는 가산급여, 사업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위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조 5,32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4,300만원과 증액 전용 4,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조 5,324억 2,900만원[136] 중 2조 5,323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532,343	2,532,343	43	42	2,532,429	2,532,353	64	10
활동지원급여	2,457,920	2,457,920	-	△15,010	2,442,910	2,442,910		
가산급여	49,446	49,446	-	15,010	64,456	64,456		
위탁사업비	24,519	24,519	-	-	24,519	24,519		
운영비	458	458	43	42	544	468	64	10

136) 금액은 원 단위 자료를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작성한 것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예산현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활동지원기관 급여비용의 임금 사용 관리 강화 및 75% 권고 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

활동지원기관별 임금 사용 비율과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 기준 준수 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임금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행 임금 사용 권고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활동지원급여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활동지원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신체기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구분된 대상자에게,

월 최소 약 60시간(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798만원)까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2025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급여량(단위: 만원)</th></tr>
<tr><td rowspan="6">활동지원급여</td><td rowspan="5">급여</td><td>1구간</td><td>2구간</td><td>3구간</td><td>4구간</td><td>5구간</td></tr>
<tr><td>798
(약 480시간)</td><td>748.1
(약 450시간)</td><td>698.3
(약 420시간)</td><td>648.5
(약 390시간)</td><td>598.6
(약 360시간)</td></tr>
<tr><td>6구간</td><td>7구간</td><td>8구간</td><td>9구간</td><td>10구간</td></tr>
<tr><td>548.8
(약 330시간)</td><td>498.6
(약 300시간)</td><td>448.9
(약 270시간)</td><td>399.1
(약 240시간)</td><td>349.2
(약 210시간)</td></tr>
<tr><td>11구간</td><td>12구간</td><td>13구간</td><td>14구간</td><td>15구간</td></tr>
<tr><td>299.4
(약 180시간)</td><td>249.5
(약 150시간)</td><td>199.7
(약 120시간)</td><td>149.9
(약 90시간)</td><td>100
(약 60시간)</td></tr>
<tr><td>본인부담</td><td colspan="5">-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0,000원 ~ 209,200원)</td></tr>
</table>

자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재구성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며,

활동지원기관에서는 급여를 제공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137]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포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138]

□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권고 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활동지원기관별 급여비용 중 임금 사용 비율과 75% 이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활동지원기관은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의 현장점검 및 장애인활동지원 기관평가를 통해 재무·회계관리와 인건비 사용 권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임.

---

1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8) **「202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국민연금공단의 현장점검 등은 개별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활동지원기관별 임금 사용 비율과 권고 기준 준수 여부를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집계·분석하는 관리 체계로 보기는 어려움.

-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는 활동지원급여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고 활동지원인력의 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기관별 임금 사용 비율과 권고 기준 준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년 인상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단가[139]가 활동지원사의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등 처우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관별 인건비 사용 편차 또는 권고 기준 이하의 인건비 지급 가능성 등을 중앙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더해 현행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 관리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법정인건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75% 기준은 인건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법정인건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139) 활동지원급여 단가는 2021년 14,020원 → 2022년 14,805원 → 2023년 15,570원 → 2024년 16,150원 → 2025년 16,620원으로 매년 인상되었음.

- 참고로, 서울시복지재단이 2022년 서울시 소재 활동지원기관 151개소의 수정예산결산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법정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반영한 활동지원사의 법정인건비는 2022년 활동지원급여의 92.43% 수준으로 나타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반영하더라도 평균 91.38% 수준으로 나타났음.[140]

□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은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법정인건비 수준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별 급여비용 중 임금 사용 비율과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75% 기준이 활동지원사의 법정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법정인건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등 활동지원급여의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40) 서울시복지재단. (2023).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23-43.

다)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 해소 및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개선 필요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하여 예산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난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임.

□ 최근 5년간 가산급여 사업의 미지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20만원, 2022년 20만원 수준이던 미지급금이 2023년에는 5억 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4년에도 3,100만원의 미지급금이 추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미지급금은 5억 5,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누적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산급여 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등록·지급 승인 등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지연, 수급자 변동, 가산급여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초과수요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 다음 연도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1년~2025년 가산급여 미지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미지급금	2.2	0.2	522	31	-
누적 미지급금	2.2	2.4	524	555	555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지연, 가산급여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초과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예외적 변수라기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구조적 재정수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산급여의 누적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가산급여 수요와 집행 규모에 대한 사전 추계가 실제 집행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가산급여는 서비스 제공 난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가산급여 미지급금이 장기화될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최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확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와 같이 다음 연도 예산을 활용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부 정산에 그치는 것으로, 누적 미지급금의 해소와 반복 발생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2019년 예산에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592억 1,5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바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재점검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별도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수요 추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아동가족지원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32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232,654	232,654	-	-	232,654	232,654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64,551	64,551	-	-	64,551	64,551	-	-
발달재활서비스	167,388	167,388	-	-	167,388	167,388	-	-
언어발달지원	651	651	-	-	651	651	-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운영비	64	64	-	-	64	64	-	-

나)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 원인 점검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발달재활서비스는 매년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공급 여건과 예산 지원 규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수요·공급 전반을 점검하여 대기자 해소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감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임.

- 다만,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액, 실집행액 및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예산과 이용자 규모는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예산편성액은 2021년 942억 400만원에서 2025년 1,672억 3,200만원으로 730억 2,800만원 증가하여 77.5%의 증가율을 보였고,

- 실집행액도 같은 기간 845억 1,000만원에서 1,452억 8,800만원으로 607억 7,800만원 증가하여 71.9% 증가하였음.

- 이용자 수 역시 2021년 8만 4,411명에서 2025년 11만 7,182명으로 3만 2,771명 증가하여 38.8%의 증가율을 보였음.

< 2021년~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편성액	94,204	99,857	127,032	138,288	167,232
실집행액	84,510	95,836	122,585	123,888	145,288
이용자	84,411명	91,044명	97,469명	106,427명	117,182명

주1): 예산편성액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금액으로 일부 예산액(자격관리)은 제외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그러나 같은 기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속도에 비해 공급 기반 확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제공인력은 2021년 1만 3,305명에서 2025년 1만 4,183명으로 878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율은 6.6%에 불과하였음.

- 제공기관 역시 2021년 2,327개소에서 2025년 2,843개소로 516개소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이 22.2%에 그쳐 같은 기간 이용자 증가율 38.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제공인력	13,305명	13,248명	13,458명	13,548명	14,183명
제공기관	2,327개소	2,543개소	2,615개소	2,668개소	2,843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이용자 수 증가에 비해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843개 제공기관에서 11만 7,182명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25년 12월 말 대기자는 4,392명이었으나, 2026년 5월 말 대기자는 5,965명으로, 2025년 말보다 1,573명(35.8%) 증가하였음.

- 2025년 지역별 대기자는 경기도 792명, 인천광역시 632명, 경상북도 434명, 서울특별시 409명, 대구광역시 398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대구·부산·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일정 규모의 대기자가 발생하였음.

- 대기기간별로 살펴보면, 2025년에는 3개월 미만 대기자가 2,618명(59.6%)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6년에는 3개월 미만 대기자가 2,934명(49.2%), 3개월 이상 대기자가 3,031명(50.8%)으로 3개월 이상 대기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는 2024년 1,678명에서 2025년 67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6년 5월 말 1,15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2025년 지역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141] 및 대기자 등 현황 >

시·도	제공기관 수 (개소)	이용자 수 (명)	대기자 수 (명)
전국	2,843	117,182	4,392
서울	618	14,769	409
부산	245	8,439	378
대구	242	6,775	398
인천	307	6,514	632
광주	130	5,037	22
대전	121	3,823	53
울산	100	2,973	145
세종	76	971	214
경기	1,092	29,692	792
강원	168	4,471	21
충북	144	3,143	109
충남	240	4,025	150
전북	174	5,200	173
전남	199	5,820	109
경북	328	6,885	434
경남	314	6,481	353
제주	73	3,274	-

주1): 제공기관 수 및 이용자 수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주2): 시·도별 수치는 해당 지역에서 결제한 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각각 집계한 값으로 시·도 간 중복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전국 합계만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14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자 전국 합계에는 중복 제거를 적용하였음에도 시·도별 수치는 중복 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이용자 현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산출·제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기간 현황 >

(단위: 명)

연도	합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 1년미만		1년 이상	
		a	b	a	b	a	b	a	b
2024년	5,451	322	2,489	136	826	150	993	39	496
2025년	4,392	345	2,273	139	956	65	466	20	128
2026년	5,965	319	2,615	198	1,681	111	889	25	127

주1): 2026년 5월 말 기준이며, a는 등록장애인, b는 미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주2): 경기도 남양주시 및 김포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관련 연구에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많은 지역에서도 대기자가 많거나 대기기간이 길고, 대기기간이 긴 지역에서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가 오히려 적게 나타난 점을 토대로,

제공기관·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간 매칭, 정보 공유 체계 및 제공인력 활용 실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142)

□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의 주된 발생 원인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부족보다는 수요 대비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매년 실제 이용자 수가 예산편성 기준 인원을 초과하고 있고,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2023년과 2025년에 대기자 수가 감소한 점을 근거로 실제 이용자 수와 대기자 수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42) 김동일 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3권 제2호, 2022, pp. 177~193.

- 다만, 일부 지역은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바, 지역별 공급 여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인지·감각·운동 등 발달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신청자가 추가로 유입되는 특성상 실제 서비스 공급 역량과 예산상 지원 규모가 이용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적시에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가 누적될 수 있음.

-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매칭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서비스 공급 여력이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기자로 남을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율에 비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증가율이 낮고, 지역별 공급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요와 공급 규모, 제공인력 활용 실태 및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매칭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예산 지원 규모가 대기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여 수요·공급 전반을 포괄하는 대기자 해소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발달장애인지원 사업(1535-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발달장애인지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포함 4,278억 5,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8,000만원과 감액 전용된 2,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4,282억 1,300만원 중 4,222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7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402,962	427,853	380	△20	428,213	422,251	184	5,778
공공후견지원	3,527	3,527	-	-	3,527	3,527	-	-
부모가족지원	4,064	4,064	-	-	4,064	4,064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9,235	9,620	-	59	9,620	9,620	-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7,125	7,125	-	-	7,125	4,731	-	2,394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222,245	243,852	-	-	243,852	243,852	-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63,058	63,058	-	-	63,058	63,058	-	-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446	446	-	-	446	446	-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460	460	-	-	460	460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7,653	7,653	-	-	7,653	7,653	-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25,051	25,394	-	-	25,394	24,042	-	1,35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7,482	17,782	-	-	17,782	17,341	-	44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41,671	43,986	-	△59	43,927	42,428	-	1,499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400	400	-	-	400	400	-	-
사업운영비	545	545		△20	905	629	184	92

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미지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정기관 부족으로 불용이 반복되고 일부 시·도의 미지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정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부담과 현행 개소당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를 지원하고,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2025년 동 사업은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0개소 운영을 목표로 7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정기관 부족으로 23억 9,400만원(33.6%)이 불용되었음.

- 2024년에도 16개소 운영을 목표로 5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3억 6,800만원(23.8%)이 불용된 바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운영기관 공모 결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당초 목표한 운영기관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2024년 및 2025년의 공모 및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3회 공모에도 선정기관이 없었고, 2025년에는 4회 공모에도 1개 기관만 지정되는 데 그쳤음.

< 2024년~2025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공모 및 지정 현황 >

구 분	운영 목표	공모 횟수	공모 결과	불용액
2024년	16개소	3회	신규 지정 없음	13억 6,800만원
2025년	20개소	4회	1개 기관 지정	23억 9,4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개소, 강원 2개소 등 총 13개소만 지정·운영 중이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는 미지정 상태임.

< 2025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현황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3	3	1	-	1	-	1	-	-	1	2	1	-	1	-	-	1	1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공모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이 필수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부담에 비해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 발달장애 치료 인력 5명 이상, 행동치료 전문가 및 지원 전문가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독립된 치료실 3개 이상과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지정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시설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143]

- 반면, 최근 5년간 개소당 지원 예산액은 2021년 3억 4,000만원에서 2022년 이후 3억 4,2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2021년~2025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액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당 지원 예산액	3억 4,000만원	3억 4,200만원	3억 4,200만원	3억 4,200만원	3억 4,200만원

주1): 2021년 신규지정 2개소의 경우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함.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시·도에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

1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하되,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유 여부
2.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미지정 해소는 반복적인 불용 방지 차원을 넘어 법정 지정 체계 이행과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임.[144]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지정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부담과 현행 개소당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 100% 사업임을 고려하여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대기자 해소를 위한 지역별 공급 기반 확충 필요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 지역에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제공기관 수용 부담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과 기관별 수용 여력을 분석하고 대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 위주로 제공기관 확충과 운영 여건 개선 등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각각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여, 보호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기본형 월 132시간 또는 확장형 월 176시간[145]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에서 음악·미술활동, 박람회·전시회 관람, 취미·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146]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시간에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에서 체육·미술·음악 등 취미·여가활동을 선택하고 또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자도 함께

145) 2025년 기준 제공시간임.
146) 2025년 기준 제공시간임.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 확대가 실제 수요 증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4,974명에서 2025년 1만 3,5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기자도 1,392명에서 2,976명으로 증가하였음.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4,005명에서 2025년 1만 40명으로 증가하였고, 대기자 역시 같은 기간 2,236명에서 5,529명으로 증가하였음.

< 2021년~2025년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현황 >

구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편성 인원 (명)	이용자 (명)	대기자 (명)	편성 인원 (명)	이용자 (명)	대기자 (명)
2021년	9,000	4,974	1,392	10,000	4,005	2,236
2022년	9,000	6,974	2,237	10,000	5,511	3,422
2023년	10,000	9,513	3,163	10,000	7,305	4,656
2024년	11,000	11,580	2,762	10,000	9,192	4,304
2025년	14,800	13,519	2,976	11,000	10,040	5,529

주1): 2025년 주간활동서비스의 편성인원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된 2,800명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발생 양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는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 798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기자 1,744명으로 두 서비스 모두 대기자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도 대기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소당 이용자 수는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17.0명, 방과후활동서비스 평균 19.0명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20명 이상, 방과후활동서비스 25명 이상으로 나타남.

- 또한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는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1.8명, 방과후활동서비스 평균 2.7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세종 3.5명, 충남 3.1명, 서울 3.1명 등 일부 지역에서 3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

시·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개소)	이용자(명)	개소당 이용자(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명)	대기자(명)	제공기관(개소)	이용자(명)	개소당 이용자(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명)	대기자(명)
합계(평균)	794	13,519	17.0	1.8	2,976	528	10,040	19.0	2.7	5,529
서울특별시	69	1,092	15.8	1.6	262	56	1,431	25.6	3.1	746
부산광역시	86	1,052	12.2	1.6	214	41	663	16.2	2.6	413
대구광역시	43	751	17.5	1.6	182	22	622	28.3	2.8	355
인천광역시	30	675	22.5	1.9	243	31	651	21.0	2.3	469
대전광역시	31	393	12.7	1.7	75	20	325	16.3	2.9	186
광주광역시	22	404	18.4	1.6	42	15	288	19.2	2.6	91

시·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개소)	이용자(명)	개소당 이용자(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명)	대기자(명)	제공기관(개소)	이용자(명)	개소당 이용자(명)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명)	대기자(명)
울산광역시	25	406	16.2	1.7	105	17	241	14.2	2.1	126
경기도	160	2,839	17.7	1.7	798	145	3,325	22.9	2.8	1,744
강원특별자치도	38	719	18.9	2.1	173	16	301	18.8	2.6	173
충청북도	23	562	24.4	2.0	119	15	262	17.5	2.2	120
충청남도	33	649	19.7	2.0	152	14	298	21.3	3.1	159
경상북도	46	708	15.4	1.9	130	22	271	12.3	2.5	127
경상남도	102	1,671	16.4	1.8	206	56	597	10.7	2.1	226
전라남도	32	557	17.4	1.9	93	17	148	8.7	2.1	91
전북특별자치도	41	810	19.8	1.9	75	26	323	12.4	2.5	195
제주특별자치도	9	139	15.4	1.9	91	10	195	19.5	2.9	195
세종특별자치시	4	92	23.0	2.0	16	5	99	19.8	3.5	113

주1): 2025년 12월 기준임.
주2): 대기기간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현황 파악이 어려움.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자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등 공급 기반의 확충이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수급 불균형의 문제로 볼 수 있음.

다만, 지역별로 대기자 규모와 개소당 및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급 기반 확충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되, 지역별 수요 규모와 제공기관·제공인력의 수용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희망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가능 규모가 제한되어 대기가 발생하거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대상자에 비해 지원 예산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발생 원인을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 제공기관 분포, 기관별 수용여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기 수요가 집중되거나 제공기관별 수용 부담이 큰 지역을 우선하여 제공기관 확충과 운영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기자 해소를 위한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추경 편성에도 지속되는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단가 및 수당 인상을 하였음에도 이용자 확대와 실집행률 제고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업 준비기간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적인 집행 개선과 중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147]에 근거하여, 도전행동[148]으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간 및 야간 주거지원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주간 개별 1:1 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는 주간 1:1 돌봄서비스 제공
주간 그룹형 1:1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주간 그룹형 돌봄서비스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1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8)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나는 행동 중 그 강도·빈도·지속기간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현저히 제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해·타해·기물파손 등이 이에 해당함(김미옥, & 김고은.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56), 59 - 94.).

□ 그런데 이상 세 가지 유형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2024년 실집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46.9%, 주간 개별 1:1 지원 45.0%, 주간 그룹형 1:1 지원 13.1%로, 세 가지 유형 모두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음.

- 특히, 2025년에는 2024년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단가와 종사자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 23억 1,500만원 등 총 2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실집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57.1%, 주간 개별 1:1 지원 68.2%, 주간 그룹형 1:1 지원 48.6%로, 여전히 교부액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2024년~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자					
		예산액(추경)	교부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4시간 개별 1:1 지원	2024년	17,563	17,563	-	-	17,563	8,238	-	9,325	46.9%
	2025년	25,394	24,042	1,352	-	24,042	13,737	-	10,305	57.1%
주간 개별 1:1 지원	2024년	14,192	14,192	-	-	14,192	6,386	-	7,806	45%
	2025년	17,782	17,341	441	-	17,341	11,827	-	5,514	68.2%
주간 그룹형 1:1 지원	2024년	35,552	35,552	-	-	35,552	4,671	-	30,881	13.1%
	2025년	43,986	42,428	1,558	-	42,428	20,622	-	21,806	48.6%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높은 돌봄 난이도로 종사자와 제공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초기 실집행이 저조하였으며,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교육과 이용자의 서비스 적응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자 1명당 1~3명의 제공인력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종사자 증가가 이용자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로 2025년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종사자 수는 8월 1,333명에서 12월 1,609명으로 276명 증가하여 전문수당 및 지원단가 인상이 종사자 확보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용자 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첫 집계 시점인 2025년 9월 915명에서 같은 해 12월 998명으로 83명 증가하는 데 그쳐, 종사자 수 증가가 단기간에 이용자 확대와 실집행률 제고로 충분히 이어지지는 못하였음.[149)]

<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추경)	9월	10월	11월	12월
종사자 수 (명)	921	982	1,033	1,099	1,120	1,165	1,191	**1,333**	1,409	1,476	1,530	**1,609**
이용자 수(명)	-	-	633	-	-	801	-	-	**915**	-	-	**998**

주1): 이용자 수는 각 분기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과 같이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기간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적인 집행 개선과 중장기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149) 다만, 종사자 교육과 실제 이용자와의 매칭이 이루어진 2026년에는 실집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2026.6. 기준 실집행률: 24시간형 30%, 개별형 35.3%, 그룹형 41.6%).

8)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1535-31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격 도입에 앞서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9,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6억 4,5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1,547	1,547	98	-	1,645	1,622	-	23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222	222	98	-	320	297	-	23
시범사업 시스템운영	211	211	-	-	211	211	-	-
급여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1,097	1,097	-	-	1,097	1,097	-	-

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은 목표 참여자 수를 초과하였음에도 개인예산으로 전환·활용되는 급여 규모와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활용 가능 서비스 및 바우처 전환·연계 방식이 참여자의 실제 욕구와 이용 행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급여유연화 개인예산제 서비스’는 기존 바우처 급여를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2024년에는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로 운영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외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른 바우처 급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활동지원 기반 모델은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가 본인 활동지원급여의 10%, 15%,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활용하는 방식임.

- 바우처 확대 모델은 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바우처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이 해당 바우처 급여의 10%, 15%,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임.

< 활동지원 기반 모델과 바우처 확대 모델 비교 >

구분	활동지원기반모델	바우처확대모델
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개인예산액	- 활동지원급여의 10%, 15%, 20% 중 택1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급여의 10%, 15%, 20% 중 택1
이용방식	- 선택한 비율 급여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생활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활용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액 10억 9,700만원 중 8억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72.9%에 그쳤고, 2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2025년 참여자는 532명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인 410명을 초과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자 수 확대가 예산 집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2025회계연도 개별유연화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목표 이용자	실제 이용자
2025년	1,097	800	297	72.9%	410명	532명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참여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급여량이 적은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수급자이거나, 1개의 바우처만 활용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1인당 개인예산 급여액이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낮아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 바우처 확대 모델의 이용 현황을 보면, 2개 이상의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자가 325명 중 198명(60.9%)이었음에도, 실제 이용 유형에서는 1개 바우처만 활용한 참여자가 277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중 활동지원서비스만 단독으로 활용한 경우가 187명(57.5%)으로 가장 많았음.[150]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151]

150)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151) 개인예산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수립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며,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 상환 등 관련 지침에서 명시한 항목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됨.

참여자가 희망하는 서비스가 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보유한 바우처 중 개인예산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1인당 급여 활용액이 낮아질 수 있음.

□ 실제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에 따르면, “제도는 도움이 되지만 사용 범위가 제한적임”, “의식주·의료비 등 필수적 욕구 반영 부족”,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발생”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152]

참여자의 선호와 제도 운영 방식 간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의 활용 가능 서비스와 바우처 전환·연계 방식이 참여자의 실제 욕구와 이용 행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2)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1536-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8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60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고, 25억 7,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8,655	28,655	-	-	28,655	26,083	-	2,572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148	5,148	-	-	5,148	5,127	-	21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1,350	1,350	-	-	1,350	1,345	-	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190	9,190	-	-	9,190	8,920	-	27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70	170	-	-	170	149	-	21
·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 지원	1,328	1,328	-	-	1,328	1,328	-	-
· 공립장애인복합 수련시설건립	2,874	2,874	-	-	2,874	619	-	2,255
· 발달중증장애인 공립 복합힐링센터 건립	4,681	4,681	-	-	4,681	4,681	-	-
· 공립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3,750	3,750	-	-	3,750	3,750	-	-
· 사업운영비	164	164	-	-	164	164	-	-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반복적인 목표 미달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원 유형별 목표와 실적 간 차이가 반복되고, 유사 기능보강 사업보다 국고보조율이 낮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유형별 목표 미달 사유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설별 운영·재정 여건을 점검하여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에게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임.

□ 2025년 기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전국에 19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 중 13개소는 2010년 이전에 설치·신고된 시설로, 대부분의 시설이 개소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시설·장비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설치·신고 시설 1개소, 1980년대 2개소, 1990년대 7개소, 2000년대 3개소 등임.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현황 >

시도	시·군·구	시설명	설치·신고일
서울	강동구	주몽재활의원	1985.05.10.
	관악구	SRC재활병원	1993.08.30.
	관악구	에스알씨부설의원	1999.01.27.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16.03.09.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2012.09.10.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1998.04.21.
부산	영도구	천성의원	1978.01.13.
대구	수성구	인제재활병원	1985.05.02.
인천	미추홀구	인천재활의원	2003.02.28.
	연수구	경인권역재활병원	2010.10.08.
대전	유성구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성세병원	1990.07.03.
	유성구	대전재활병원	2007.04.27.
경기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	2020.07.06.
강원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	2016.01.06.
충북	청주시	충북재활의원	1991.09.26.
경북	안동시	경북재활병원	1993.04.01.
경남	거제시	마하재활병원	2007.03.02.
	창원시	홍익재활병원	1990.02.09.
제주	제주시	제주춘강의원	1994.04.29.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지원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개·보수는 2021년, 2023년 및 2024년에 예산상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반면, 증·개축은 2025년을 제외하고 실적이 없었고 장비보강은 매년 목표에 미달하는 등 지원 유형별 목표 달성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개축의 경우 매년 1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제 집행은 2025년 1개소에 그쳐 가장 부진하였음.

- 개·보수는 2021년에는 목표 3개소 대비 4개소를 지원하였으나, 2022년 및 2025년에는 각각 2개소에 그치는 등 연도별로 실적에 차이가 있었음.

- 장비보강은 2021년 목표 7개소 대비 2개소, 2022년 목표 7개소 대비 1개소, 2023년 목표 7개소 대비 4개소, 2024년 목표 6개소 대비 4개소, 2025년 목표 4개소 대비 1개소로,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1년~2025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표 대비 실적 >

구분	예산상 목표	실적
2021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4개소** - **장비보강: 2개소**
2022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
2023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구분	예산상 목표	실적
2024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6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2025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은 공모 시 예산액을 초과하는 사업 물량과 금액이 신청되고 있어 의료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교부액의 평균 90% 이상이 실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신청하는 지원 유형과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장비 여부, 기존 지원 여부 및 실제 수요 등을 검토하여 지원 유형별로 지원 물량과 예산을 조정·선정함에 따라 예산상 목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같이 신청 이후 지원 유형별로 지원 물량과 예산을 조정하여 왔다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원 유형별 목표 미달 사유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목표 설정과 집행 관리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아울러,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총사업비의 30%를 국비로, 7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확보가 필요함.

그런데 동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내 기능보강 사업과 비교할 때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음.

이처럼 같은 세부사업 내 유사한 사업 간 국고보조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같은 규모의 지방비로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의 국고보조율은 각각 50%인 반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의 국고보조율은 30%임.

< 동 세부사업 내 유사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보조율 비교 >

내역사업명	사업 시행 방법	국고 지원 비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30%**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30%인 이유에 관해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비 수입 등을 통해 자부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의료기관이 진료수입을 통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정이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료수입을 통한 자부담 확보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전제하기보다는, 시설별 진료 규모, 운영수지 및 기존 자부담 확보 실적 등 운영·재정 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원 유형별 목표 미달 사유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사업의 목표 설정과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 기능보강 사업과의 국고보조율 차이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별 재정 여건을 점검하여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과 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6,903억 800만원 중 6,901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3,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억 5,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690,308	690,308	-	-	690,308	690,122	31	15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84,550	684,550	-	-	684,550	684,550	-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비	1,725	1,725	-	-	1,725	1,725	-	-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비	1,255	1,255	-	-	1,255	1,255	-	-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278	1,278	-	-	1,278	1,278	-	-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92	192	-	-	192	192	-	-
장애인거주시설 IoT · AI활용 돌봄사업	442	442	-	-	442	408	-	34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558	558	-	-	558	558	-	-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공기관 운영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90	90	-	-	90	90	-	-
인권실태조사	100	100	-	-	100	30	-	70
사업운영비	118	118	-	-	118	36	31	51

나)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인력 확보 계획 개선 필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기능보강 공사 지연으로 서비스 개시와 인력 채용이 늦어져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월된 기능보강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 일정과 인력 채용 계획을 연계하는 한편, 4교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인력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은 의료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기존 장애인거주시설보다 강화된 돌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사업임.

-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적 지원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거주시설보다 강화된 형태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 이를 위해 개소당 4교대 인력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 거주시설 대비 간호사 3명과 생활재활교사 7명 등 총 10명의 추가 전문 인력이 필요함.

□ 그런데 2025년 동 사업에는 기능보강비 4억원과 추가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800만원 등 총 5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액은 900만원에 그쳤음.

- 기능보강 공사의 경우, 수행기관은 2025년 7월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건축 용역 과정에서 평면도 수정 등이 발생하여 준공 시기가

당초 2025년 10월~12월에서 2026년 2월~6월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기능보강비 4억원은 연내 실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음.

- 인력 채용은 2025년 12월 중 간호사 1명과 생활재활교사 3명만 채용되는 데 그쳐, 추가 인력 인건비 1억 5,800만원 중 900만원만 집행되었음.[153]

□ 이처럼 동 사업은 수행기관 선정 이후 기능보강 공사가 지연되면서 서비스 개시와 연계된 추가 인력 채용도 함께 늦어져 실집행이 부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인력 확보 계획을 연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먼저, 사업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능보강 공사 완료 후, 24시간 의료지원과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공사 완료 시점은 사업 개시와 실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동 사업은 2025년 7월 수행기관 선정 이후 건축 용역, 설계 조정, 공사 및 장비 구비 등을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기능보강비가 교부되었으나, 준공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기능보강비 4억원이 연내 실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154]

결과적으로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설계, 공사 및 장비 구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153) 2026년 6월 현재 추가 인력은 간호사 3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이 근무 중이며, 결원인 생활재활교사 1명은 6월 중 추가 채용할 예정임.

154) 2026년 6월 현재 기능보강 공사는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6년 9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임.

□ 다음으로, 추가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능보강 공사 완료 후 24시간 의료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4교대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공사 진행 상황과 서비스 개시 시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2025년에는 기능보강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서비스 개시 시점도 함께 미뤄졌고, 이에 따라 추가 인력 채용도 12월에 일부만 이루어졌음.

이후,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2026년 6월 현재도 추가 인력 10명 중 생활재활교사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대근무 인력 부족에 따른 돌봄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생활재활교사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15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월된 기능보강비의 원활한 집행과 사업의 적기 개시를 위해 기능보강 일정과 인력 채용 계획을 연계하고, 실제 4교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설계·공사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월된 기능보강비의 원활한 집행과 사업의 적기 개시를 위해 기능보강 일정과 인력 채용 계획을 연계하는 한편, 4교대 근무체

155)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행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 대덕구)의 건의문 내용을 정리함.

계와 결원 현황 및 현장의 추가 인력 수요 등을 토대로 지원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선정 기준 개선 필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점검 기능을 수행함에도, 수행기관 공모 신청자격에 시설 운영 주체와의 이해관계 여부나 독립성 확보 가능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현황과 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설장·종사자 및 인권강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과 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기능을 함.

□ 동 사업은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2024년까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정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2025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2025년 공모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개 기관만 신청하였고, 재공모를 실시하였음에도 추가 신청기관이 없어, 서면 심사 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계속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 >

연도	예산액	수행기관	선정 방식
2016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정
2017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8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9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0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2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3년	1억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4년	9,000만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5년	9,000만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모 후 선정

자료: 보건복지부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현황과 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 및 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시설 운영 주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지금까지 동 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15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체가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상담·점검 및 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2025년 수행기관 공모 당시 신청자격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라는 요건만 포함되어 있을 뿐, 시설 운영 주체와의 이해관계 여부나 독립성 확보 가능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음.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 신청 자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89호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 공모」

2. 신청자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로서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료: 보건복지부

15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6. 6. 23., https://kawid.or.kr/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주체와의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체계 마련 필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어 왔으나,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적 활용 필요성이 크므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주요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시설 운영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피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인지·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157]

- 2025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중 7,0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음.

□ 지금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어 왔음.

- 조사 과정에서 거주 장애인, 종사자, 시설 관계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인권침해 사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157)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은 시설의 폐쇄적 운영구조, 형식적 외부 점검, 피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제약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은폐되거나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158]에서,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거나 비식별화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59]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2025년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 현황, 입소 장애인 현황, 종사자 현황, 인권예방활동 현황 및 인권상황 점검 결과 일부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거나 비식별화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바 있음[160](참고자료: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

158) 이재민. (2025.12.24.). 태연재활원 사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비마이너. https://www. 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3

1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60)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식별화하는 한편, 시설 운영 현황, 인권점검 결과, 학대 예방활동 실적, 주요 문제 유형 등 공익적 활용 가치가 큰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조사 결과가 장애인 인권보호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 거주시설 현황 (전체 107개소)

○ (**시설유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5개소(51.4%)**로 가장 많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1개소(47.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개소(0.9%)

○ (**시설소재**) **경기 25개소(23.4%)로 가장 많으며**, 강원·경북 각각 10개소(9.3%), 서울·경남 각각 9개소(8.4%) 순이며, 세종·제주는 없음.

○ (**시설규모**) **50인~100인 미만 시설 85개소(79.4%)로 가장 많으며**, 100인 이상 시설 22개소(20.6%)

* 설치시기 : 1980년 이전 설치 25개소(23.4%), 1980년~1999년 62개소(57.9%), 2000년 이후 설치 20개소(18.7%) 순서임.

* 시설소재지 : 대도시 33개소(30.8%), 중소도시 58개소(54.2%), 군지역 16개소(15.0%)

○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3인실 이상) 있는 시설 103개소(96.3%)**, 다인실 없는 시설 4개소(3.7%)

* 생활공간 규모 : 1인실 617개(23.1%), 2인실 742개(27.7%), 3인실 508개(19.0%), 4인실 386개(14.4%), 5인실 이상 422개(15.8%)

○ (**CCTV 설치규모**) **시설 대부분(101개소)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10대~20대 34개소(31.8%)로 가장 많으며, 40대 이상 설치한 9개소(8.4%) 있었음.

* CCTV 설치장소 : 시설외부 및 출입구 등 1,166개(56.5%)이 가장 많으며, 복도 434개(21.0%), 거실 295개(14.3%), 침실 101개(4.9%) 등 순서임.

* CCTV 저장기간 : 1개월~2개월 48개소(54.5%)로 가장 많으며, 1개월 미만 21개소(23.9%), 2개월 이상 19개소(21.6%) 등 순서임.

○ (**행정처분 이력**) **거주시설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80개소(74.8%)**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27개소(25.2%)

* 행정처분 규모(27개소) : 1건 16개소, 2건 8개소, 3건 2개소, 4건 1개소

* 행정처분 시기(42건) : 2015년 이전 처분 1건, 2016~2020년 처분 11건, 2021~2025년 처분 30건

* 행정처분 종류(42건) 개선명령 37건, 시설장교체 1건, 시설폐쇄 3건, 주의 1건

□ 입소 장애인 현황 (전체 7,070명)

○ (**성별**) **남성 4,183명(59.2%)**, 여성 2,887명(40.8%)

○ (**연령대**) **평균 연령은 44.1세**이며, **40대 1,963명(27.8%)**, 50대 1,643명 (23.2%), 30대 1,416명(20.0%), **60대 이상 964명(13.6)**

○ (**장애유형**) **지적장애 5,508명(77.9%)이 가장 많으며**, 뇌병변장애 800명(11.3%), 지체장애 373명(5.3%), 자폐성장애 129명(1.8%) 등 순서임.

○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6,826명(96.5%)**, 심하지 않은 장애인 244명(3.5%)

○ (**입소기간**) **평균 24.3년**이며, 20년~30년 2,006명(28.4)으로 가장 많으며, 1년 미만 68명(1.0%) 및 50년 이상 72명(1.0%) 있었음.

○ (**연고여부**) **입소 장애인 연고가 있는 경우 4,617명(65.3%)**이며, 연고가 없는 경우 2,453명(34.7%)

○ (**수급여부**) **입소 장애인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528명(92.3%)**이며, 비수급권자 542명(7.7%) 구성임.

○ (**의사소통**) **입소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3,447명(48.9%)**이며, 보통인 경우 2,164명(30.7%), 원활한 경우 1,444명(20.4%) 순서임.

○ (**약물복용**) **입소 장애인의 약물 상시 복용하는 경우 5,785명(82.0%)**으로 대부분이며, 미복용하는 경우 1,266명(18.0%) 있었음.

□ **종사자 현황 (전체 5,143명)**

○ (**성별**) **종사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 3,122명(60.7%)**이며, 남성은 2,021명(39.3%)으로 구성

○ (**직종**) **생활지도원 3,699명(71.9%)**, 조리원 309명(6.0%), 치료사 168명(3.3%), 간호(조무)사 125명(2.4%) 등 순으로 구성

○ (**연령**) **종사자 평균 연령은 45.3세이며**, 50대 1,805명(35.1%) 및 40대 1,632명(31.7%) 순으로 많으며, 60대 이상 220명(4.3%)도 있음.

○ (**근무기간**) **종사자 평균 근무기간은 8.5년이며**, 1년~5년 1,722명(33.5%) 및 5년~10년 1,037명(20.2%) 순으로 많으며, 1년 미만 430명(8.4%) 있음.

□ **거주시설 학대 예방 활동 현황 (전체 107개소)**

○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횟수**) **2022~2024년(3년간) 평균 3.6회(6시간)** 실시

* (기준) 연1회(4시간 이상) → (실적) 연2회 이상 58%, 연3회 이상 35.5%, 연1회 5.6%, 미실시 0.9%

○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실적**) 2022~2024년(3년간) 교육 이수자 24,931명(92.4%), 교육 미이수자 2,060명(7.6%)

- 교육이수 : 2022년 8,585명, 2023년 8,220명, 2024년 8,126명
- 교육미이수 : 2022년 575명, 2023년 785명, 2024년 700명

* 교육 미이수 사유 : 병원 입원, 퇴소, 사망, 원가정 복귀, 근로, 등교, 외박 또는 외출, 중증장애, 자가격리(독감) 등

○ (**종사자 인권교육 횟수**) 2022~2024년(3년간) 평균 4.3회(13.2시간) 실시

* (기준) 연2회(8시간 이상) → (실적) 연1회 2.5%, 연2회 32.9%, 연3회 22.6%, 연4회 이상 42.0%

○ (**시설장 및 사무국장 집합교육**) 2022~2024년(3년간) 평균 시설장 93.8% 이수, 사무국장 91.6% 이수

- 시설장 : 2022년 97개소(90.7%), 2023년 100개소(93.5%), 2024년 104개소(97.2%)
- 사무국장 : 2022년 93개소(86.9%), 2023년 97개소(90.7%), 2024년 104개소(97.2%)

○ (**인권지킴이단 구성규모**) 평균 6.3명이며, 5인~7인 91개소(85.1%)로 가장 많고, 8인~11인 16개소(14.9%) 구성됨.

* (기준) 거주시설 내부 및 외부단원 5~11인 구성이며, 대부분 외부단원 50% 이상 106개소(99.1%), 외부단원 50% 미만 1개소(0.9%)

○ (**인권지킴이단 구성유형**) 시설 입소 장애인 23.1%, 지역주민 13.2%, 시설 보호자 12.5% 시설 종사자 11.0%, 시설 담당 공무원 4.8% 등으로 구성

○ (**인권지킴이단 운영**) 정기회의는 2022~2024(3년간) 평균 3.9회 운영, 임시회의는 3년간 평균 0.13회 운영

* (정기회의 운영기준) 연4회(분기별 1회) → (운영실적) 연도별 평균은 2022년 3.7회, 2023년 3.9회, 2024년 4.0회

* (회의보고) 정기회의는 보고횟수 충족 98.1%, 미충족 1.9%이며, 임시회의의 경우 보고횟수 충족 88.2%, 미보고 5.9% 수준임.

○ (**인권상황 점검**) 2022~2024년(3년간) 평균 13.6회 실시

* (기준) 연12회(월1회) → (실적) 2022년 11.9회, 2023년 13.7회, 2024년 14.4회

○ (**인권상황 점검보고**) 2022~2024년(3년간) 인권상황 점검 전체 4,279회 대비 점검보고 2,615회로 보고율 61.1% 임.

* (추이) 2022년 61.7%, 2023년 58.4%, 2024년 63.2%

○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2022~2024년(3년간) 신고 35개소

* (신고 추이) 2022년 13개소, 2023년 7개소, 2024년 15개소

* (신고기관) 지역권익옹호기관 25개소, 지자체 14개소, 수사기관 9개소, 국가인권위 2개소 순으로 나타남(중복포함).

□ **거주시설 인권상황 점검현황(총 1,354명, 입소 장애인 705명 및 종사자 649명)**

○ (총괄)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나, 일부 점검항목에 대해 부정적 응답

- 입소 장애인 중 신체적 학대, 노동착취 및 성적 수치심 등에 일부 학대 경험 응답

* (입소 장애인 부정적 응답)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사용(43명), 금전 사용 및 관리(41명)

점검항목	입소 장애인(명)				종사자(명)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무응답	예	아니오	모르겠다	무응답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	595	**9**	38	63	647	**2**	0	0
개인수납공간	616	**9**	20	60	618	**1**	30	0
외출	567	**27**	45	66	633	**0**	16	0
전화사용	511	**43**	59	92	617	**2**	30	0
음식섭취	610	**15**	18	62	630	**1**	18	0
의복 및 머리모양	586	**25**	23	71	630	**0**	19	0
지역사회 생활지원	421	**69**	102	113	603	**2**	44	0
금전 사용 및 관리	501	**41**	80	83	582	**5**	62	0
적절한 치료	607	**5**	23	70	638	**1**	10	0
불만 및 의견제시	533	**14**	55	103	623	**2**	24	0
노동착취	**13**	566	32	91	**6**	634	9	0
신체적 학대	**15**	602	12	76	**9**	636	4	0
성적 수치심 및 성적학대	**6**	591	17	91	**5**	636	8	0

자료: 보건복지부

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민간 전달체계를 통해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재활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9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3,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96억 400만원 중 9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사업	**9,565**	**-**	**39**	**-**	**9,604**	**9,458**	**-**	**146**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5,054	-	-	-	5,054	5,054	-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2,331	-	-	-	2,331	2,331	-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376	-	-	-	376	376	-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859	-	-	-	859	859	-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146	-	-	-	146	-	-	146
시각장애인음악 재활센터지원	201	-	-	-	201	201	-	-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지원	260	-	-	-	260	260	-	-
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지원	338	-	-	-	338	338	-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	-	39	-	39	39	-	-

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 점검 필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매년 전체 센터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 대상은 75개소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센터 운영 기반과 서비스 제공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현행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5개소는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185개소는 지방비 또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161]: 법적 근거 마련(2007년), 재정지원 규정(임의규정) 근거 마련(2015년)
개소 현황	- 260개소(2025년 12월 기준)
예산 지원	- 75개소: 국비 지원 40%, 지방비 60% - 185개소: 지방비 지원 100%
수행 업무	① 동료상담, ② 장애인 권익옹호지원, ③ 개인별 자립지원, ④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중 1개 사업 이상을 수행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16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전체 개소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비 지원 대상 센터 수와 센터당 지원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전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는 2021년 234개소에서 2025년 26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국비 지원 대상 센터 수는 같은 기간 75개소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전체 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는 센터의 비중은 낮아졌음.

- 예산 지원은 2021년 47억원에서 2025년 50억 5,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지원단가가 월 277만원에서 월 302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임.

- 반면, 센터당 인건비 지원인원은 4명, 운영비는 연 2,360만원, 지원개소 수는 75개소로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음.

< 2021년~20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

연도	지원 예산 편성 내역
2021년	○ 예산액: 47억원 - 인건비 지원단가: 277만원/월 - 인건비 지원인원: 4명 - 전체 개소 수 / 지원 개소 수: 234개소 / 75개소 - 운영비 2,360만원/년
2022년	○ 예산액: 47억 5,600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281만원/월 - 인건비 지원인원: 4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도	지원 예산 편성 내역
	- 전체 개소 수 / 지원 개소 수: 245개소 / 75개소 - 운영비 2,360만원/년
2023년	○ 예산액: 48억 2,500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286만원/월 - 인건비 지원인원: 4명 - 전체 개소 수 / 지원 개소 수: 245개소 / 75개소 - 운영비 2,360만원/년
2024년	○ 예산액: 49억 2,800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293만원/월 - 인건비 지원인원: 4명 - 전체 개소 수 / 지원 개소 수: 245개소 / 75개소 - 운영비 2,360만원/년
2025년	○ 예산액: 50억 5,400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302만원/월 - 인건비 지원인원: 4명 - 전체 개소 수 / 지원 개소 수: 260개소 / 75개소 - 운영비 2,360만원/년

주1): 전체 개소 수는 연도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비 지원은 전체 260개소 중 75개소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센터는 지방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체 지원 수준에 따라 센터의 인력·운영비 확보 수준, 사업 수행 범위 및 서비스 제공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비 지원 센터와 지방비 지원 센터의 평균 종사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센터당 평균 예산과 일평균 이용자 수는 국비 지원 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5년 기준 센터당 평균 종사자 수는 국비 지원 센터 5.2명, 지방비 지원 센터 5.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 반면, 센터당 평균 예산은 국비 지원 센터 2억 5,900만원, 지방비 지원 센터 2억 3,600만원이었고, 일평균 이용자 수는 각각 30명과 26명으로 국비 지원 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즉,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센터의 기본적인 인력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센터당 예산 규모와 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재정 지원 수준의 차이가 센터의 운영 기반과 서비스 제공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지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 기회와 제공 수준의 차이를 겪지 않도록, 현행 국비 지원 대상 75개소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공백 방지를 위한 수행기관 신청 자격 개선 필요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은 기존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이후 대체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성·회계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보조견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은 시각·지체·청각장애인의 이동, 생활보조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견을 훈련·보급하는 전문훈련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임.[162]

□ 그런데 2025년에는 당초 동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이후 대체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 전액(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163]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체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2025년 12월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차 공모에서는 신청기관이 없어 2025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162) 최근 5년간 총 142마리의 보조견이 배출되었음.
163)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24년 5월 경기도를 통해 최초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이를 최종 확인한 후 같은 해 11월 동 협회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하였음.

□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수행기관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모 참여기관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1개소에 그쳤음.

- 현재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2개 기관이며, 이중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유일함.

< 2021년~2025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현황 >

구분	지원 예산액 (백만원)	수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참여기관
2021년	97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공모선정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1개소)
2022년	97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공모선정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1개소)
2023년	146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공모선정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1개소)
2024년	146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공모선정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1개소)
2025년	149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공모선정	한국장애인 도우미견협회

주1): 2025년은 수행기관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확인에 따라 선정이 취소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공모 참여기관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1개소에 그친 것은 현행 신청자격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조견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임.

- 2025년 수행기관 공모상 신청자격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춘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근 5년 내 회계 부정 또는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 자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902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2. 신청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2-315호)」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춘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최근 5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 수행기관 선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예정

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은 훈련견 확보, 전문인력 운영, 훈련공간 마련, 수요자 매칭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대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즉시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그간 동 사업의 공모 참여기관이 사실상 1개소에 그쳐 온 상황에서 기존 수행기관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대체 수행기관 발굴에 한계가 발생하고 보조견 훈련·보급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의 대체 수행기관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164]

□ 특히, 현재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 기관은 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적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을 훈련·보급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도 청각보조견과 지체장애인보조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의 수행기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보급이 이루어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보다 청각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보조견의 훈련·보급 기반은 더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

164)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리법인도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되, 사업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중 수행기관을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1년~2025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별 보급 현황 >

연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2021년	**전체 보급 마릿수: 13** - 시각장애인 안내견: 13	**전체 보급 마릿수: 12** - 시각장애인 안내견: 1 - 청각보조견: 6 - 지체장애인 보조견: 5 - 기타: 0
2022년	**전체 보급 마릿수: 15** - 시각장애인 안내견: 15	**전체 보급 마릿수: 16** - 시각장애인 안내견: 4 - 청각보조견: 5 - 지체장애인 보조견: 5 - 기타: 2
2023년	**전체 보급 마릿수: 15** - 시각장애인 안내견: 15	**전체 보급 마릿수: 18** - 시각장애인 안내견: 0 - 청각보조견: 13 - 지체장애인 보조견: 1 - 기타: 4
2024년	**전체 보급 마릿수: 16** - 시각장애인 안내견: 16	**전체 보급 마릿수: 15** - 시각장애인 안내견: 2 - 청각보조견: 7 - 지체장애인 보조견: 5 - 기타: 1
2025년	**전체 보급 마릿수: 15** - 시각장애인 안내견: 15	**전체 보급 마릿수: 6** - 시각장애인 안내견: 0 - 청각보조견: 5 - 지체장애인 보조견: 0 - 기타: 1

자료: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행기관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공성·회계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전제로 보조견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5,448	-	-	5,448	5,448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448	5,448	-	-	5,448	5,448	-	-

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의 본 사업 반영 및 지원 체계 보완 필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참여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고 지원 항목과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다양한 자립지원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대상자별 자립지원 수요와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2027년 본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원 항목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여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자립희망자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립지원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한 뒤, 최종적으로 해당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됨.

-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주거환경 조성, 보조기기, 의료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됨.

□ 그런데 사업 실시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인원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지원 항목과 지원 수준도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25년의 경우 목표 인원이 2024년과 동일한 600명으로 설정되었음에도, 참여 인원은 481명으로 목표 대비 80.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목표 인원 및 참여 인원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인원(누적)	200명	400명	600명	600명
참여 인원(누적)	29명	105명	288명	481명
목표 달성률	14.5%	26.3%	48.0%	80.2%

자료: 보건복지부

- 연도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활동지원 급여 추가 월 80시간, 주거환경 조성 600만원, 보조기기 300만원 및 건강검진·의료 지원 40만원 등 지원 항목과 한도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도별 주요 지원 항목 >

연도	자립장애인 지원 내역
2022년	- 활동지원급여 추가 80시간 - 주거환경개선 1인당 600만원 - 보조기기 1인당 300만원 - 건강검진 1인당 40만원
2023년	- 활동지원급여 추가 80시간 - 주거환경개선 1인당 600만원 - 보조기기 1인당 300만원 - 건강검진 1인당 40만원
2024년	- 활동지원급여 추가 80시간 - 주거환경개선 1인당 600만원 - 보조기기 1인당 300만원 - 건강검진 1인당 40만원

연도	자립장애인 지원 내역
2025년	- 활동지원급여 추가 80시간 - 주거환경개선 1인당 600만원 - 보조기기 1인당 300만원 - 의료지원 1인당 4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인별 자립 목표와 지원 필요도 및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은 2027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항목, 서비스 연계 방식 및 전달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생활 여건을 가진 참여 사례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었음.

특히, 2024년부터 사업 대상이 시설 거주 장애인에서 재가 장애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립 이전의 생활환경과 장애 특성, 지역사회 서비스 여건 등에 따른 자립지원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

-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은 자립 이전의 생활환경, 가족·돌봄 관계, 주거 확보 가능성, 의료·정서적 지원 필요도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지원 항목과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자립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동 사업의 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지원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제시된 바 있음.

- 2024년 동 사업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일상생활 활동지원뿐 아니라 소득지원, 취업지원, 사람과의 관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165]

- 2025년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현행 지원 체계가 주거환경 조성 등 물리적 지원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정서·의료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음.[166]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등의 장애 특성, 생활 여건 및 대상자별 자립지원 수요와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2027년 본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원 항목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음.**

16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166)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1563-3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지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건립·지정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은 27억원이었으며, 전액 지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지원 사업	**2,700**	**2,700**	**-**	**2,700**	**2,700**	**-**	**-**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1,740	1,740	-	1,740	1,740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870	870	-	870	870	-	-
공공어린이재활 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90	90	-	90	90	-	-

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의 사업 내용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사업은 건립 중심에서 운영비 지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성과지표가 여전히 건립 공정률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대표하고 추진 성과를 측정 가능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운영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 및 필수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 공공재활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지정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전문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 2025년 기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전국에 13개소가 건립·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병원 3개소와 센터 7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개소는 건립 또는 운영 준비 중에 있음.

- 운영 중인 기관은 충남대병원, 서울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병원 3개소와 강원도재활병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목포중앙병원, 대구동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센터 7개소임.

- 전주예수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안동의료원 등 3개소는 2026년 또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건립 및 준비 중에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현황 >

구분	권역	지역	병원/센터	건립	지정	의료기관(선정연도)	운영여부
1	충남	대전	병원	건립		충남대병원(2018)	운영 중
2	강원	춘천	센터	건립		강원도재활병원(2019)	운영 중
3	**전북**	**전주**	**센터**	**건립**		**전주예수병원(2019)**	**2027년 하반기 예정**
4	강원	원주	센터	건립		원주의료원(2020)	운영 중
5	충북	청주	센터	건립		청주의료원(2020)	운영 중
6	**경남**	**창원**	**병원**	**건립**		**창원경상대병원(2020)**	**2026년 하반기 예정**
7	전남	광주	센터	건립		호남권역재활병원(2021)	운영 중
8	전남	목포	센터	건립		목포중앙병원(2021)	운영 중
9	경북	대구	센터	건립		대구동산병원(2021)	운영 중
10	**경북**	**안동**	**센터**	**건립**		**안동의료원(2021)**	**2026년 하반기 예정**
11	제주	서귀포	센터		지정	제주권역재활병원(2021)	운영 중
12	수도권	서울	병원		지정	서울재활병원(2021)	운영 중
13	수도권	경기	병원		지정	건보공단일산병원(2021)	운영 중

자료: 보건복지부

□ 이와 같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사업은 당초 건립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부분 기관의 건립·지정이 완료되어 운영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비 국고 교부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내역사업에서 건립사업 지원을 제외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부사업 명칭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으로 변경하였음.

□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2025년 성과지표는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로 설정되어 있음.

< 2025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 (단위: %)	(사업진행단계별 가중치 총합)/목표 개소수×100	시·도 사업수행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

□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정책목표와 주요 사업내용을 대표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에서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할 때 지표의 적절성, 대표성, 측정가능성, 신뢰성 및 목표달성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167]

□ 이러한 관점에서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은 건립 중인 일부 기관(3개소)의 공정 진척도만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미 운영 중(10개소)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운영 성과, 공공재활프로그램 제공 실적, 이용자 접근성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진행 상황 중심의 현행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운영 중인 병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용자 접근성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등 현재 사업 내용과 정책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7) 보건복지부. (2025).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